

서울시 어린이집 취약보육 운영 내실화 방안: 장애통합보육을 중심으로

책임연구원 : 박은미(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실/보육팀 센터장)

공동연구원 : 지성화(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실/보육팀 과장)

위촉연구원 : 박인숙(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발 간 사

우리나라의 장애통합보육은 2007년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011년 제정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2015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안에 법적인 측면에서 그 당위성이 인정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수는 2017년 기준, 341개소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장애영유아 담당 교사 수급의 어려움, 물리적 환경 부족, 장애통합보육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원장과 교사의 교육 지원은 아직까지 열악합니다.


본 연구는 서울시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실태조사를 토대로 내실있는 운영 방안을 모색하여 서울시 취약보육 서비스 질 제고를 이루는 것입니다. 특히,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특수교사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교사 대 장애영유아 비율의 조정 방안, 장애아보육도우미 확대,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재교구’ 지원 활성화, 외부자문 활성화 방안, 장애 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장애통합보육 운영 매뉴얼 개발 및 보급, 교사(원장) 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서울형 장애통합보육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습니다.

최근 중앙정부는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에서 취약보육을 지원 및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장애영유아를 위한 장애통합보육은 사회적 통합차원에서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울시의 앞선 정책을 토대로 중앙정부의 장애통합보육이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원하며, 그 과정에서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정책제언들이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연구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 도움을 주신 학계전문가 및 현장전문가, 학부모님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연구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2018년 9월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Contents

I 서론_01

제 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 2절 연구내용	8
제 3절 연구방법	9
제 4절 연구 추진체계	12
제 5절 용어정리	13

II 장애통합보육 정책현황 및 쟁점_15

제 1절 장애통합보육 국내 선행연구 고찰	17
제 2절 장애통합보육 국외 선행연구 고찰	30
제 3절 장애통합보육 법적 쟁점 분석	39

III 장애통합보육 정책현황 및 쟁점_63

제 1절 장애통합보육 중앙·서울시 정책현황 분석	65
제 2절 장애통합보육 관련 기관 비교 분석	70
제 3절 서울시 장애통합보육 현황 분석	77

IV	서울시 어린이집 취약보육(장애통합보육) 실태 및 요구_81	
	제 1절 조사 목적 및 개요	83
	제 2절 조사 결과	96
	제 3절 요약 및 시사점	138

V	서울시 어린이집 취약보육(장애통합보육) 내실화 방안_143	
	제 1절 서울시 장애통합보육 운영의 주요 쟁점	145
	제 2절 서울시 장애통합보육 운영 내실화 방안	148

참고문헌 _ 170

영문초록(Abstract) _ 174

부록 _ 177

1. 심층면접 질문지 _ 179
2. 원장 설문지 _ 180
3. 교사 설문지 _ 189

표 목차

표 I-1	자치구별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응답 현황	10
표 I-2	심층면접(FGI) 진행과정	11
표 I-3	연구 추진과정 및 내용	12
표 II-1	장애통합보육 선행연구의 개념 및 정의	17
표 II-2	장애통합보육 인적 환경에 대한 선행연구의 주요 논의	22
표 II-3	장애통합보육 물리적 환경에 대한 선행연구의 주요 논의	24
표 II-4	장애통합보육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선행연구의 주요 논의	26
표 II-5	전문 인력 자격에 관한 조항 비교	40
표 II-6	보조 인력에 관한 조항 비교	42
표 II-7	장애영유아 물리적 환경에 관한 조항 비교	43
표 II-8	장애영유아 관련법의 목적 비교	44
표 II-9	장애통합보육 프로그램에 관한 조항 비교	46
표 II-10	교사(원장) 전문성에 관한 조항 비교	47
표 II-11	기관연계(협력)에 관한 조항 비교	48
표 II-12	장애영유아 조기발견에 관한 조항 비교	49
표 II-13	장애통합보육과 관련된 독일 법령 내용	51
표 II-14	장애통합보육과 관련된 미국 법령 내용	56
표 II-15	장애통합보육과 관련된 일본 법령 내용	58
표 II-16	장애통합보육과 관련된 호주 법령 내용	60
표 III-1	장애통합보육 중앙정부·서울시 정책현황 비교	67
표 III-2	장애통합보육 서울시 & 자치구 정책현황 비교	69
표 III-3	장애통합보육과 관련된 기관 비교	70
표 III-4	특수교육지원센터 사업 내용	71

표 III-5	육아종합지원센터 장애아 지원 사업 내용 및 인력 비교 분석	74
표 III-6	서울시 장애통합보육 어린이집 현황	78
표 III-7	서울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영유아 수 현황	79
표 III-8	서울시 장애영유아 담당 교사 수 현황	80
표 IV-1	설문조사 내용(원장 대상)	85
표 IV-2	설문조사 내용(장애통합학급 담당 교사 대상)	86
표 IV-3	조사대상(원장) 일반적 사항(1)	87
표 IV-4	조사대상(원장) 일반적 사항(2)	88
표 IV-5	조사대상(교사) 일반적 사항(1)	90
표 IV-6	조사대상(교사) 일반적 사항(2)	91
표 IV-7	심층면접(FGI) 참여자 특성	93
표 IV-8	심층면접(FGI) 진행과정	93
표 IV-9	전문가 자문 참여자 특성	94
표 IV-10	전문가 자문 진행과정	95
표 IV-11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전문 인력 현황	97
표 IV-12	전문 인력 채용 시 어려움 / 확보하기 어려운 전문 인력	98
표 IV-13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요구	99
표 IV-14	보조 인력 현황	101
표 IV-15	물리적 환경 현황	103
표 IV-16	물리적 환경 요구	104
표 IV-17	장애통합보육 실시 계기	106
표 IV-18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 시 어려운 점	107
표 IV-19	외부자문 실시 현황	108
표 IV-20	외부자문 내용 및 만족도	109
표 IV-21	외부교육(연수) 유무, 실시횟수, 만족도(원장)	110
표 IV-22	도움 되었던 외부교육(연수) 내용(원장)	111
표 IV-23	외부교육(연수) 요구(원장)	112
표 IV-24	가정에게 제공하는 정보	113

표 IV-25	지역사회 연계(협력) 많이 하는 기관	115
표 IV-26	지역사회 연계(협력) 도움 내용, 만족도	116
표 IV-27	정책지원 현황	117
표 IV-28	정책지원 요구(원장)	118
표 IV-29	교사 대 장애영유아 비율 적절성	119
표 IV-30	교사 대 장애영유아 비율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121
표 IV-31	보조 인력에게 도움 받는 내용	122
표 IV-32	보조 인력 만족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123
표 IV-33	물리적 환경 만족도 및 요구	125
표 IV-34	장애통합학급 운영 시 어려운 점	126
표 IV-35	장애 인식개선교육 현황	128
표 IV-36	외부교육(연수) 유무, 실시횟수, 만족도(교사)	129
표 IV-37	도움 되었던 외부교육(연수) 내용(교사)	130
표 IV-38	외부교육(연수) 요구(교사)	131
표 IV-39	가정과 의사소통 방법	132
표 IV-40	가정과 의사소통 내용	133
표 IV-41	지역사회 기관 연계(협력) 현황	134
표 IV-42	지역사회 기관 연계(협력) 내용 및 만족도	135
표 IV-43	어린이집에서 받고 있는 지원 현황	136
표 IV-44	정책지원 요구(교사)	137
표 V-1	특수교사 자격 기준 변화	148
표 V-2	서울권 특수교사 양성 기관(대학교, 교육대학원)	149
표 V-3	기관 유형별 특수교사 급여 비교	150
표 V-4	장애영유아 전담 교사 비율관련 법률 조항	150
표 V-5	장애아보육도우미 확대(안)	152
표 V-6	서울시 장애지원 프로그램 운영 특수교사 확대(안)	156
표 V-7	대상별 장애 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안)	158
표 V-8	장애통합보육 운영 가이드라인 매뉴얼 개발(안)	160

【 표 V-9 】	장애통합보육 교사(원장)교육 비교	162
【 표 V-10 】	일반보육교사 장애통합보육 관련 교육 비교	163
【 표 V-11 】	원장 장애통합보육 관련 교육 비교	163
【 표 V-12 】	교사(원장) 교육 추진과정(안)	164
【 표 V-13 】	서울시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체계	166

그림 목차

■ 그림 1-1	■ 전국/서울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장애영유아 정원 현황	5
■ 그림 1-2	■ 전국/서울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개소 현황	6
■ 그림 V-1	■ 서울시 중장기 보육계획	147
■ 그림 V-2	■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체계	167
■ 그림 V-3	■ 서울형 장애통합보육서비스 one-stop 지원체계 모형(안)	169

연구요약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의 장애영유아를 위한 통합보육은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만3세 미만의 장애영아 통합보육에 대한 무상교육과 만3세 이상의 경우 어린이집 과정 의무보육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는 것을 기준으로 2011년 제정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및 2015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등을 포함하여 법적인 측면에서 그 당위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장애영유아 통합보육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음.
-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서울시 보육비전 2020」에서 장애 통합보육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담기면서 정부와 서울시 모두 취약한 성장 환경과 특별한 요구를 가진 장애영유아와 일반영유아가 함께 생활하면서 보육·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애통합보육 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서울시의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개소 수,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재원 하는 장애 영유아 수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현장에서는 장애영유아 담당 교사수급 어려움, 물리적 환경 부족, 장애영유아 통합보육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나 프로그램 운영지침 미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따라, 서울시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의 현장 설문조사, 심층면접(FGI) 조사, 문헌고찰을 통해 실태, 즉 인적 환경, 물리적 환경, 운영 및 프로그램, 가정 및 타 기관 연계 등의 분석을 토대로 내실화방안을 모색함.
특히, 장애통합보육서비스 질의 핵심인 교사의 역량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안 마련에 역점을 두고자 함.

□ 연구내용 및 방법

- 장애통합보육의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여, 국내 선행연구 고찰에서는 장애통합보육의 개념정의 및 쟁점, 장애통합보육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고, 국외 선행연구 고찰에서는 국외 장애통합보육의 동향과 장애영유아를 담당하는 교사들을 위한 지원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분석하였음. 또한 장애통합보육의 법적 쟁점에 대해 고찰 후 서울시 장애통합보육 운영에 적용가능한지를 분석함.
- 장애통합보육에 대해 중앙정부, 서울시의 정책 현황과 장애통합보육 관련 기관들을 비교·분석하였고, 서울시 장애통합보육 현황(장애아통합어린이집 수, 장애영유아 수, 장애영유아 담당교사 수)을 연도별로 조사하여 분석함.
- 서울시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실태 및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설문조사, 심층면접(FGI) 조사,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서울시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 및 장애영유아 담당 교사의 실태와 요구를 분석함.
 - 설문조사: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원장 125명, 장애영유아 담당 교사(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일반 보육교사, 치료사) 283명
 - 심층면접(FGI) 조사:
장애영유아 담당 교사 3명, 관련 기관(한국보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자 3명,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원장 3명, 장애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3명
- 장애통합보육의 이론적 고찰, 정책현황 및 쟁점, 실태 및 요구 등을 분석하여, 서울시 장애통합보육 운영 내실화에 대해 인적 환경, 물리적 환경, 운영 및 프로그램, 교사(원장) 전문성 측면에서의 방안에 대해 논의함.

□ 장애통합보육 이론적 고찰

- 국내 선행연구는 장애통합보육에서 개념정의 및 인적 환경, 물리적 환경, 운영 및 프로그램, 교사(원장) 전문성, 가정 및 타 기관 연계(협력) 등에 관한 연구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진정한 장애통합(Inclusion)은 장애영유아와 일반 영유아가 함께 동등한 권리와 소속감을 갖도록 인적 환경, 물리적 환경, 운영 및 프로그램, 가정 및 타 기관과의 효과적인 연계가 이루어져야 함.
- 국외 선행연구는 미국, 일본, 호주, 독일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의 장애통합보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 및 지방정부, 외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아래 지속적이고 체계적 연계가 지원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 국내법의 경우, 장애통합보육과 관련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영유아보육법」에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경우에는 유치원 및 초·중·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한계점이 있었음. 「영유아보육법」은 장애통합보육에 대해 자세하게 명시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외법의 경우, 미국의 사례처럼 장애영유아 부모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내용이 법적 근거로 마련되어 장애영유아가 어린이집·가정과 연계되어 지원될 필요가 있으며, 앞서 선행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인력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수교사의 양성과정부터 특수교사 재교육 프로그램까지 법적 근거로 마련하여 장애영유아를 담당하는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장애통합보육 정책현황 및 쟁점

- 서울시는 중앙정부에 비해 장애통합보육에 대한 관심이 더 높으며, 추가적인 인건비, 수당, 교재·교구비, 기타운영비 등의 지원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음. 하지만 실제 장애통합보육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실태를 파악 후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논의되어야 함.
-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예산범위는 서로 다르지만 내실있는 장애통합보육이 이루어지기 위해 추가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노력하는 자치구가 있었음.
 - 보육료 추가지원 : 강남구
 - 인건비 추가지원 : 송파구
 - 수당 추가지원 : 도봉구, 서대문구, 중구
 - 기타운영비 추가지원 : 강남구, 도봉구
- 서울시 장애통합보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어린이집은 2017년 말 기준,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수 341개소,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수 10개소, 일반 어린이집 수 135개소 등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개소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시 장애통합보육 이용 장애영유아 수는 2017년 말 기준,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1,617명으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일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 영유아 수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시 장애영유아 담당 교사 수는 2017년 말 기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 교사의 경우 장애아통합어린이집 164명,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21명으로 나타났고, 특수교사의 경우 장애아통합어린이집 401명,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61명 등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시 장애통합보육 실태 및 요구 : 원장

- 인적 환경에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비중이 가장 컸으며,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의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치료사 인력 배치가 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전문 인력 채용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중에서도 '특수교사(62.3%)' 인력 확보를 가장 어려워하였음. 원장들은 '처우개선(34.6%)'이나 '대학인력 양성 확대(24.6%)'를 요구하였음. 또한 보조 인력의 유형으로는 '장애아통합보육도우미(46.9%)' 유형이 가장 많았으며, '보조 인력은 1명(73.8%)', 하루 활용시간은 '6시간(66.7%)'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물리적 환경은 '출입문, 경사로, 화장실 등 편의시설(84.7%)'은 '있다'고 응답하였지만 '특수책상과 의자(83.9%)', 신체활동 공간(62.7%), 실외 놀이터 기구(83.9%), 보조기구(85.6%), 치료 공간(73.7%)은 '없다'고 응답하여 물리적 환경이 미흡한 것을 알 수 있었음. 또한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원장이 가장 원하는 물리적 환경은 '치료 공간(45.6%)'으로 나타남.
- 운영 및 프로그램에서 대부분의 원장들은 '특수교사 인력확보 및 배치(26.7%)', '경계선상의 장애영유아 증가(20.2%)', '보조인력 부족(16%)'의 원인으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 원장 전문성에서 원장들은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72.8%)'에서 가장 많은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원장들이 요구하는 외부교육(연수) 내용은 '장애영유아 가족연계 및 지원(32.2%)', '긍정적 행동 지원(24%)', '장애영유아교사의 역할과 협력(19.3%)'으로 나타남.
- 가정 및 타 기관 연계(협력)에서 장애통합보육과 관련하여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89.7%)'와 연계(협력)를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기관 연계(협력) 시 가장 많이 도움 받는 내용은 '개별화 교육프로그램(IEP) 연계(협력) 방법(77.6%)'으로 나타남.

□ 서울시 장애통합보육 실태 및 요구 : 교사

- 인적 환경에서 장애통합학급의 일반보육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모두 현재의 교사 대 장애영유아 비율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55.3%)’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 인력의 활용 만족도에 대해 응답 교사 모두 보조 인력 활용 시 ‘만족(76.3%)’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물리적 환경에서 현재 구비된 물리적 환경에 대해 ‘만족(73.9%)’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필요한 물리적 환경에서는 장애통합학급 담당 교사 모두 ‘감각 통합 교재교구(30.9%)’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운영 및 프로그램에서 장애통합학급을 운영 시 어려운 점에 대해 ‘일반/장애 영유아의 생활지도(19.2%)’, ‘장시간 장애통합보육 운영(18.9%)’, ‘경계선상의 장애영유아 증가(14.2%)’로 나타났으며, 장애 인식개선교육 현황은 ‘영유아를 대상(85.9%)으로 가장 잘 이루어지고 만족도(3.08)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부모를 대상(45.2%)으로 한 장애 인식개선교육이 가장 잘 이루어지지 않고, 만족도(2.86)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교사 전문성에서 교사들은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78.4%)’에서 가장 많은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교사들이 요구하는 외부교육(연수) 내용은 ‘긍정적 행동 지원(23.5%)’, ‘장애영유아 초등학교 전이 프로그램(16.8%)’, ‘장애영유아 가족연계 및 지원(16.4%)’으로 나타남.
- 가정 및 타 기관 연계(협력)에서 교사들은 가정과 의사소통 내용으로 ‘부모 협조 사항(22.7%)’, ‘가족 스트레스 해소 방안(22.2%)’, ‘장애영유아의 성장 발달 관련 내용(15.5%)’로 나타남. 타 기관 연계(협력) 내용으로 ‘장애영유아 문제행동 대처방법(61.5%)’, ‘개별화 교육프로그램(IEP) 연계(협력) 방법(59.7%)’, ‘장애영유아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53%)’로 나타남.

□ 서울시 장애통합보육 운영 내실화 방안

1. 인적 환경

○ 특수교사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 특수교사 확보와 관련하여 고려해볼 수 있는 방안 2가지로 구분하여 제안함. 첫째, 현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을 갖춘 교사에게 특수교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경력, 교육과목 이수 등과 같은 내용을 고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함. 둘째, 어린이집 특수교사에게 지급하고 있는 수당의 대안보다는 급여체계의 현실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함. 또한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특수교사역시 자치구 관내 장애담당교사의 개별화 교육 계획 순회지원을 실시하므로 이에 맞는 급여체계를 고려 할 것을 제안함.

○ 교사 대 장애영유아 비율의 조정 방안

- 장애유형에 따라 현행 1:3 비율을 최대범위로 지정하되 그 안의 비율은 장애영유아의 장애유형에 따라 교사 대 아동비율을 조정한다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영유아의 경우 1:1, 1:2 보육 조정 방안을 제안함.

○ 장애아보육도우미 확대

- 장애아보육도우미 확대(안)와 관련하여 고려해볼 수 있는 방안 2가지로 구분하여 제안함. 첫째,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애아보육도우미’사업에서 현행 2개 반 당 1명의 장애아보육도우미를 지원하는 것에서 장애유형에 따라 추가 인력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를 제안함. 둘째,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애아보육도우미는 현행 1일 6시간 주 5일 근무에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는 것으로 확대(안)를 제안함.

2. 물리적 환경

-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재교구’ 지원 활성화
 - ‘교재교구’ 지원 활성화와 관련하여 고려해볼 수 있는 방안 2가지로 구분하여 제안함. 첫째, 장애영유아를 위한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서울시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 대여 기능의 확대를 제안함. 둘째,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존 교재교구비(1인당 21,000원)의 지출 범위를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함.

3. 장애통합보육 운영 및 프로그램

- 외부자문 활성화 방안
 - 외부자문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고려해볼 수 있는 방안 2가지로 구분하여 제안함. 첫째, 자치구 장애영유아 수·장애아통합어린이집 수를 고려한 ‘특수교사 추가 인력 편성’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함. 둘째, 서울시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특수교사 인건비·처우개선비는 어린이집 특수교사, 공립유치원 특수교사 보다 낮은 임금체계이므로 자치구 장애통합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특수교사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한 임금체계 마련을 제안함.
- 대상별(교사, 부모, 영유아) 장애 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 장애 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3가지로 구분하여 제안함. 첫째,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 인식개선교육에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6조3항에 제시하고 있는 장애의 정의,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한 교육방향으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을 제안함. 둘째,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 인식개선교육에는 장애통합보육에 대한 이해, 자신의 장애인식 정도, 사례로 보는 장애 인식

개선교육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련된 사례발굴을 통해 부모가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최대한 글을 줄이고 그림(만화) 워크북 형식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을 제안함. 셋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 인식 개선교육에는 장애영유아의 특성 및 긍정적인 이미지에 대한 내용, 장애 영유아는 일반영유아와 다른 존재가 아닌 비슷한 점이 많은 평등권이 담긴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영유아의 눈높이에 맞는 그림책을 선정하여 교육이 진행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을 제안함.

○ 장애통합보육 운영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장애통합보육 운영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장애통합보육 운영 매뉴얼 개발이 필요함. 장애통합보육의 이해,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정의, 장애아통합어린이집 법적기준, 장애통합보육 운영계획, 장애영유아 입소부터 졸업(입학적응지원)까지, 교사간의 협력, 가족과의 협력,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 평가, 자치구별 영유아발달 검사 및 진단기관, 사례로 알아보는 궁금한 사항 등의 내용을 넣어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처음 운영하는 원장이 가이드라인 매뉴얼을 보면서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 및 보급을 제안함.

4. 교사(원장) 전문성

○ 교사(원장) 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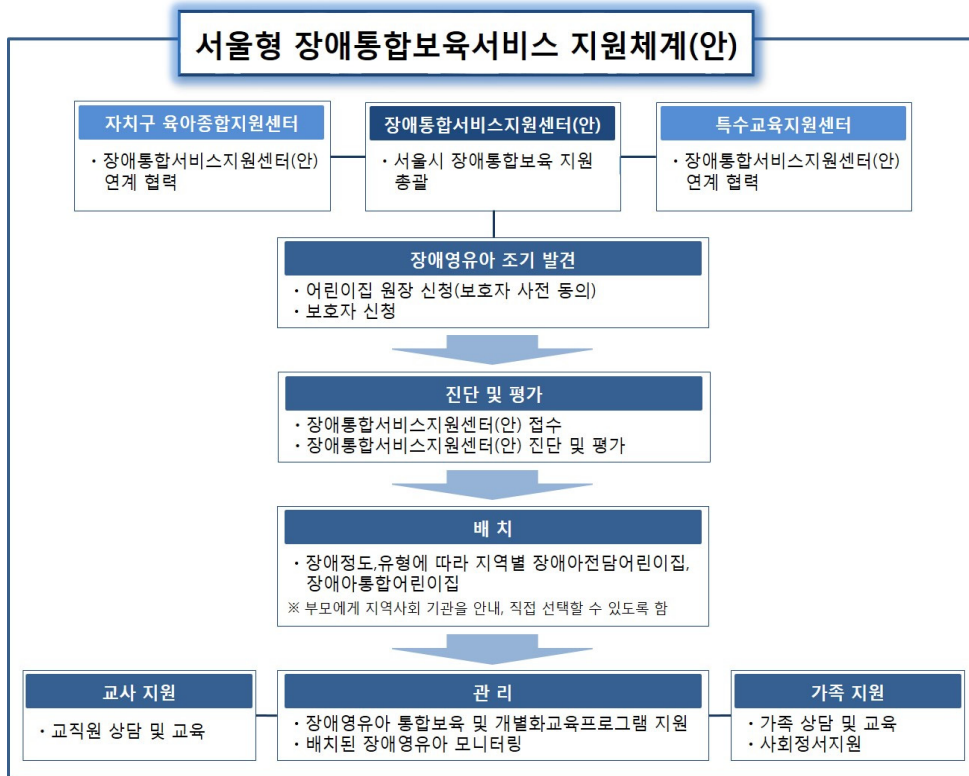
- 교사(원장) 교육 활성화와 관련하여 고려해볼 수 있는 방안 2가지로 구분하여 제안함. 첫째, 원장이 요구한 ‘장애영유아 가족연계 및 지원’, ‘긍정적 행동 지원’, ‘장애영유아교사의 역할과 협력’과 교사가 요구한 ‘긍정적 행동 지원’, ‘장애영유아 초등학교 전이 프로그램’, ‘장애영유아 가족연계 및 지원’내용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편 되어야 함을 제안함. 둘째, 일반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가 장애통합보육에 대한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일반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를 위한 맞춤형 교육컨텐츠를 개발하여 교육을

지원 할 수 있는 추진과정(안)을 제안함.

5. 가정 및 타 기관 연계(협력)

○ 서울형 장애통합보육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서울시민의 장애통합보육서비스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조기 발견 - 진단 및 평가 - 배치 - 관리가 가능한 서울형 장애통합보육서비스 one-stop 지원체계 모형(안)을 제안함.



I

서론

제 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 2절 연구내용

제 3절 연구방법

제 4절 연구 추진체계

제 5절 용어정리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 서론

제 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장애영유아와 일반영유아가 동등한 위치를 가지며 모든 물리적 환경에서 동일한 소속감을 지닐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교수 활동에 대한 통합을 지향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변화해 왔다 (이정림 외, 2012). 또한 우리나라의 장애영유아를 위한 통합보육은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 통합보육에 대한 무상교육과 만 3세 이상의 경우 어린이집 과정 의무보육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는 것을 기준으로 2011년 제정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및 2015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등을 포함하여 법적인 측면¹⁾에서 그 당위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장애영유아 통합보육에 대한 체계적인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②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0조(교육)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연령·능력·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그 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유아보육법」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실시 등)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9., 2011.6.7.>

교육과 지원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김진호 외, 2017).

우리나라 「영유아보육법」 제2조(보육이념)는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는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 되어야 하며,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보육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보육정책의 방향성은 취약한 배경을 갖은 영유아를 위한 생애초기 경험의 격차를 줄이고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해야하는 중요한 시기다(이정원 외,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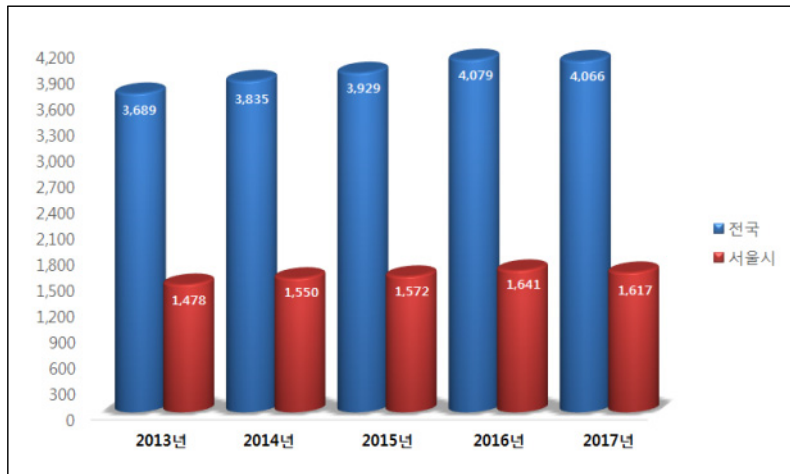
이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개정하였으며, 최근 발표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에서는 2022년까지 취약보육 대상자 중 장애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취약보육을 실시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과 연계하여 장애아보육 제공기관(장애아전문²⁾·통합어린이집³⁾) 확대 추진과 장애영유아의 전문적 돌봄을 위한 전문 인력 수요 확보를 위해 장애아 전담 보육 교사자격 및 양성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2017). 이처럼 정부는 취약한 성장환경과 특별한 요구를 가진 장애영유아와 일반영유아가 함께 생활하면서 보육·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애통합보육 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 제3차 보육 중장기 계획인 「서울시 보육비전 2020」 세부내용에 맞춤형 보육지원 강화(장애아 통합 보육 내실화)가 포함되어 발표되었다(서울시, 2018). 이는 서울시 장애영유아 통합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꾸준히 확대 되고, <그림 1-1>과 같이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채용 하는 장애영유아의 수가 2013년 1,478명, 2014년 1,550명, 2015년 1,572명, 2016년 1,641명, 2017년 1,617명으로 꾸준히

-
- 2)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장애 영유아를 주 보육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으로 장애 영유아 12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로 만 12세까지 입소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건비 지원을 승인한 시설이다. 통합보육을 위해 정원범위의 40%까지 비장애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다.
 - 3)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정원의 20%이내에서 장애 영유아 종일반을 편성 운영하거나 장애 영유아 종일반을 편도로 편성하지 않은 채 미취학 장애 영유아 3명 이상을 통합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다.

4 | 서울시 어린이집 취약보육 운영 내실화 방안: 장애통합보육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 그림 I-1 ■ 전국/서울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장애영유아 재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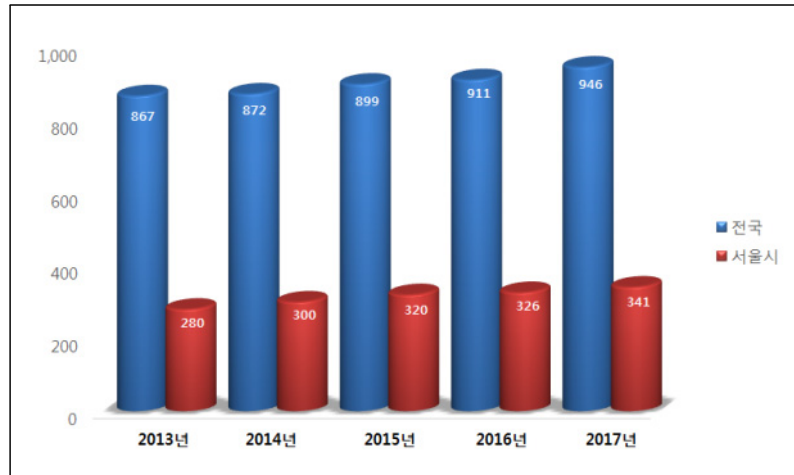
자료 : 보건복지부(2013년-2017년), 보육통계

최근 서울시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장애영유아들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보육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선정기준에 “취약보육”⁴⁾의 우선 실시 규정에 따라 <그림 I-2>와 같이 장애통합어린이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서울시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2017년 기준으로 전국 946개소의 36%인 341개소로 전국 대비 많은 수의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다.

4) 영유아보육법 제26조 취약보육 우선 실시 및 시행규칙 제24조의 2항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선정 관리기준 별표 8의2에 따라 제28조 각 호의 취약보육(영아·장애아·다문화아동·시간연장형 보육) 중 2가지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보육수요 조사결과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약보육 실시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그림 I-2 ■ 전국/서울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개소 현황



자료 : 보건복지부(2013년-2017년), 보육통계

하지만 서울시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장애영유아 담당 교사 수급의 어려움, 물리적 환경 부족, 장애영유아 통합보육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나 프로그램 운영상의 지침이 거의 없어 교사들이 장애영유아 통합보육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김은영 외, 2007). 더불어 법률개정으로 인해 장애영유아를 담당하는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제도⁵⁾,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배치⁶⁾ 제도가 변경되었다.

이로 인해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 담당 교사의 배치 및 자격조건을

- 5)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5조(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사의 자격 기준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유치원 과정만 해당한다)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장애영유아(「영유아보육법」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자 되는 장애아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2.11.>
- 6)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6조(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배치)
 -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배치하는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수는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배치된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영유아 수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6.2.11.>

6 ■ 서울시 어린이집 취약보육 운영 내실화 방안: 장애통합보육을 중심으로

갖춘 특수교사 수급 등 인적 환경 구성에 어려움이 있다. 권미경 외(2015)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장애영유아를 위한 인적 환경에 관한 어려움으로 교사들은 슈퍼바이저 부재 29.5%, 보조인력 배치 20.4%, 교사수급 15%, 교직원 연수 부족 14.3%,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실있는 장애영유아 통합보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장애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사의 질이 중요하다(김경은 외, 2017; 오선영 외, 2002; 조재규, 2014).

이에 따라, 서울시 장애통합보육은 장애통합학급을 운영하는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현장의 실태 및 요구도 조사를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서울시 장애통합보육 문헌조사, 운영 현황 및 지원정책, 국내·외 장애통합 운영 사례 분석하여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양적 확충과 더불어 내실 있는 장애통합보육 운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시기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의 현장 설문조사, 심층면접(FGI)조사, 문헌고찰을 통해 실태, 즉 인적 환경, 물리적 환경, 운영 및 프로그램, 가정 및 타 기관 연계 등의 분석을 토대로 내실화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특히, 장애통합보육 서비스 질의 핵심인 교사의 역량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안 마련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제 2절 연구내용

연구내용은 서울시 어린이집 취약보육(장애통합보육)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목적으로 장애통합보육 선행연구 및 법적근거 고찰, 서울시 장애통합보육 실태 조사 분석연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II장에서는 장애통합보육의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였다. 국내 선행연구 고찰에서는 장애통합보육의 개념정의 및 쟁점, 장애통합보육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고, 국외 선행연구 고찰에서는 국외 장애통합보육의 동향과 장애영유아를 담당하는 교사들을 위한 지원정책이 무엇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장애통합보육의 법적 쟁점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통해 서울시 장애통합보육 운영에 적용가능한지를 검토하였다.

III장에서는 장애통합보육에 대해 중앙정부, 서울시의 정책 현황과 장애통합보육 관련 기관들을 비교·분석하였고, 서울시 장애통합보육 현황(장애아통합어린이집 수, 장애영유아 수, 장애영유아 담당교사 수)을 연도별로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IV장에서는 서울시 장애통합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원장, 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일반보육교사, 치료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장애통합보육 관련된 기관 실무자, 원장, 장애아담당 교사, 부모와 심층면접(FGI)을 통해 서울시 장애통합보육을 운영하는 원장 및 교사의 실태와 요구를 분석하였다.

V장에서는 앞선 선행연구, 법적 검토, 설문조사, 심층면접(FGI)을 토대로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과 서울시 장애통합보육을 운영하는 전문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컨텐츠 개발 및 교육방법안을 마련하여 서울시 어린이집 취약보육(장애통합보육)의 운영 내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 3절 연구방법

1. 연구방법

서울시 어린이집 취약보육(장애통합보육)의 운영 내실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설문조사, 심층면접(FGI), 전문가 자문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1) 문헌연구

문헌연구는 현재 장애통합보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정리하여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틀을 마련하였고, 국내·외 장애통합보육의 제도 및 현황과 장애영유아를 담당하는 교사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서울시 어린이집 취약보육(장애통합보육)의 운영 내실화 방안을 제시할 때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제언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에서 문헌연구 고찰을 실시하였다.

2)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서울시 장애통합어린이집의 원장, 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일반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장애통합보육의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요구를 수렴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를 통해 발송하는 방식과 개별 어린이집으로 설문지를 발송하여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5월 초부터 5월 말까지 약 4주 간 설문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총 408명의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원장 및 장애영유아 담당 교사(일반보육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가 조사에 참여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은 서울시 보육포털에 등록되어있는 장애영유아가 있는 통합어린이집 243개소 중 125개소 408명의 응답이 이루어졌다<표 1-1>.

설문조사를 통해서 인적 환경, 물리적 환경, 장애통합보육 운영 및 프로그램, 원장(교사) 전문성, 가정 및 타 기관연계, 정책지원과 관련된 기본적인 실태와 담당자들의 요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IV장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 표 I-1 】 자치구별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응답 현황

(단위: 명, %)

지역	장애통합어린이집	사례수(명)	비율(%)
전체	243	125	51.4
강남구	13	6	46.2
강동구	14	3	21.4
강북구	3	2	66.7
강서구	9	7	77.8
관악구	11	5	45.5
광진구	11	10	90.9
구로구	6	1	16.7
금천구	7	5	71.4
노원구	17	6	35.3
도봉구	7	2	28.6
동대문구	4	0	0.0
동작구	9	8	88.9
마포구	11	5	45.5
서대문구	10	4	40.0
서초구	11	5	45.5
성동구	5	5	100.0
성북구	11	5	45.5
송파구	15	8	53.3
양천구	25	8	32.0
영등포구	7	5	71.4
용산구	6	5	83.3
은평구	10	2	20.0
종로구	7	4	57.1
중구	4	2	50.0
중랑구	10	5	50.0
무응답		7	

주: 2018년 5월 서울시보육포털 기준, 장애아통합어린이집 0학급, 장애영유아 0명을 제외한 전체 장애통합어린이집 243곳임.

3) 심층면접(FGI)

설문조사 분석결과에 대한 내용을 보다 세부적인 파악 및 장애통합보육과 관련된 정책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원장 3명, 장애영유아 담당 교사 3명, 부모 3명, 지역연계 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청, 한국보육진흥원) 담당자 3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FGI)를 실시하였다. 심층면접(FGI)는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1차 심층면접(FGI)은 2018년 5월 16일, 2차 심층면접(FGI)은 2018년 5월 17일, 3차 심층면접(FGI)은 2018년 5월 21일, 4차 심층면접(FGI)은 2018년 5월 24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서울시 어린이집 취약보육(장애통합보육)의 내실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언 및 전문 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컨텐츠 개발과 교육방법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표 I-2 | 심층면접(FGI) 진행과정

구분	일시	대상
1차 심층면접(FGI)	2018년 5월 16일(수) 16:00-18:00	장애영유아 담당 교사 3명
2차 심층면접(FGI)	2018년 5월 17일(목) 10:30-12:30	장애통합 관련기관 실무자 3명
3차 심층면접(FGI)	2018년 5월 21일(월) 16:00-18:00	장애통합보육어린이집 원장 3명
4차 심층면접(FGI)	2018년 5월 24일(목) 10:30-12:30	장애영유아담당 부모 3명

4) 전문가 자문

전문가 자문은 총 2회 진행하였다. 첫 번째 전문가 자문은 연구 초기 단계에 실시하여 연구방향 및 설계 적절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등을 자문 받았으며, 두 번째 전문가 자문은 서울시 어린이집 취약보육(장애통합보육)의 운영 내실화 방안의 정책적 제언과 전문 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컨텐츠 개발 및 교육방법에 대한 1차 결과물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결과 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서울시 어린이집 취약보육(장애통합보육)의 운영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제 4절 연구 추진체계

본 연구는 아래 <표 1-3>와 같이 추진되었다.

【표 1-3】 연구 추진과정 및 내용

단계	주요내용	
1단계: 기획 및 착수 (3-4월)	연구기획	▶ 시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선행연구 / 법률 검토	▶ 장애통합보육 선행연구물을 검토 및 분석 ▶ 국내·외 장애통합보육 관련 법률 검토 및 분석
	전문가 자문①	▶ 전문가 착수자문회의 실시 : 연구방향 및 설계 적절성, 연구방법 타당성 자문
	착수결과 보고서	▶ 착수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2단계: 조사연구 (5-6월)	설문조사	▶ 서울시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실태 및 요구 조사 : 원장, 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일반 보육교사
	심층면담(FGI)	▶ 장애통합보육 관련 심층면접(FGI) : 장애통합보육 관련 기관 담당자, 원장, 장애영유아 담당교사, 부모
	결과분석	▶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FGI) 결과 분석
3단계: 취약보육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 (7월)	전문가 자문②	▶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 결과를 중심으로 취약보육 운영 내실화 방안 자문
	결과보고서	▶ 결과보고서 작성 : 서울시 어린이집 취약보육(장애통합보육) 운영 내실화 방안
4단계: 최종심의 및 최종보고 (8월)	최종심의	▶ 최종심의 ▶ 심의내용 반영 및 수정
	최종보고	▶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제 5절 용어정리

1. 장애통합보육 관련 어린이집

현재 장애영유아를 대상으로 장애통합보육을 진행하는 어린이집은 일반어린이집,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나눌 수 있다.

1) 일반어린이집

일반어린이집은「영유아보육법」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에 나와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에서 장애영유아가 입소하여 장애통합보육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2)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19조2항에 근거하여 3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말하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다목의 설치기준⁷⁾을 갖추어야 한다.

7)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다목의 설치기준

다. 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다음과 같은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2층 이상의 시설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적어도 한 곳 이상에 기울기 1/12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2) 출입구는 비상재해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도록 하고, 시각장애아를 위한 점자블록이나 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3) 복도, 문, 화장실은 휠체어의 출입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 4) 옥외 피난계단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9조1항에 근거하여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을 말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나목의 설치기준⁸⁾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장애통합보육을 위해 정원 범위의 40%까지 비장애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다.

8)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나목의 설치기준

나. 장애아 12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설 및 설비 외에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1) 장애아가 활동하기에 충분하도록 어린이집의 시설(놀이터는 제외한다)은 장애아 1명당 7.83제곱미터 이상, 보육실(교실, 거실, 포복길, 유희실, 치료교실, 집단활동실을 포함한다)은 장애아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비장애아를 함께 보육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시설면적(놀이터 면적은 제외한다)은 비장애아 1명당 4.29제곱미터 이상, 보육실(교실, 거실, 포복실, 유희실, 치료교실, 집단활동실을 포함한다)은 비장애아 1명당 2.64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 2) 집단활동실(강당, 놀이실)은 문턱 없이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되어야 하고 휠체어·보행기 등의 출입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 3) 출입구는 비상제해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게 설계되어야 하며, 시각장애아를 위한 점자블록이나 유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4) 옥외 피난계단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5) 회전문과 자재문(自在門: 문턱이 없어 양방향으로 열리는 문)은 금하며 자동문 설치 시 문의 개폐 시간은 3초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6) 휠체어에 앉은 영유아가 문의 손잡이를 잡을 수 있어야 한다.
- 7) 계단 외에 엘리베이터 또는 기울기 1/12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II

장애통합보육 이론적 고찰

제 1절 장애통합보육 국내 선행연구 고찰

제 2절 장애통합보육 국외 선행연구 고찰

제 3절 장애통합보육 법적 쟁점 분석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I

장애통합보육 정책현황 및 쟁점

제 1절 장애통합보육 국내 선행연구 고찰

1. 장애통합보육 개념정의 및 사회적 동향

장애통합보육은 일반적으로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어왔다. 장애영유아 통합보육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와 그 개념을 살펴보면 <표 II-1>과 같다.

표 II-1 장애통합보육 선행연구의 개념 및 정의

용어	출처	개념 및 정의
통합교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6항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3.21.>
주류화 (Mainstreaming)	박혜준 (2010)	장애 아동이 장차 한 사회에 나가 주류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주류 속에 함께 교육시키는 방법이다.
	Tumbull & Turbull(1990)	장애 아동을 가능한 일반 아동들의 생활흐름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통합 (Inclusion)	김순임 (2012)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두 집단을 필요에 따라 <u>합친다(inclusion)</u> 는 개념으로 처음부터 함께 한다는 의미이다.
	Sailor(1991)	장애영유아가 일반학급 프로그램에 진정한 구성원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Gabke, Laycock, Maroney, Smith (1991)	각 아동이 장애가 없으면 다녔을 학급에서 최대한 적절하게 교육받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용어	출처	개념 및 정의
부분통합 (partial unity)	홍은주 (2005)	비슷한 연령대의 장애유아가 활동별 혹은 시간별과 요일별로 함께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정상화 (Normalization)	한국통합교육학회 (2005)	가능한 한 사람들의 행동, 외모, 경험, 지위와 평판을 높이고 지원하여 그들에게 적어도 평균수준 이상의 시민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Bruininks (1987)	지적 장애 및 여타의 결함을 가진 이들에게 제공되는 제반 서비스는 제한적으로 제공되기보다는 그들의 비장애 친구들과 경험하거나 제공받는 환경과 동일하게 제공해야한다.
역 통합 (Reversed Mainstreaming)	조윤경, 홍은주 (2005)	일반영유아가 장애영유아반 교실에서 일정시간이나 활동을 함께 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통합의 개념은 일반 보육현장에 장애영유아를 포함시키는 주류화(Mainstreaming)의 개념에서 제시되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류화의 개념보다는 통합(포함, Inclusion)의 개념으로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분리된 두 집단을 하나로 합쳐기는 과정이라는 개념보다는 처음부터 한 개의 집단으로 포함(Inclusion)되어 있는 개념으로 인식하도록 보육하는 것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정혜진 외, 2016).

장애통합보육은 최근에는 두 가지로 정의한다. 장애영유아와 일반영유아가 시간별, 요일별로 부분적인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부분통합(partial unity)의 개념과 두 번째는 하나의 교실에 일반영유아와 장애영유아가 함께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완전통합(Inclusion)의 기회를 강조하는 개념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Odom, 2000; 김순임, 2012).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전에는 장애통합보육이 아닌 장애영유아, 일반영유아가 분리된 분리보육이 이루어졌다. 분리교육은 장애영유아의 특수성을 지원하기 위한 수월성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다(오원석, 2008). 하지만 분리보육은 보육의 보편성을 추구하기 위한 기회균등과 선택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1970년대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비판을 받아왔다(박승희, 2003).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1970년대 이후에 인간의 행동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관점에서 장애영유아의 보육을 분리보육보다는 통합보육 환경에서 합리적 계획과 일관성을 유지하여 보육의 보편성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변화하였다(변순옥, 2014).

1994년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장애영유아를 비롯한 특수교육에 대한 정의, 대상자, 배치, 비용, 통합교육, 개별화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되었고, 1994년을 기점으로 1995년부터 장애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해 영아전담시설에 준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인력과 시설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1996년도에 본격적으로 장애통합보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확대되는 과정으로 변화되어 왔다(정길정, 2002).

장애통합보육에서 말하는 통합은 교실 환경에서 장애영유아, 일반영유아 모두가 함께 적절한 보육·교육을 받을 수 있는 통합(Inclusion)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통합보육의 경우는 주류화(Mainstreaming), 필요에 따라 부분통합(partial unity)의 개념에서 점차 일반영유아의 보육현장에 장애영유아를 함께 보육·교육하는 형태로 확장되어, 현재는 대부분의 장애통합어린이집에서 ‘완전통합(Inclusion)’ 보육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 국제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을 채택함에 따라 인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2007년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장애통합보육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6항에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라고 장애통합보육에 대한 개념을 명시함으로써 장애통합보육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계기가 되었다.

박은혜와 이소현(2011)은 장애통합보육에서 물리적·학문적·사회적 통합 모두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장애통합보육에 이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수준을 지닌 학급 내 모든 영유아가 누구나 교육적 접근이 가능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교육적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장애 영유아를 위한 장애통합보육은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만 3세 미만의 장애 영아보육·교육에 대한 무상교육과 만 3세 이상의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 과정의 무보육·교육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는 것을 기준으로 2011년 제정된 「장애아동 복지

지원법」 및 2015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등을 포함하여 법적인 측면에서 그 당위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장애 영유아 통합보육·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김진호, 차재경, 2017) 되면서 정부에서도 장애통합보육에 대한 정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영유아(장애영유아)의 증가에 따라 이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아동권리 관점의 보육프로그램이 요구되어(보건복지부, 2014), 장애통합보육은 장애영유아의 보육환경 속에서 동등한 자격과 권리를 인정하고 동등한 소속감을 지닐 수 있는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이소현, 2003; 정혜진, 2016). 그러므로 장애통합보육의 진정한 통합(Inclusion)은 물리적 공간의 통합을 넘어 동등한 권리와 가치를 인정하는 교육적, 사회적, 환경적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2. 장애통합보육 국내 선행연구 비교분석

1) 인적 환경

장애통합보육에서 인적 환경이라 함은 장애영유아들이 어린이집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 교류를 하는 인력을 말한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서의 인력 환경은 원장, 특수교사⁹⁾,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¹⁰⁾, 통합학급의 일반보육교사¹¹⁾, 치료사¹²⁾, 보조인력 등이 인적 환경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장애영유아를 둘러싼

9) ① 유형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유치원 과정만 해당)을 소지하여 장애영유아가 재원하고 있는 장애통합학급에서 근무하는 교사를 말한다.

② 유형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5조 시행당시(2012년 8월 5일) 어린이집에 배치된 장애아 담당 교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직 무교육을 2016년 3월 1일까지 80시간 이수하여 장애영유아가 재원하고 있는 장애통합학급에서 근무하는 교사를 말한다.

10)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수하거나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아 장애영유아가 재원하고 있는 장애통합학급에서 근무하는 교사를 말한다.

1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장애영유아가 재원하고 있는 장애통합학급에서 근무하는 교사를 말한다.

인적 환경 범주에 속한 인력들의 장애영유아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가 장애통합보육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김은영 외(2007) 연구자들은 장애통합학급을 운영하는 교사들의 협력 또한 통합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밝히고 있다. 장애통합보육·교육 기관에서 교사와 원장의 태도 및 가치관, 전문적 지식 외에도, 보조교사 인력, 자원봉사자 등의 지원 유무(강경숙, 강영택, 김성애, 정동일, 2002; 김은영, 이소현, 유은영, 송신영, 2007), 교사 대 영유아의 비율(강경숙, 권택한, 김수연, 김은주, 2000; 김은영, 이소현, 유은영, 송신영, 2007)등은 장애통합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하지만 실제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서 전문 인력 수급과 배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이유로는 유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및 수당, 보조인력 배치 미흡, 교사 대 장애영유아 비율 등이 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장애통합학급을 운영하는 장애전담교사 및 일반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고, 매년 다른 장애유형으로 인해 현재 정해진 교사 1명대 장애영유아 3명의 비율이 적절하지 않으며, 현재의 보조 인력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점이 선행되어야 전문 인력의 수급 및 배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김은영 외, 2007; 배혜숙 2008, 이정림 외, 2012; 정혜진 외, 2016).

장애통합보육의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이정림과 동료들(2017)의 연구에 의하면, 특수교육과가 있는 사범대학에 유아특수교육과를 신설하거나 특수교육과 또는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유아특수교육을 복수전공 하도록 하여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고경력자의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가 특수교육 대학원에서 유아특수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정리하면, 장애아통합의 인적 환경에 대한 연구는 크게 유아특수교사의 배치에 어려움에 관한 연구, 장애영유아담당 교사 대 장애아동의 비율의 하향화 필요, 보조교사의 배치에 관한 것과 장애영유아 담당교사의 신념, 효능감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
- 12) ① 유형 : 관련분야 국가자격증 소지자(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재활사, 임상심리사 등)가 장애영유아가 재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파견or순회 포함)하는 자를 말한다.
 ② 유형 : 「자격기본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치료관련 민간자격 소지자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를 발간하는 학회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발급하는 치료관련 민간자격 소지자가 장애영유아가 재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파견or순회 포함)하는 자를 말한다.

있다. 즉 장애영유아담당 교사의 전문 인력 확보 및 보조 인력의 배치와 이들의 교사신념, 장애담당교사로서의 직무만족도, 효능감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는 장애통합보육의 질은 인적자원이며 이들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김경은과 이대균(2017)은 장애통합반의 교사 간 협력이 장애통합의 어려움으로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통합 보육교사의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교사 간 협력, 인력지원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II-2 장애통합보육 인적 환경에 대한 선행연구의 주요 논의

저자 연도	분석대상 및 조사방법	분석내용 및 분석방법	주요결과 및 제언
김은영, 이소현, 유은영, 송신영 (2007)	· 심층면담(관계자 41명) · 설문조사(원장 691명, 교사 1,005명, 부모 90명) · 사례조사(유치원 1기관, 어린이집 1기관)	· 선행연구 정리, 관련 제도 분석, 현황 분석, 실태와 요구 분석 · 사례 제시, 내실화 방안제안	· 전문 인력 수급과 교육, 수당 지급이 필요 · 전문 보조인력, 일반 보조인력 배치와 지원이 필요 · 교사 대 영유아 비율 하향화 필요
배혜숙 (2008)	· 설문조사(원장 91명)	· 장애통합보육의 선별, 진단, 배치에 대한 내용으로 분석	· 장애통합보육에서 전담 교사의 배치는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인한 교사 배치 어려움이 있음
김경희, 홍기영 (2009)	· 설문조사(장애전담교사 200명)	· 장애통합보육에서 보육신념, 보육효능감에 대한 내용으로 분석	· 장애통합보육에서 전담 교사의 보육신념과 보육 효능감을 높이고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이 되어야 함
전한나, 조윤경 (2010)	· 설문조사(유치원교사 155명, 어린이집교사 162명)	· 장애통합보육에 대한 신념과 실제에 대한 내용으로 분석	· 경력과 학력이 높을수록 장애통합보육에 대한 인식과 신념 간의 관계가 있음
이정림, 김은영, 엄지원, 강경숙 (2012)	· 심층면담(관계자 76명) · 사례조사(유치원 2기관, 특수교육지원센터 1기관)	· 선행연구 검토, 관련 제도 및 현황 분석, 국내외 사례 제시 · 선진화된 지원 방안 제시	· 유아 특수교사 수급 확보율 제고 · 특수교사 자격인정 사후 조치 강화 · 교사 자격집단 간의 역할 구분 명시 및 처우개선 · 장애영유아 대 교사비율의 조정 · 특수교사들을 위한 유인책 및 활용방안 마련
정혜진, 안영주 (2016)	· 심층면담(관계자 10명) · 설문지 조사(원장 97명, 교사 117명)	· 사업내용 및 현황, 실태 조사 · 운영 개선방안 도출	· 보조인력 지원 및 일반 보육교사 처우, 장애통합 이해교육 제공
김경은, 이대균 (2017)	· 심층면담(장애담당교사 8명)	· 장애통합보육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보람에 대한 면담 내용으로 분석	· 장애통합반의 아이들, 노력하는 교사, 신뢰를 받는 교사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동료에 요소에서 보람을 느낌
이정림, 이윤진, 박현옥 (2017)	· 심층면담(관계자 31명) · 사례조사(장애아전문어린이집 1기관, 장애통합어린이집 1기관, 특수학교 1기관, 사립유치원 1기관)	· 현황, 서비스 양적·질적 차이, 이용만족도, 요인, 수급현황 파악 · 지원체계, 개선방안 마련	· 특수교사 수급을 위해 사범대학에 유아특수 교육과를 신설하거나 특수교육과 또는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유아특수교육을 복수전공 하도록 하여 인력을 확보 필요 · 어린이집의 고경력자의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가 특수교육대학원에서 유아특수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기회 보장 필요

2) 물리적 환경

장애통합보육을 운영할 때에는 독립적인 기능성을 촉진할 수 있는 물리적인 환경을 구성하고 제공함으로써 장애영유아들이 통합학급 내에서 활발히 참여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체계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와 같은 물리적 환경의 기본적인 요소로는 첫째, 장애영유아의 접근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설비의 정비이다. 둘째, 조명과 소음 정도, 시각적·청각적 정보 입력의 정도와 강도, 교실의 물리적 정돈 상태와 가구의 배열, 교수자료의 위치 및 접근성 등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한다(김태숙, 2009). 이와 더불어 국가에서도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설치 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다목의 설치기준¹³⁾을 명시하고 있으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4항에는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장애통합보육을 운영할 때, 장애영유아들은 특히 물리적 환경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물리적 환경을 적절하게 잘 갖추고 있으면 장애영유아의 정상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할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들의 사회적 통합을 가능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장애영유아들을 위한 물리적 환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실면적 법적기준 마련, 장애영유아를 위한 별도 공간 마련 등을 제안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김은영 외, 2007; 이정림 외, 2012; 이정림 외, 2017).

오유정 외(2006)는 장애통합보육을 하는 기관에서는 장애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출입문, 경사로, 책걸상, 화장실 등의 접근에 있어 편의성이 있어야 하며, 이외의 시각·청각장애영유아를 위한 경보, 피난 설비, 시각장애인 유도과 안내 설비, 지체부자유 영유아용 책걸상, 세면대, 계단용 리프트, 손잡이 등이 있어야 한다고

1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다목의 설치기준

다. 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다음과 같은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2층 이상의 시설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적어도 한 곳 이상에 기울기 1/12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2) 출입구는 비상재해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도록 하고, 시각장애아를 위한 점자블록이나 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3) 복도, 문, 화장실은 휠체어의 출입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 4) 옥외 피난계단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정혜진과 안영주(2016)는 신체적으로 중증장애가 있는 영유아에 대해서 차량을 지원해줌으로써 등·하원 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 지원과 장애영유아의 다양한 장애 유형과 수준을 위한 교재교구 대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장애영유아 관련 유관기관의 연계가 이루어질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실제현장에서 장애통합학급을 운영하는 교사들은 장애영유아 특성상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교재교구를 필요로 하고 있다. 하지만 민오기(2011)의 연구에 의하면 장애영유아의 학습인지영역을 도와줄 수 있는 교재교구는 일반적으로 상품화 되어 있는 교구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신변처리나 일반영유아들과 같은 공간에 머물러 있다는 정도에 만족해야 한다는 어려움을 밝히고 있다.

결론적으로, 장애영유아에게 적합한 물리적 환경이 제공된다면 장애통합보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부담을 줄고 적극적으로 장애통합보육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음은 틀림이 없다. 이에 따라, 장애통합보육을 운영하는 기관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후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 표 II-3 】 장애통합보육 물리적 환경에 대한 선행연구의 주요 논의

저자 연도	분석대상 및 조사방법	분석내용 및 분석방법	주요결과 및 제언
김은영, 이소현, 유은영, 송신영 (2007)	· 심층면담(관계자 41명) · 설문지조사(원장 691명, 교사 1,005명, 부모 90명) · 사례조사(유치원 1기관, 어린이집 1기관)	· 선행연구 정리, 관련 제도 분석, 현황 분석, 실태와 요구 분석 · 사례 제시, 내실화 방안제안	· 편의시설의 효율적 설치와 환경적 배려 필요 · 보조공학기기 대여 및 관련 연수 필요 · 교재교구 및 제작 매뉴얼 보급
김태숙 (2009)	· 문헌자료조사	· 우리나라의 통합보육의 인적 환경, 물리적 환경, 비효율적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으로 분석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지원 필요 ·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개선책 마련 · 교재교구 부족함으로 보완 필요
민오기 (2011)	· 설문지 조사(교사 206명)	· 장애통합보육에 대한 교사 인식, 비선호 요인에 대한 내용으로 분석	· 장애통합보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물리적 환경 방안 필요
이정림, 김은영, 엄지원, 강경숙 (2012)	· 심층면담(관계자 76명) · 사례조사(유치원 2기관, 특수교육지원센터 1기관)	· 선행연구 검토, 관련 제도 및 현황 분석, 국내외 사례 제시 · 선진화된 지원 방안 제시	· 장애영유아가 포함되었을 시 보육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공간 구성을 하도록 모두 통용될 수 있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면적 기준 마련

저지 연도	분석대상 및 조사방법	분석내용 및 분석방법	주요결과 및 제언
정혜진, 안영주 (2016)	· 심층면담(관계자 10명) · 설문지 조사(원장 97명, 교사 117명)	· 사업내용 및 현황, 실태 조사 · 운영 개선방안 도출	· 등하원 차량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 ·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재교구 대여 지원 사업 활성화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별도 공간 마련
이정림, 이윤진, 박현옥 (2017)	· 심층면담(관계자 31명) · 사례조사(장애아전문어린이집 1기관, 장애통합어린이집 1기관, 특수학교 1기관, 사립유치원 1기관)	· 현황, 서비스 양적·질적 차이, 이용만족도, 요인, 수급현황 파악 · 지원체계, 개선방안 마련	· 장애통합학급 교실 면적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 · 장애통합학급 반 편성 기준 고려 · 편의시설 설치 지원

3) 장애통합보육 운영 및 프로그램

장애통합보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장애통합보육의 인적 환경,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교수방법, 교육과정, 교육환경 등 장애통합보육 운영 및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장애통합학급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별화교육프로그램¹⁴(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 IEP)은 일반영유아 교육과정과 개별화교육프로그램(IEP)이 병합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서로 다른 교육과정을 접목하는 역할로 운영이 된다. 이로 인해 개별화교육프로그램(IEP)은 일반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월간, 주간, 일일 일과계획 및 활동이 계획-실행되는 과정 중에 장애영유아를 위한 진단, 평가 절차를 거쳐 개발된 개별화교육프로그램(IEP)에 따라 활동 수정 계획을 작성, 실행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그 결과로 장애영유아의 참여와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인해 개별 교수목표를 성취하게 된다(이소현, 2007). 그러므로 장애통합학급 내에서 프로그램이 잘 이루어지려면 일반보육교사와 장애전담교사(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긴밀한 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장애통합보육 프로그램 및 운영이 내실 있게 실행될 수 있다. 하지만 최미진 외(2017)의 연구에 의하면, 장애통합학급을 함께 운영하는 장애 전담

14) 장애영유아가 장애통합학급에서 장애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하게 개별적으로 세운 교육프로그램으로서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계획을 교사, 부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팀에 의해 문서로 작성한 후, 이에 따라 개별 장애영유아에게 알맞은 교육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활동을 말한다.

교사 및 일반보육교사의 협력교수의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며, 발생 원인으로 장애영유아에 대한 이해부족, 협력교수를 위한 협의시간 부족,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의 일과 조정의 어려움 등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장애통합학급 보육환경에서 장애영유아들이 또래들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장애통합보육 운영 중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장애영유아들은 일반적으로 발달상의 사회성이나 의사소통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장애영유아들이 장애통합학급 내에서 사회적으로 또래들과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장애통합보육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

따라서 장애통합학급에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반보육교사와 장애전담교사(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들이 장애통합보육 프로그램 교수방법에 대한 지식, 활동 지도방법, 장애영유아를 위한 협력, 교재제작 및 수정방법 등의 장애담당 및 통합교사 간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표 II-4 장애통합보육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선행연구의 주요 논의

저자 연도	분석대상 및 조사방법	분석내용 및 분석방법	주요결과 및 제언
김은영, 이소현, 유은영, 송신영 (2007)	· 심층면담(관계자 41명) · 설문지조사(원장 691명, 교사 1,005명, 부모 90명) · 사례조사(유치원 1기관, 어린이집 1기관)	· 선행연구 정리, 관련 제도 분석, 현황 분석, 실태와 요구 분석 · 사례 제시, 내실화 방안제안	·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의 실행 · 지역별 일정규모의 치료실과 치료교사를 배치하여 장애영유아들이 개별화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적절한 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전문가 지원 체계 및 자문 사이트 구축
이정림, 김은영, 엄지원, 강경숙 (2012)	· 심층면담(관계자 76명) · 사례조사(유치원 2기관, 특수교육지원센터 1기관)	· 선행연구 검토, 관련 제도 및 현황 분석, 국내외 사례 제시 · 선진화된 지원 방안 제시	· 장애영아를 위한 가정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 순회교육을 통한 교육 및 치료 제공 제안 · 치료사 배치를 통한 협력적 접근 제안
이혜민, 강영심, 정혜윤 (2016)	· 설문지조사(교사 126명)	· 장애유아 통합교육 효능감, 장애유아 통합교육 효능감 영향 요인 분석 · 독립표본 t검증,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 장애통합교육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동료교사와의 관계, 원장과의 관계, 직무자체, 물리적 환경, 행정체제, 보수 및 승진, 부모와의 관계가 상관이 있음 · 장애통합교육 효능감의 영향력은 직무자체, 장애유아 통합교육 경험 31% 설명함
박희영, 김자경, 서주영 (2016)	· 심층면담(어린이집 교사 4명, 유치원 교사 4명)	· 개별화교육지원 참여 경험에 대한 심층면담 내용으로 분석 · 면담내용 코딩화로 분석	· 개별화교육지원팀을 통해 장애유아에 대한 이해와 정보가 공유될 수 있다고 인식함 · 유아특수교사는 교사, 부모, 치료사와의 연계를 통한 개별화교육목표의 실행에 어려움을 가짐
최미진, 이미숙,	· 심층면담(일반교사 4명, 특수교사 4명)	· 장애통합학급 운영 시 교사 간 협력에 대한 면담내용으로 분석	· 장애통합학급 운영 시 협력교수의 어려움으로 장애유아에 대한 이해부족, 협의시간 부족,

저자 연도	분석대상 및 조사방법	분석내용 및 분석방법	주요결과 및 제언
한민경 (2017)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의 일과 조정어려움 언급 · 장애통합학급 운영 시 협력교수를 위한 조건으로 열린 마음 협력교수를 위한 준비의 시간 공동책임 제시
안의정, 원종래, 김승현 (2017)	· 실험조사(장애영유아 대상 만3세 3명, 만4.5세 3명)	· 일과에 삽입된 관계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 또래 수용도 변화 분석 · 독립표본 t검증	· 일과에 삽입된 관계증진 프로그램 처치 후 장애영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 또래 수용도 증진 · 일과에 삽입된 관계증진 프로그램 실행 시 교사들에게 친화적인 방법임을 제시
이정림, 이윤진, 박현옥 (2017)	· 심층면담(관계자 31명) · 사례조사(장애아전문어린이집 1기관, 장애통합어린이집 1기관, 특수학교 1기관, 사립유치원 1기관)	· 현황, 서비스 양적·질적 차이, 이용만족도, 요인, 수급현황 파악 · 지원체계, 개선방안 마련	· 대상별, 장애유형별, 발달시기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매뉴얼이 개발되어 보급이 필요 · 장애영유아의 부모 및 비장애 형제지원 프로그램이 필요

4) 교사(원장) 전문성

장애통합학급을 운영할 때에는 일반보육 프로그램 외에도 장애영유아에 대한 교육 지원을 위해 개별화교육프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 IEP), 개별화가족지원계획¹⁵⁾(Individualized Family Service Plan : IFSP)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통합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는 장애영유아에 대한 이해와 그들을 위한 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지식은 장애통합보육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소이기 때문에 교사의 전문성은 중요하게 작용한다(김은영 외, 2007).

더불어 실제 장애통합보육 현장에서 개별화교육프로그램(IEP)은 다양한 장애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장애영유아에게 더 구조화되고 개별화된 목표지향적인 교수를 제공해야 하고, 학습을 유도하는 특수성이 있기에 개별화교육프로그램(IEP)을 계획-실행-평가 할 때엔 전문성이 많이 요구된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통합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는 자신의 역할에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따라서 장애통합보육 환경에서 전문성을 갖춘 교사는 장애통합보육의 내실 있는 실현에 필수적인 요소라 볼 수 있다(남춘단, 2007).

한편, 박은혜와 이소현(2011)은 내실있는 장애통합보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원장이 무엇보다 먼저 장애통합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장애아

15) 장애영유아 및 그들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으로 가족목표와 서비스 등의 가족 요소들이 첨가된 조기중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수활동을 말한다.

통합어린이집의 인적 구성원들에 대한 모델링과 장애통합보육과 관련된 새로운 아이디어나 가치관을 표현해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의 장애통합보육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해결해줄 수 있는 원장이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으로서의 비전과 가치를 추구하기 위하여 새로운 정책이나 운영방법을 개발하고, 자신을 포함한 장애통합보육과 관련된 인적 구성원들에게 전문성 개발과 공유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실현해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내실있는 장애통합보육이 되려면 장애통합학급을 담당하는 교사, 기관의 원장 모두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가정 및 타 기관 연계(협력)

장애통합보육에서 가정연계(협력)란 부모와 어린이집 교육 활동의 연계를 통해 부모에게 장애영유아를 가정에서 지도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알려주고 생활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교수 활동들을 해보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조윤경, 홍은주, 2005). 장애영유아를 위한 가정연계 활동은 장애통합학급에서 제시된 활동을 위주로 가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활동들을 선택하여 각각의 장애영유아의 수준에 적합한 지도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영유아 담당 교사는 부모의 요구와 선호도 접근 방식에 대한 난이도와 참여도를 고려하여 가정연계 활동의 양과 수준을 조절하게 된다. 이러한 장애통합보육에서 가정연계는 장애영유아의 발달에 있어 일관성과 연계성 있게 진행되어 반복적인 학습과 구조화된 과업의 수행, 일반화 작업을 거쳐 자신의 것으로 그 행동을 습득하여 활용할 수 있고, 나아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 능력까지 키울 수 있다.

가정과의 연계(협력)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중요한 요소이며, 부모-교사 간의 협의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부모와 협력하는 자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들어주며 효과적으로 질문하고 관련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김은영 외, 2007).

장애통합보육에서 타 기관과의 연계(협력)란 장애영유아가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이외에 다니는 병원, 센터, 치료실, 장애인 복지관 등에서 실시한 다양한 검사 및 정보, 치료내용, 앞으로의 계획 등의 정보를 공유 또는 조연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영유아는 가정과의 연계와 더불어 타 기관과의 일관성과 연계성 또한 중요하다. 장애영유아가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동시에 받고 있는 다양한 교육과 치료서비스와의 연계와 협력도 장애영유아를 효과적으로 교육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 장애영유아 담당 교사는 외부 타 기관의 전문가로부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과정의 수정과 운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장애통합보육의 질과 연결(김은영 외, 2007)될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내실있는 장애통합보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정연계 시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장애영유아들이 다니는 타 기관과의 연계(협력)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의 필요성이 있다.

3. 소결

앞서 장애아통합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해 살펴보았다. 신미희와 최세민(2006)은 장애통합보육이 내실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장애통합보육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의 효과를 강조였다. 즉, 인적 환경, 물리적 환경, 장애통합보육 운영 및 프로그램, 교사(원장)의 전문성, 가정 및 타 기관 연계(협력)와 관련된 다양한 구성 요인들이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있을 때, 장애통합보육의 효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장애통합보육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장애통합 학급을 운영하는 인적 환경이다. 일반보육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등으로 장애통합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애통합학급에서 교사 간 협력, 보조교사 등의 지원인력이며, 특히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의 하향화, 장애담당교사의 직무만족도 및 효능감을 높이는 노력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또한 장애통합보육이 내실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원장의 장애통합보육 운영 철학과 교사의 전문적 지식을 위한 지속적 지원 방안이 요구된다. 특별한 요구를 가진 장애영유아의 개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등 전문가의 개발 및 컨설팅, 다양한 보육현장의 지속적 지원은 중요한 요인이 된다. 뿐만 아니라 장애통합학급에서 일반영유아와 장애영유아의 요구를 지원할 수 있는 풍부한 물리적 환경 제공은 장애통합보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또한 장애아동의 정보제공, 상담지원 등 장애관련 기관의 연계는 어린이집-장애지원기관-가정의 적극적 연계가 잘 갖추어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진정한 장애통합(Inclusion)은 장애영유아와 일반영유아가 함께 동등한 권리와 소속감을 갖도록 인적 환경, 물리적 환경, 장애통합보육 운영 및 프로그램, 가정 및 타 기관과의 효과적인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 2절 장애통합보육 국외 선행연구 고찰

1. 장애통합보육 국외 선행연구 분석

장애통합보육은 전 세계적으로 같은 방향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각 나라별 장애통합보육에 대한 선행연구 및 정책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 장애통합보육과 관련한 복지정책의 대표적인 국가들은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들의 복지 지원 체계는 우리나라와 다른 점들이 있어 정책들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복지 지원 체계와 유사한 점이 있는 독일, 일본, 호주와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관련 법, 제도 등을 많이 벤치마킹하는 미국 등의 나라로 한정하여 국외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독일, 미국, 일본, 호주 네 국가의 장애통합보육과 관련된 제도적 환경을 살펴보고, 서울시 장애통합보육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1) 독일

독일 연방정부는 1984년부터 약 4년에 걸쳐 장애아 통합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행하였고, 독일 8개 지역에서 규모와 여건 등이 비슷한 기관을 선정하여 현장과 실제 상황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구성하도록 하였다(이길동, 2010). 1980년 가톨릭 재단의 지원으로 설립된 아이텐스하임 유치원은 이 당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적용한 사례로 1990년부터 장애아통합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기관 운영을 시작하였고, 연구 조사 당시 3~6세 혼합연령과 장애유아통합반 등 총 6그룹을 운영하고 있었다(이길동, 2010).

아이텐스하임 유치원에서 실시한 프로그램은 개발에는 준비과정 6개월, 현장 적용 3년, 평가 1년 등 총 4년 6개월이 소요되었다(이길동, 2010). 또한, 연방정부에서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였는데, 개발인력으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유아교육전공자 2명, 사회 복지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회교육학(특수교육) 전공자 2명, 심리학 전공자 1명 등을 비롯하여 8개 실험 유치원 원장 및 교사들을 포함하였다(이길동, 2010). 이와 같이 프로그램 개발에 장애아 통합보육·보육에 능통할 수 있는 이론 전문가와 함께 유치원 현장에 정통한 전문가로서 원장과 교사들도 개발원으로 구성하였다는 점 및 프로그램 현장 적용 기간이 준비와 평가과정의 두 배가 넘는 기간이라는 점은 실제적이고 현실적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해당 유치원은 학급구성원을 장애유아 5명을 포함한 총 15명으로 제한하였는데, 이는 현장 연구를 통해, 경제적이면서도 또래 집단 외에 다른 연령의 유아들과도 다양한 상호 경험을 할 수 있는 규모이기 때문이라 설명하고 있다(이길동, 2010). 더불어, 각 반 교사는 정교사 1명 외에 특수교사 1명, 보조교사 1명 및 장기실습생 1명(독일의 유치원 교사 양성 아카데미에서는 총 3년을 현장에서 실습을 해야 하는 교육과정이므로 항상 장기실습생이 배치됨)을 두으로써(이길동, 2010), 유아들이 필요로 하는 개별적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아이텐스하임 유치원은 여러 형태로의 접근을 통해 부모들의 참여를 촉구하였고 이를 통해, 가정과의 긴밀한 교류, 유아들의 교육활동 촉진 및 심화, 장애아통합교육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이길동, 2010).

아이텐스하임 유치원의 장애아동 통합교육에 대한 운영과정에 대해 살펴본 결과, 효과적인 장애통합보육·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이를 실행하는 기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주요한 보육 과제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시점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 미국

미국 미시간 주 남동부의 항구도시인 Port Huron 지역 학구(district)에서 이루어지는 특수교육 및 영유아교육 서비스를 살펴본 결과, Port Huron의 학교들은 1973년 the Rehabilitation Act의 Section 504와 the Americans with Disability Act, Title II 에 따라 해당지역에 있는 자격 대상 각각에게 적합한 교육을 무상 제공으로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Port Huron Area School District, 2018). 또한, 그와 같은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들에게 온전한 연속상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이 가능할 때마다 지역 학교에 참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료들과 함께 일반 학급 교실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Port Huron의 특수교육 서비스는 독립된 학습 도움실(resource room), 협력 교수(co-taught) 및 교사 컨설턴트 등 여러 방법으로 전 지역구에 걸쳐 제공되고 있다(Port Huron Area School District, 2018).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Port Huron의 유아 특수교육 프로그램(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Program)은 0~5세 사이의 아동 중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학령기 전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이다(Port Huron Area School District, 2018). 영아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트 휴론 학구에 있는 Garfield Elementary School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션은 약속에 의한 방식이며 부모 또는 보호자가 함께 참여한다(Port Huron Area School District, 2018).

한편, 만 3~5세 사이 아동의 경우에는 그들의 이웃 학교 내의 장소 또는 학교와 가까운 장소, 두 곳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교통서비스가 제공된다(Port Huron Area School District, 2018). 만 3세에서 학기 중 만 4세가 되는 아동은 주 5일 동안 오전반에 참여할 수 있고, 만 4세에서 학기 중 만 5세가 되는 아동은 오후반에 참여할 수 있다(Port Huron Area School District, 2018). 해당 프로그램은 모든 아동이 각각의 고유한

성장과 발달 패턴을 가진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직원들은 부모와 가족들이 아동의 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격려한다(Port Huron Area School District, 2018). 그리고 영유아 특수교육 선생님, 언어 병리학자, 직업 치료사 및 물리 치료사가 교육과 치료를 한다(Port Huron Area School District, 2018).

또한, 부모나 건강 돌봄 전문가에 의해 아동이 언어나 말하기, 인지적, 사회적 및 신체적 등의 영역에서 발달 지연이 의심되어 영유아 평가 클리닉에 갈 경우, 지역 내 사는 부모에게는 평가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Port Huron Area School District, 2018).

미국의 주에서 이루어지는 장애통합·보육을 위한 노력들을 살펴본 결과 각 주마다 자체적인 계획, 프로젝트 등으로 장애 아동이 통합적인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이 중 캘리포니아 주는 통합교육을 위해 가장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주 중 하나이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7).

캘리포니아는 캘리포니아 교육부의 유아교육 및 지원부(Early Education & Support Division), 특수교육부(Special Education Division) 뿐만 아니라 WestEd와의 협력 하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하고 있다. WestEd는 당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비영리 서비스 기관으로 미국 전 지역과 해외에 걸쳐 교육과 다른 지역사회와 함께 일을 하며, 아동 뿐 아니라 청년, 성인을 위한 학습의 향상, 동등함의 성취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기관이다(WestEd, 2018).

여러 프로그램 중 우선 BEGINNING TOGETHER은 영유아교육 및 지원부와 WestEd 센터의 의해 만들어진 프로젝트로, 트레이너를 위한 훈련 기관을 운영, 기관 졸업자들의 지원, 지역 봉사활동 및 서면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7). M.A.P. to Inclusion and Belonging-Making Access Happen은 영유아교육 및 지원부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WestEd가 관리하는 프로젝트이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7). 해당 프로젝트는 자녀 돌봄(양육), 학령기 이후의 시기 및 지역공동체 환경 등에서 출생부터 21세까지 장애를 가진 아동의 통합을 지원한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7). 이를 통해, 주 전체에 모든 가족과 서비스 제공자에게 방해 요인

없이 통합적 자녀 양육으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자원, 훈련 및 지원을 제공해주는 주 전체의 체계를 만들고자 한다(California MAP to Inclusion & Belonging, 2018).

기술적 지원 요청에 대응하고 영유아기 보육 및 교육 프로그램에 있는 인력들에게 현장에 필요로 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The California Inclusion and Behavior Consultation(CIBC) 지원망은 M.A.P과 유사하게 영유아교육 및 지원부에서 재정 지원되고 WestEd의 협력으로 진행되고 있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7). 특수교육부서의 의해 재정 지원되고 있는 Seeds of Partnership: Family Engagement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프로젝트는 가족의 관여를 지원하고 모니터링의 자격요건 및 전문가 발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7), 장애아 통합교육을 위한 가족과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다.

그리고 The Desired Result access Project는 캘리포니아 교육부의 Desired Results Assessment System(바람직한 결과 평가체계)를 수행함으로써 특수교육자, 관리자 및 가족들을 지원한다(Desired Results Access Project, 2018). Desired Results Assessment System은 캘리포니아 특수교육 정보 관리시스템(California Special Educatio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에 보고된 개별화된 가족 서비스계획(Individualized Family Service Plans)이 있는 영유아기 아동 및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s)을 가지고 있는 유치원 준비반(transitional kindergarten)에 등록되지 않은 학령기 전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Desired Results Access Project, 2018).

종합해보면, 캘리포니아 교육부 내 기관에서 뿐만이 아니라 외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 트레이너 훈련 기관 운영, 기술 등 서비스 지원, 가족과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체계 구축, 평가 수행, 영유아기 아동 뿐 만 아니라 학령기 이후와 학교를 벗어난 장소에서도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 마련 등 다양한 방면으로 통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일본

일본의 장애통합보육과 관련된 사이타마대학 부속 특별지원학교는 특수교육법 개정이 이루어진 2007년 이전인 2004년부터 특별지원학교 내 시이노미를 개설하여 지역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였으며, 크게 상담 지원 부문과 임상실천 지원 부문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당시 센터에 배치되어 있는 인력은 특별지원학교 교원 4명, 전문상담사 2명, 임상발달교육사 및 임상심리사를 포함한 사이타마대학 교육학부 교수 6인이었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상시 상담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박경란, 박미정, 2015).

상담지원 중 하나인 전화 및 내방 상담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전화상담은 30분, 내방상담은 한 시간 정도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 필요 여부에 따라 발달검사 및 심리검사 등을 실시하고, 검사 결과 등에 따라 개별·집단 지도, 타 기관 소개, 유치원 및 학교 컨설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경란, 박미정, 2015).

또한, 시이노미에서는 개소 이래 학교컨설팅을 계속해서 실시하였는데, 학교로부터 컨설팅 의뢰가 오면, 컨설팅 시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컨설팅을 진행하기로 결정될 경우, 특별지원교육 코디네이터 전임교원 1명, 전문상담사 2명과 함께 컨설팅 대상 학생의 관찰, 관계자 협의회를 갖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었다(박경란, 박미정, 2015). 한편, 장애 교육 관련 시설의 요청에 따라 강사를 파견하여 다양한 주제의 강연회나 연수회를 실시하는데, 최근에는 개별 아동의 교육적 요구에 따른 구체적 지원 방안, 보호자와의 협력 방안, 일반학급에서의 특별지원교육(학급경영) 실시 방안 등의 주제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통해, 일본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통합교육·보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학교에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통합교육이 점차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시이노미는 상담 지원 외에 임상 실천 부문을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하였다. 발달장애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이노미는 이와 같은 증상으로 센터에 내방한 아동이나 학생 사례 중 정기적인 지도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대상에 대해 발달 검사를 실시하고 개별 또는 집단 지도를 실시하였다(박경란, 박미정,

2015). 특히, 집단 지도 시에는 관련 기관과의 연계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는 효과적인 특별지원교육이 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기에 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더불어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질 개선과 지역의 특별지원교육 발전을 위해 현장 교사 및 대학 전문가와 협력하여 실천 사례를 분석하는 등 연구 활동 또한 추진하고 있었다(박경란, 박미정, 2015). 시이노미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지원내용을 살펴본 결과, 장애영유아 보육을 위한 상담과 같은 지원 외에도 발달장애 관련 세미나나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프로그램 질 향상을 위한 학문적, 연구적인 노력을 병행하고 있는 점이 한국 특수지원교육과의 차이점이자 두드러진 특성으로 보인다.

4) 호주

호주 정부는 두 가지의 주요 프로그램 ‘자폐아 돕기(Helping Children with Autism: HCWA)’와 ‘장애아동을 위한 더 나은 출발(Better Start of Children with Disability: Better Start)’을 통해 장애 아동에게 조기 중재를 제공하고 있다(Department of Social Service, 2018). 두 프로그램을 통한 조기 중재 서비스와 지원에는 조기 중재 보조금(Early Intervention Funding), HCWA와 Better Start 국민건강보험 항목(HWCA and Better Start Medicare Items), 자폐 특수 조기 교육 및 보육 센터(Autism Specific Early Learning and Care Centres: ASELCCs), 조기 워크숍(Early Days Workshops), 놀이연결 놀이집단(PlayConnect Playgroup), 놀이집단 커뮤니티 이벤트(Playgroup Community Event), 긍정적 파트너십(Positive Partnership), 국외자 번역(Auslan Interpreting), 번역과 해석 서비스(Translating and Interpreting Service: TIS) 등 9가지 영역이 있다(Department of Social Service, 2018). 각 지원은 아동 연령이나 목표로 하는 집단,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등이 다르지만 이와 같은 장치들을 통해 장애 아동의 발달과 교육 및 그들의 부모, 가족 등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Department of Social Service, 2018).

두 가지 프로그램 중 보다 다양한 장애의 범위를 포함하는 Better Start에 초점을 두어 자세히 살펴보면, Better Start는 뇌성마비, 청각 장애, 시각 장애, 다운 증후군, 시각 손상, 청각 손상, 윌리엄 증후군, 장애, 안젤만 증후군, 가부키 증후군, 뇌성마비,

레트 장애 등 해당 프로그램의 범위에 해당하는 다양한 장애 유형 중 하나의 장애라도 진단을 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그들에게 조기 중재 서비스를 위한 보조금을 제공한다(Better Start, 2018). 각 장애는 적격 한계(eligibility threshold)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이는 복지부(Department of Social Service, DSS)에 의해 결정되어 왔다(Better Start, 2018).

한편, Better Start 프로그램은 적격 대상의 장애 유형의 한계와 더불어 아동 연령에 있어서도 제한을 두고 있는데, 아동의 연령이 6세가 되기 전에 Better Start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Better Start, 2018; Department of Social Service, 2018). 이는 진단을 받은 아동의 연령이 7세가 되면 보조금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Better Start, 2018; Department of Social Service, 2018).

Better Start에 등록된 아동들은 조기 중재 서비스 이용에 약 12,000달러(회계년도 당 최대 6,000달러)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에는 청각학, 시력교정법, 물리치료, 심리학, 언어치료가 포함되어 있다(Better Start, 2018). 더불어, 장애 아동이 있는 가족이 외곽 지역이나 먼 지역에서 사는 경우 2,000달러를 일시불로 지급하여, 서비스에 접근하는데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동 거리의 제한으로 인해 서비스 접근이 어려울 수 있는 가족을 지원하고 있다(Better Start, 2018).

멜버른 동부 교외에 위치한 Essex Height Primary School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6학년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Essex Height Primary School, 2018; 이정림 외 2012). Essex Height Primary School은 장애통합보육·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각의 아동이 도전적이고 자극적인 환경 속에서 그들의 잠재력에 도달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특히, 장애를 가진 아동의 다양한 요구를 적절히 충족시키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Essex Height Primary School, 2018).

Essex Height Primary School은 1980년 초반부터 장애학생 프로그램(Program for Student with Disabilities: PSD)의 자격에 해당하는 학생의 등록을 받고 있다(Essex Height Primary School 사이트, 2018). Essex Height는 통합에 대한 강한 철학을 가지고 특수 요구를 가진 학생들이 학교가 제공하는 음악, 운동, 캠프 등 모든 것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헌신을 하고 있다(Essex Height Primary School, 2018).

또한, 많은 학생들이 장애 학생들의 안전과 그들의 통합을 보장하는 인력을 필요로 할 것을 고려하여, 담임교사의 안내·지시 하에 있는 숙련된 지원 인력을 많이 갖추고 있다(Essex Height Primary School, 2018). 지원 인력은 장애영유아의 교육과정 접근, 자아존중감 촉진 등을 도움으로써 보다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Essex Height Primary School, 2018). 이와 같은 인력 차원의 노력 외에도 높이가 다른 두 곳을 연결하는 경사로(ramps), 장애 아동을 위한 침실시설, 현대적인 건강센터 등을 갖추고 있어 장애영유아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물리적인 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Essex Height Primary School, 2018).

2. 소결

다른 나라의 장애통합보육·교육을 살펴보면, 특히 미국의 경우 교육부 기관뿐 아니라 외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학령 전 유치원·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모든 아동 등을 대상으로 개별화된 가족지원서비스 및 영유아 교육프로그램과 학령기 이후 학교 밖에서도 가족, 다양한 전문가 집단의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 특수교육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이전 2004년부터 실시된 사이타마 대학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아동상담이 의뢰되면 발달검사, 심리검사 등이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개별·집단지도, 기관 컨설팅 및 연계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실시하며 이 외에도 발달장애 관련세미나 지원프로그램 등 학문적, 연구적인 지원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본의 사례처럼 발달·심리검사 후 개별 상담 및 지원과 기관연계, 컨설팅 등이 지속적으로 사례별로 관리가 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호주의 경우는 장애 아동에게 조기 중재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을 살펴 보았다. 호주의 조기 중재 서비스는 장애 아동의 발달과 교육, 그들의 부모, 가족

등에게 서비스를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Essex Height school에서는 통합에 대한 강한 철학을 가지고 특수 요구를 가진 아동에게 다양한 환경 안에서 음악, 운동, 캠프 등 모든 것에 접근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 인적지원, 프로그램 지원 등 포괄적으로 조기 중재한다.

독일의 아이텐스하임 유치원 경우도 가정과의 교류, 장애통합 프로그램의 다양한 전문가 참여, 학급 운영에 다양한 인력을 현장에 지원하여 유아들의 개별적 요구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장애통합보육이 내실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 및 지방정부, 외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아래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인적 환경, 물리적 환경, 장애통합보육 운영 및 프로그램, 가정 및 타 기관과의 연계가 지원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 3절 장애통합보육 법적 쟁점 분석

1. 국내 장애통합보육 법적 근거

1) 인적 환경

(1) 전문 인력 자격에 대한 쟁점 분석

장애통합보육에서 전문 인력 자격을 포함하고 있는 관련법으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령 등이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문 인력 자격 기준은 제17조 ‘특수 학교의 정교사·준교사·실기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과 함께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또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령에서의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 교사의 자격에 대해서는 제5조 1항 ‘특수교사의 자격기준은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중(유치원 과정만 해당한다)을 소지한 사람’, 제5조 2항에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제시되어 있다.

장애영유아가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에 적용받는 「영유아보육법」에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지만 장애통합보육의 전문 인력 자격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5 전문 인력 자격에 관한 조항 비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 제17조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등)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령 제5조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7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제17조(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등)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이란 특수학교의 정교사·준교사·실기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특수교사의 자격 기준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유치원 과정만 해당한다)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장애영유아(「영유아보육법」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이 되는 장애아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2.11.>	① 법 제2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은 시험 없이 별표 1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1.12.8.> ②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 검정한 결과 그 자격검정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1.12.8., 2016.1.12.>

이와 관련하여 권미경 외(2015) 선행연구에 의하면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서 자격과 역량을 갖춘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수급이 가장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 인력 자격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특수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대학¹⁶⁾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17년 기준으로

16) 전국 특수교사 정교사 2급(유치원) 자격증 부여 대학교(2017년 기준)

설립별	대학명	계열	학과명	지역
국립 (4년제)	공주대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충청남도 공주시
	전남대	사범대학	특수교육학부 유아특수교육전공	전라남도 여수시
	한국교통대	교육과	유아특수교육학과	충청북도 충주시
사립 (4년제)	이화여대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서울특별시
	중부대	사범계	유아특수교육과	경기도 고양시
	평택대	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경기도 평택시
	나사렛대	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충청남도 천안시
	백석대	사범학부	유아특수교육과	충청남도 천안시
	우석대	사범대학	유아특수교육과	전라북도 완주군
	남부대	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광주광역시
	대구대	사범대학	유아특수교육과	경상북도 경산시
	인제대	교육과	특수교육과	경상남도 김해시
	한국국제대	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경상남도 진주시

전국 13개 대학교에서 특수학교 정교사 2급(유치원) 자격을 발급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생각해본다면, 서울시 장애아통합어린이집 특수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대학교가 전국 13개 대학교, 그 중에서도 서울시에 근접한 지역으로 좁혀 보아도 이화여자대학교(서울), 중부대학교(경기도), 평택대학교(경기도) 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통합보육의 운영적인 면에서 특수교사 양성기관의 수를 고려하지 않고, 특수교사의 자격 요건에 대해 법률개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장애통합보육 인적 환경에서 장애영유아 전담 교사를 보조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보조 인력에 관한 자격에 대해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만 보조 인력의 역할 및 자격에 대해 명시되어 있으며, 다른 법률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 제25조 2항에서는 ‘보조 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해 특수교육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보조 인력의 전문성 향상에 관한 내용이었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규칙 제5조 1항에서는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고 명시하면서 보조 인력의 역할에 관한 내용이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었다<표 II-6 참조>.

하지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이 유치원 및 초·중·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장애통합보육에 적용하기에 한계점이 있다. 이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전문 인력 및 보조 인력의 자격 및 역할에 대해 개정이 되어 모든 장애영유아가 풍부한 인적 환경을 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논의될 필요가 있다.

표 II-6 | 보조 인력에 관한 조항 비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 제25조 (보조인력)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규칙 제5조 (보조인력의 역할 및 자격)
<p>① 교육감은 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조인력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 보조인력의 채용·배치 등 보조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p> <p>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보조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특수교육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③ 보조인력의 역할 및 자격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p>	<p>① 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학교에 배치되는 보조인력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p> <p>② 보조인력의 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p>

2) 물리적 환경

(1) 장애영유아 물리적 환경에 대한 쟁점 분석

장애영유아의 물리적 환경을 포함하고 있는 관련법으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이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애영유아의 물리적 환경에 관한 내용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 1항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 2항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정도 및 교육활동 등에 맞도록 정보 접근을 위한 기기, 의사소통을 위한 보완·대체기구 등의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영유아보육법」에서 장애영유아의 물리적 환경에 관한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어린이집 설치기준(제9조 관련) 다목 ‘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는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은 다음과 같은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장애영유아를 위한 물리적 환경에 관한 조항에서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설치를 해야 한다, 갖추어야 한다.’ 등으로 명확하게 제시하였다면,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다<표 II-7 참조>.

따라서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영유아의 시설 설비, 교재교구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한 영유아보육법에서의 관련 규정마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는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의 특별한 요구를 지원하는 교재교구, 보조기기 등은 장애 담당 교사의 수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

【 표 II-7 】 장애영유아 물리적 환경에 관한 조항 비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 제16조 (통합교육을 위한 시설·설비)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1.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제9조 관련)
<p>① 일반학교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 및 그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p> <p>② 일반학교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정도 및 교육활동 등에 맞도록 정보 접근을 위한 기기, 의사소통을 위한 보완·대체기구 등의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p>	<p>다. 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다음과 같은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층 이상의 시설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적어도 한 곳 이상에 기울기 1/12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출입구는 비상재해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도록 하고, 시각장애아를 위한 점자 블록이나 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복도, 문, 화장실은 휠체어의 출입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4) 옥외 피난계단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장애통합보육 운영 및 프로그램

(1) 장애통합보육 방향성 쟁점 분석

장애영유아의 지원을 포함하고 있는 관련법으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영유아보육법」 등이 있다. 하지만 그 대상범위가 중첩되고 있으므로 체계정당성에 부합하는지 법률의 기본목적, 관련 내용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장애영유아의 지원을 포함하고 있는 관련법을 분석하면 다음 <표 II-8>과 같다.

【 표 II-8 】 장애영유아 관련법의 목적 비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영幼兒)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2007년에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2011년 제정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1991년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영유아들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법률이라면 「영유아보육법」은 일반영유아를 전제로 하면서 장애영유아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영유아보육법」 제3조, 제7조, 제26조, 제28조, 제34조에서는 장애 영유아의 장애통합보육에 대한 부분은 제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관련법 모두 장애영유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회구성원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공통된 목적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만 「영유아보육법」의 방향에서 바라본다면 모든 장애 영유아들의 장애통합보육이 보장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법」에서 장애 통합보육이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성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2) 장애통합보육 프로그램 쟁점 분석

장애통합보육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관련법으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등이 제시되어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장애통합보육 프로그램에 대해 제22조 1항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 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고 제시되어 있으며, 제22조 2항에는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 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으며, 제22조 3항에는 ‘특수교육대상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할 경우 또는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에는 전출학교는 전입학교에 개별화교육계획을 14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고 제시하면서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다. 또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에서 장애통합보육 프로그램에 대해 제6조 2항에는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아동의 특성 및 복지 욕구, 복지지원 제공기관에 관한 세부 내용, 복지지원의 내용 및 방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모두 장애영유아의 개별화교육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잘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다(표 II-9 참조).

하지만 내실있는 장애통합보육이 이루어지기 위해 미국에서는 개별화 교육프로그램(IEP) 뿐 아니라 개별화 가족지원계획(IFSP)을 세우도록 의무화 하였다(이소현, 2009). 이처럼 미국의 사례와 선행연구에서는 장애영유아의 교육과정에 가족들이 참여하여 효과성이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령에도 개별화 가족지원계획(IFSP)을 명시하는 것에 대해 논의 될 필요가 있다.

【 표 II-9 】 장애통합보육 프로그램에 관한 조항 비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 (개별화교육)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6조 (개별화지원계획의 수립)
①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 ②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 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특수교육대상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할 경우 또는 상급 학교로 진학할 경우에는 전출학교는 전입학교에 개별화교육계획을 14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특수교육교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업무를 지원하고 조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의 수립·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아동의 특성 및 복지 욕구, 복지지원 제공기관에 관한 세부 내용, 복지지원의 내용 및 방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에게 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을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교사(원장) 전문성

(1) 교사(원장) 전문성 쟁점 분석

교사(원장)의 전문성을 포함하고 있는 관련법으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제시되어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교사(원장)의 전문성에 대해 제8조 1항과 2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제시하면서 장애영유아를 담당하는 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대해 법령으로 명시하고 있다(표 II-10 참조).

이와 관련하여 많은 선행연구에 의하면 내실있는 장애통합보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원장의 철학이 중요하며, 장애영유아를 담당하는 교사의 전문성 확보가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원장, 교사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권미경 외, 2015; 김미정, 2014; 김은영 외, 2007). 이에 따라, 교사(원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들이 법령으로 명시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제시하는 것은 유·초·중·고등학교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장애영유아가 가장 많이 재원하고 있는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들에게 적용받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으며, 실제로 어린이집에 적용받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에는 원장, 교사의 보수교육만 명시되어 있고, 장애영유아를 지원하는 교육 및 연수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교사(원장)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등의 내용[개별화 교육프로그램(IEP), 개별화 가족지원계획(IFSP) 등]이 세부적으로 법적인 측면에서 명시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될 필요가 있다.

【 표 II-10 】 교사(원장) 전문성에 관한 조항 비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8조 (교원의 자질향상)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어린이집의 원장의 보수교육) 제23조의2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의 존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3.12.30.>	제23조(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원장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補修教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1. 12. 31., 2015. 5. 18.> 제23조의2(보육교사의 보수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補修教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 5. 18.>

5) 가정 및 타 기관 연계(협력)

(1) 기관연계(협력)에 관한 쟁점 분석

기관연계(협력)를 포함하고 있는 관련법으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영유아보육법」 등이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기관연계(협력) 설치·운영의 기준은 제11조 1항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하급교육 행정기관별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또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서 기관연계(협력) 기준은 제9조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장애아동의 복지 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제공 기관의 연계, 장애아동의 사례관리,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상담

및 교육의 실시'가 제시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서는 '일시보육서비스 제공,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표 II-11 참조>.

위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에서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지원에 대해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에 「영유아보육법」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장애통합보육을 위해 교사지원, 영유아발달지원, 가족지원 등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에서 장애영유아 지원에 대해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것에 대해 논의될 필요성이 있으며, 명확한 법적근거가 마련된다면 내실있는 장애통합보육이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II-11 | 기관연계(협력)에 관한 조항 비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9조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영유아보육법」 제7조 (육아종합지원센터)
<p>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 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 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 지원센터를 하급교육행정기관별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이나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 초·중·고등학교 또는 관할 지역의 관공서(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한다) 등 특수교육대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p>	<p>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1.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2.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3.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 4. 장애아동의 사례관리 5.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상담 및 교육의 실시</p>	<p>① 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3. 6. 4.></p>

(2) 장애영유아 조기 발견에 관한 쟁점 분석

장애영유아의 조기 발견을 포함하고 있는 관련법으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등이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 4항에서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진단·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하여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진단·평가의 결과를 해당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12조 1항에서는 ‘영유아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 장애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제한적으로 제시되어 있다<표 II-12 참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장애영유아의 조기 발견을 위한 유관기관인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장애영유아를 대상으로 조기발견, 진단 및 평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영유아들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바우처의 중복 사용이 불가 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은 조기발견에 대한 진단·평가 등을 실시하는 유관기관의 연계가 필요한데 이와 관련이 있는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장애영유아의 조기발견에 관한 조항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 논의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장애영유아를 위한 조기발견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 표 II-12 】 장애영유아 조기발견에 관한 조항 비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 (장애의 조기발견 등)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12조 (장애아 조기발견)
③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한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진단·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장이 진단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의료급여법」 제14조 및 「모자보건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영유아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 장애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 국외 장애통합보육 법적 근거

1) 독일

독일의 보육·유아교육 관련 법규 또는 정책을 살펴보면, 통일이 된 1990년 이후 독일에서는 아동청소년복지법(Kinder und Jugendhilfegesetz)에 근거하여 보육정책이 이루어졌다(육아정책연구소, 2010). 이는 만 1-3세까지의 유아원, 만 3-6세까지의 유치원 및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시설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육아정책연구소, 2010).

한편, 독일은 세계 최초로 공교육제도와 유치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 투자에 적극적이고 선도적 위치에 있는 나라 중 하나였다(김기홍, 2012). 이는 장애 교육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였으며, 1778년 청각장애아동을 위한 학교 설립이 이루어지는 등 20세기 초에 이미 분리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졌다(김기홍, 2012). 1960년에는 모든 장애아동에게 교육권을 부여함으로써, 특수학교에 의한 체계적인 분리교육은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김기홍, 2012). 1960년대 말까지 독일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장애 아동의 통합교육보다는 분리교육에 집중한 나라라 볼 수 있다(이정림 외, 2012). 현재 독일의 특수학교는 학습장애, 정신지체, 언어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등 10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다(김기홍, 2012).

하지만 1970년대 전후하여 장애인의 통합교육이 북유럽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추세로 확대되었고, 독일의 지리적 위치상 이와 같은 흐름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김기홍, 2012; 이정림 외, 2012). 더불어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에 대한 연구의 진행 및 발전, 모든 아동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접근할 있도록 하는 국제기구들의 노력 등에 의해 독일에서도 1970년대 후반부터 통합교육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이정림 외, 2012).

특히, 1973년 장애나 장애의 위험성이 있는 아동을 위한 교육적 촉진에 대한 독일 교육위원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1980년대에는 장애 아동의 통합교육이 모든 학생들의 학교성적, 사회와 정서적인 측면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다양한 모델들이 독일 전 지역의 유치원과 일반학교에서 제시되었다(Deutscher Bildunstrat, 1974; 김기홍, 2012, 재인용).

또한, 1994년 5월 독일 교육부 장관회의에서 통합교육을 모든 학교의 과제로 인식하고 일반학교에서의 특수교육지원에 대한 결의로 인해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의 공동수업을 위한 지원을 분명히 함에 따라(김기홍, 2012), 1990년대부터 통합교육을 일반학교 정규교육과정에 적용하는 것이 이전보다 강화되었다. 이에 최근으로 올수록 중증장애를 제외하고는 장애아동을 일반 유아교육기관과 학교에서 교육하고 있고, 통합보육기관에서는 장애 유형에 따라 특수교육을 전공한 교사가 특수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일반교사와 함께 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육아정책연구소, 2010).

이와 같은 독일 통합교육의 기본적 모토는 일반 유아나 장애 유아나 상관없이 모두 유아교육기관에서 그들의 능력과 관심, 흥미들을 지속적으로 발달시켜 나갈 수 있는 권리로부터 시작된다(이길동, 2010). 본 모토가 독일의 교육부의 방침이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교사, 특수교사, 부모 등 장애아동 교육의 관련자들 간 함께 뜻을 모아 형성되었다는 것은(이길동, 2010) 우리나라의 장애 아동 통합보육·교육 개념이나 발전 양상과는 상이한 특성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정립 외(2012) 연구에서는 독일 유아특수교육의 재정적 모델은 복잡한 구조를 갖추고 있어 쉽게 설명하기 어려우나 특수교육과 관련된 서비스 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방사회복지법이 장애 아동의 조기진단, 치료, 유아특수 교육센터의 교육, 특수유치원, 부모교육 등의 재정을 보장한다고 말하였다.

표 II-13 장애통합보육과 관련된 독일 법령 내용

장애통합보육 관련 법령	내 용
특수교육 조직에 대한 권고(19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일 문화교육부의 상임 협의회(standing conference)에서 1972년 3월 특수교육을 지원하는 조직에 대한 기준 지침 마련 해당 권고와 상임협의회에 의해 채택된 여러 법률(기본법, 평등법, 사회 법률(복지), 국가법률(R13-28) 등) 및 독일연방 학교의 특수지원교육에 대한 권고사항(1994)이 독일 특수교육 발전과 조직이 조화를 이루게 하는 주요 주축임
장애나 장애의 위험성이 있는 아동을 위한 교육적 촉진에 대한 교육위원회 권고안(19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80년대 장애 아동의 통합교육이 모든 학생들의 학교성적, 사회적 측면 및 정서적 측면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다양한 모델개발 및 독일 전 지역의 유치원과 일반학교에서 이루어지게 됨

장애통합보육 관련 법령	내 용
독일 연방 학교의 특수지원교육에 대한 권고사항(19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에 있어 장애를 가진 어린 사람의 동등한 참여를 촉구하고 장벽을 허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요한 발전을 시작 · 통합교육을 모든 학교의 과제로 인식 · 장애아동과 비장애 아동의 공동수업을 위한 지원을 분명히 함 · 1990년대부터 통합교육을 일반학교 정교교육과정에 적용하는 것을 이전보다 강화
학교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통합교육에 대한 결의(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고사항(지침)은 장애인 권리에 대한 유엔 협약 및 아동 권리 대한 유엔 협약에 의해 인도됨 · 권고사항은 독일 연방학교의 특수지원교육에 대한 권고사항(1994)의 기초적 입장에 기반을 둠 - 상입협회의 권고사항은 특수교육 요구가 있는 학생의 지원이 주류 학교에서 이루어지든 특수교육 기관에서 이루어지든 상관없이 적용됨

2) 미국

미국은 장애영유아의 통합보육과 교육에 가장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국가로서, 본 연구에서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미국의 장애 아동 교육에 관해 주축이 되는 법과 제도를 살펴보면, 우선 1975년에 제정된 공법 94-142, 전(全)장애아동교육법(Education for All Handicapped Children Act, EHA)을 들 수 있다. EHA는 현재 장애인교육법(Individual with Disability Education Act, IDEA)의 초기 형태의 법으로, 장애를 가진 모든 아동이 최소한의 제한적 환경에서 그들에게 적합한 공교육에 무상으로 접근하는 것을 보장하였다(IDEA, 2018; 이정림 외, 2012). 이후 지속적인 수정을 거쳐 일반교육 커리큘럼으로의 접근, 출생부터 만 5세까지 영유아에 대한 서비스 공급, 전환 계획, 장애 학생 성취에 대한 의무 등을 점진적으로 강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되었다(IDEA, 2018).

이후 EHA는 1986년 공법 99-457로 개정되었는데, 공법 99-457에서는 유아특수교육을 합법화하여 이전까지 교육에서 제외되었던 만 0세부터 만 2세까지의 발달지체 영유아를 포함시키고 장애영유아와 그들의 가족에게 중재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명시하였다(위키백과, 2016; 이정림 외, 2012). 또한,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서비스 중재자는 개별화 가족지원계획(Individualized Family Service Plan, IFPS)을 작성하고 가족평가(Family Assessment) 시 다문화적 팀 접근을 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위키백과, 2016; 이정림 외, 2012).

한편, 1990년 공법 101-476에서는 지금의 법률명인 IDEA로 개칭하였고(김영화, 김남순, 2014), 1997년에 공법 105-17에서는 장애를 판정받기 이전의 아동에게 발달

지체(developmental delay)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주정부로부터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위키백과, 2016). 개정된 IDEA는 부모 역할의 강화, 일반교육과정에서의 접근 보장, 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축소 등을 개정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다(김영화, 김남순, 2014). 특히, IEP와 관련해 IEP 내용, 팀 구성, 개발과정, 검토 및 수정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제시하였고, IEP에 일반교육과정에 대한 장애학생의 참여와 성취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및 일반교육 기준에 따르는 성취도 평가 참여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진술하도록 하였다(김영화, 김남순, 2014).

이후 2004년 개정된 IDEA, 즉 장애인교육향상법(IDEIA)에서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교수법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학업 성취와 기능적 행동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충분한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적인 특수교사를 양성할 것을 강조하였다(이정림 외, 2012). 그리고 기존의 교사를 재교육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대학 및 전문적인 재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명시하는 등 장애 아동 교육에 있어 교육을 제공하는 인력이 해당 분야에 보다 전문성을 갖추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정림 외, 2012).

IDEA의 변화 과정과 더불어 해당 법의 최근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미국 교육부 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2015년 12월 추가적 개정을 거쳐 현재 IDEA를 갖추게 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많은 개정을 거쳤음에도 IDEA는 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그들의 고유한 요구, 추후의 교육, 고용 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고안된 관련 서비스와 특수교육을 강조하는 적합한 공교육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것의 보장을 여전히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IDEA, 2018). 이와 같은 IDEA는 Part A부터 Part D에 이르기까지 총 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Part B는 미국의 각 주(states)가 만 3세에서 만 21세까지의 장애를 가진 아동을 위해, 최소한의 제한된 환경에서 그들에게 적합한 무상의 공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지원하는 공공보조금(formula grants)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IDEA, 2018). 또한, Part C는 출생부터 만 2세까지의 장애를 가진 영유아와 그들의 가족에게 조기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주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보조금 관련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IDEA, 2018). 즉, Part B와 C에 의해 만 0~2세까지 조기중재 서비스에서부터 만 3~21세까지의 특수교육 및 장애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 아동의 연령에 따른 적절한 교육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놓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교육부의 특수교육 및 재활서비스부(Office of Special Education and Rehabilitative Services, OSERS) 및 OSERS의 특수교육 프로그램 부서(Office of Special Education Programs, OSEP)는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OSEP는 Part B와 Part C에서 말하는 세 가지 형태의 공공보조금을 관리하는 것 이외에 IDEA의 Part D에서 말하는 재량보조금(Discretionary Grants)의 관리 및 제공에도 관여한다(IDEA, 2018). 재량보조금은 주의 인력 개발, 기술과 미디어 서비스, 기술적 지원과 보급, 부모교육 및 정보 센터 등을 지원하는 주 교육기관, 주 고등교육기관, 및 비영리단체에 제공하는 보조금이며, 공공보조금과 달리 경쟁 과정을 거쳐 교육부에 의해 수여된다(IDEA, 2018).

한편, 최근으로 올수록 미국의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장애 통합교육·보육에 대해 합동 연방 접근을 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장애 아동의 통합적 환경으로의 접근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장애아와 가족이 양질의 유아 프로그램에 접근에 많은 방해물이 있고 장애 아동에게 장애가 없는 아이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는 등의 한계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7). 따라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두 정부의 합동 접근은 통합교육 제공을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적극적 노력의 일환이라 볼 수 있다(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7). 이와 관련된 업무는 보건복지부의 운영 부서인 아동가족부(Administration of Children and Family) 및 아동가족부의 프로그램 부서인 유아발달부(Office of Early Childhood Development)가 주로 담당하고 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아동의 발전과 교육에 관해 안내서, 정책성명서 등을 연대 하에 발행하고 있다. 이 중에는 양질의 통합 유아프로그램을 촉진시키기 위해 2017년 1월 아동가족부가 재발행한 policy statement(정책 강령)가 있다(Office of Early Childhood Development, 2018). 해당 강령 속에서 두 부서는 장애를 가진 어린 아동들이 통합적인 양질의 유아 프로그램을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그들의 높은 기대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개별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Office of Early Childhood Development, 2018).

본 강령에서는 유아프로그램에서의 통합의 의미, 통합의 법적 및 이론적 근거,

통합을 어렵게 하는 이유 등이 유아프로그램에서의 장애 아동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주(state)에서 실행하는 조치에 대한 조언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7). 한편, 주에서 행할 수 있는 권고들 중 서비스 제공자와 관련 분야 인력에 대해 유아 전문가 발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7). 전문 인력을 확보한 높은 질의 주요 구성요소로 간주하여, 유아와 함께 일하는 모든 서비스 제공자들이 아동 발달과 학습에 대한 지식, 일관적인 양육 관계의 중요성,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학적·환경적인 요인 등 아동에 대한 일반 지식과 능력 기반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7). 또한, 주에서 학교의 교장, 교사 및 서비스 제공자, 보조원 등을 포함하여 일반 유아 프로그램 인력의 기준, 자격, 증명서, 면허 자격조건에 장애 아동 및 그들의 가족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역량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7). 또한, 고등교육 기관과의 파트너 체결을 통해 유아 준비 학위 프로그램(Early childhood preparation degree program)에서 특수교육이 수업 커리큘럼 전반에 걸쳐 잘 위여진 형태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7). 즉, 소수의 학과 과정 또는 별개의 프로그램으로 포함하기 보다는 수업 커리큘럼 전반에 특수교육 내용이 녹아들어 있는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많은 유아교사와 서비스 제공자들이 특수 장애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리치료사, 직업 치료사, 언어치료사 등과 같은 전문적 훈련과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의 감독과 상담 하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점, 통합적인 환경에서 특수교육 선생님과 일반 선생님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함께 일할 수 있는 co-teaching 모델을 고려할 점 등을 제안하고 있다(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7).

표 II-14 장애인통합보육과 관련된 미국 법령 내용

장애인통합보육 관련 법령	내용
공법 94-142(1975) (전(全)장애아동교육법, EHA)	· 현 장애인교육법(Individual with Disability Education Act, IDEA)의 초기 형태 · 장애를 가진 모든 아동이 최소한의 제한적 환경에서 그들에게 적합한 무상교육에 접근하는 것을 보장
공법 99-457(1986)	· 유아특수교육 합법화 - 이전까지 교육에서 제외되었던 만 0~2세 발달지체 장애영유아 및 그들의 가족에게 증재 서비스 제공할 것을 명시 · 서비스 중재자가 개별화 가족지원 계획(IFPS) 작성하고 다 학문적 팀 접근을 통한 가족평가(family assessment)을 할 것을 명시
공법 101-476(1990)	· EHA에서 IDEA(장애인교육법)으로 개칭 · 특수교육 예산을 큰 폭으로 증가시킴 · 장애학생을 위한 보조과학기술 증개의 의무화 · 장애아동이 16세 되는 해에 IEP(Individualized Education Plan)에 전환교육 서비스를 포함하도록 함
공법 105-17(1997) (IDEA 개정안)	· 장애 판정 받기 이전의 아동에게 발달지체 개념을 적용하고 주정부로부터 특수교육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부모 역할 강화, 일반교육과정과의 접근 보장, 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축소 등을 주요 핵심 내용으로 함
장애인교육향상법 (IDEIA, 2004)	· 전문적 특수교사 양성 강조 - 과학적으로 검증된 교수법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학업성취 및 기능적 행동 수준 향상시킬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특수교사 · 기존 교사를 재교육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대학 및 전문적인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하도록 명시

3) 일본

일본의 장애아 교육 및 이에 관련한 법과 제도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일본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맹학교·농학교가 의무 교육대상이 되었고 정신박약, 지체부자유, 병약의 양호학교는 각 현에 1~2개가 개설되었다. 1947년 제정된 학교교육법에 의해 맹학교, 농학교, 양호교육의 분리 특수교육 체계가 확립되었으며, 비교적 경도인 장애학생을 위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특수학급이 장애유형별로 설치되었다(홍정숙, 2012). 일본에서 장애 영아를 어린이집에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부터이고 1974년 '장애 유아 보육사업 실시요강'이 시행되어 일정한 어린이집을 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 및 만 4세 이상의 경도 장애 유아를 대상으로 장애 유아 보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정민정, 2009, 이정림 외 2012, 재인용). 1979년 양호학교 의무제가 시행되면서 모든 장애아가 의무교육 대상이 되었으며, 장애범주별로 분리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특수교육의 형태를 갖게 되었다. 즉, 양호학교 의무제로

인해 일본에서는 장애의 유무와 정도에 따라 상관없이 장애 아동의 취학 기회 보장이 이루어졌고 특수교육의 우수한 질적 수준을 갖추는 등 분리교육 형태의 특수교육 선진국이 되었다(홍정숙, 2012).

하지만 특정 한 가지 장애가 아니라 여러 종류의 장애를 가진 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어려워짐에 따라, 2007년 특수교육법을 부분적으로 개정하였다(일본 문부과학성, 2018). 법 개정으로 인해, 특수교육은 ‘특수지원교육’으로의 제도 전환 이루어졌고 새로운 특수교육지원 학교 체계로 인해, 한 특수학교에서도 여러 종류의 장애를 가진 아동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일본 문부과학성, 2018). 또한, 장애 영역별로 구분하던 특수교육을 폐지하고 특수교사 자격제도를 비 범주화 하였다(이정림 외, 2012). 또한, 기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지역의 유·초·중·고등학교의 요청에 따라, 장애가 있는 아동과 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지도나 조언을 실시하는 등 특수교육지원 센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박경란, 박미정, 2015). 즉, 2007년 이루어진 특수교육법 개정은 통합교육을 지향하는 국제 교육정책의 동향에 맞추어가려는 노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라 볼 수 있다.(이정림 외, 2012; 홍정숙, 2012).

한편, 일본의 장애아 교육이 이루어지는 최근 현상을 살펴보기 위해 문부과학성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검색 및 조사한 결과, 현재 특수교육은 크게 일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특수지원교육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선, 특수지원교육 학교는 상대적으로 심각한 장애를 가진 아동을 위한 학교로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저학년 및 중학교 고학년 등 총 4개의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다(일본 문부과학성, 2017). 또한, 특별교육과정에 의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일반학교에 비해 풍부한 수의 선생님과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편의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본 문부과학성, 2017).

일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특수지원교육을 살펴보면, 일반학교 특수학급은 상대적으로 경도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학급으로 일반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저학년 학교에 설립된다(일본 문부과학성, 2017). 일반학교에서는 특수학급 외에도 초등 및 중등학교에 있는 학습 지원실(resources room)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 아동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일본 문부과학성, 2017). 학습 지원실은 일반학급에 등록을 하고 공부의

주된 시간을 일반학급에서 보내면서 장애 아동들이 특수교육을 받기 위해 주당 몇 번을 방문하는 곳으로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말하기 손상, 자폐, 정서 장애, 낮은 시력, 난청, 학습 장애, ADHD 등의 장애를 포함한다(일본 문부과학성, 2017). 일반 학교에는 장애 아동이 보다 원활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소그룹, 팀티칭, 상이한 성취 수준에 따른 교육 및 지원 보조자의 활용 등과 같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일본 문부과학성, 2017).

이 외에도 문부과학성은 2003년 이후 모든 현에 특수지원교육 체계의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행하도록 하여, 일반 초등 및 중등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학습장애, ADHD 등과 같은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폭넓은 교육지원체계의 기반을 펼칠 수 있도록 하였다(일본 문부과학성, 2018). 이 프로젝트의 시행은 기존 대상이었던 초등 및 중등학교 외에 유치원과 고등학교까지 확장되어 왔으며, 그 결과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유아기에서부터 취업을 하는 전체 기간 동안에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기대되고 있다(일본 문부과학성, 2018).

종합해보면, 일본은 과거 전반적으로는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을 분리하고 장애범주별 구분하여 교육을 시행하는 입장을 취해 온 국가 중 하나였으나, 최근에는 장애아동의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을 위해 제도적인 변화 등 통합교육·보육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15 장애통합보육과 관련된 일본 법령 내용

장애통합보육 관련 법령	내용
장애 유아 보육사업 실시요강(1974)	· 일정한 어린이집을 통합 어린이집으로 지정 및 만 4세 이상의 경도 장애 유아를 대상으로 장애 유아 보육의 시범적인 실시
양호학교 의무제(1979)	· 모든 장애아동이 의무교육 대상자가 됨 - 장애의 유무와 정도에 상관없이 장애 아동의 취학 기회 보장 · 장애 범주별로 우수한 질적 수준을 갖춘 분리 교육을 제공하는 특수교육의 형태를 갖게 됨
기본교육법(2006) (Basic Act on Education)	· 기본적인 목표와 원칙을 제공하는 법으로 다른 교육법과 규제는 이의 목표와 원칙에 부합하게 만들어짐 - 학교교육법(School Education Law), 사회교육법(Social Education Law) 등 · 1947년 제정되었으나 과학과 기술의 발전, 국제화, 저출산·고령화 사회 등 교육을 둘러싼 환경들의 변화를 고려하여 2006년 12월에 완전히 개정됨 ·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능력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인종, 성별, 신념, 경제적 지위 등의 요인에 의해 차별의 영향을 받을 수 없음을 명시

장애통합보육 관련 법령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 및 지방정부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장애 정도에 따라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교육지원을 제공해야 함을 말함
학교교육법 개정안(2007) (School Education La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영역별로 구분하던 특수교육 폐지 및 특수교사 자격제도의 비 범주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에 특수학교는 장애 영역에 따라 개별적으로 설립되었으나, 법 개정으로 한 특수학교에서 여러 종류의 장애아동 수용 가능하게 됨 · 기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특수교육지원 센터로의 역할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요청에 따라, 장애가 있는 아동과 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지도나 조언을 실시하는 역할 수행

3) 호주

호주에서는 1960년대 초부터 특수 요구가 있는 아동(장애 아동)의 교육을 일반 학급으로 통합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호주 전 지역과 준주(territory) 교육부는 제도의 지속적인 검토와 재편성의 과정을 반복하였다(이정림 외, 2012). 호주의 장애 아동 교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법에는 1992년 「장애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DDA)」과 「장애교육기준법(Disability Standards for Education, 2005)」이 있다.

장애차별금지법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공정하지 못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였고, 이 법은 장애인 당사자 뿐 만 아니라 그들의 친척, 친구 및 돌봐주는 사람까지 차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2015). 또한, 장애를 신체 장애, 인지 장애, 정신 장애, 감각 장애, 신경 장애, 학습 장애와 더불어 신체 손상, 에이즈 등과 같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유기체의 유무 등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2015). 해당 법은 장애인이 교육, 고용, 거주, 서비스 사용 등 공공 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한다(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2015). 특히, 교육의 경우, 사립 및 공립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등에 등록을 하거나 교육기관에서 공부를 함에 있어 차별 대우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2015). 장애차별금지법에 의해, 호주 정부는 장애를 가진 아동도 일반 아동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모든 주와 준주(territory)의 교육 제공자는 공립이든 공립이 아니든 관계없이 장애차별금지법 및 이의 하위 법인 장애교육기준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2015).

장애차별금지법에 의해 만들어진 장애교육기준법은 2005년 8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장애 아동이 다른 아동과 동일한 기반에서 교육에 참여하고 접근하는 것을 보장하고자 한다(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2015). 한편, 유치원과 예비학교에서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호주의 모든 교육서비스 제공자는 장애교육기준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그들은 상담, 다른 아동과 동일한 기반에서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로서의 조정(adjustment), 차별의 제거 등 세 가지 형태의 의무를 갖고 있다(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2015). 이와 같은 장애교육기준법은 교육기관에의 등록, 참여, 커리큘럼 개발, 학생지원 서비스, 괴롭힘의 제거 등 다양한 영역을 관리한다(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2015).

표 II-16 장애통합보육과 관련된 호주 법령 내용

장애통합보육 관련 법령	내용
<p>장애차별금지법 (199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를 이유로 그 사람을 공정하지 못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였고 장애인 당사자 뿐 아니라 그들의 친척, 친구 및 돌봐주는 사람들까지 보호의 대상으로 포함 · 장애의 정의로 신체장애, 인지장애, 정신장애, 감각장애, 학습장애, 신체손상,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유기체의 유무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을 채택 · 교육의 경우, 사립 및 공립학교, 전문학교, 대학교 등에 등록을 하거나 공부를 함에 있어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권리 지원 · 모든 주와 준주(territory)의 교육제공자는 장애차별금지법과 이의 하위 법에 해당하는 장애교육기준법 등을 따라야 함
<p>장애교육기준법 (200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아동이 일반 아동과 동일한 기반에서 교육에 접근하고 참여하는 것을 보장 · 유치원·예비학교에서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호주의 모든 교육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법을 지키는 의무를 갖게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장애교육기준법에 따라 교육서비스 제공자는 상담, 장애아동이 다른 아동과 동일한 기반에서 교육과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취해지는 조치로서의 조정 및 차별의 제거 등 세 가지 의무를 준수해야 함 · 교육기관에의 등록, 참여, 커리큘럼 개발, 학생지원서비스, 괴롭힘의 제거 등 다양한 영역 관리

3. 소결

우리나라의 장애통합보육과 관련한 법적인 근거를 분석한 결과, 다양한 쟁점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장애통합보육과 관련해서 크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관련법 마다 장애통합보육을 바라보는 목적 및 방향성이 조금씩 달랐고, 장애영유아의 조기발견과 물리적 환경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근거가 명확히 잘 나타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유치원에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장애영유아가 많이 이용하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근거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의 경우에는 장애영유아의 조기발견과 물리적 환경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국외 장애통합보육과 관련한 법적인 근거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비해 오래전부터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장애영유아 및 그들의 가족에게 중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었고, 장애영유아의 자녀를 둔 부모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까지 법적 근거로 담고 있다. 또한 장애영유아를 담당하는 특수교사의 양성을 강조하는 내용과 기존의 특수교사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방안까지 법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교사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호주의 경우, 장애영유아가 일반영유아와 동일한 기반에서 교육에 접근하고 참여하는 장애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호주의 모든 교육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법을 지키도록 의무화를 법으로 명시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경우, 교육에 있어 장애를 가진 영유아의 동등한 참여를 촉구하고 장벽을 허무는 것을 목표로 장애통합교육을 모든 학교의 과제로 인식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법적근거로 제시되어 있으며, 장애인 권리에 대한 유엔 협약을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장애통합보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미국의 사례처럼 장애영유아의 자녀를 둔 부모의 역할과 관련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내용이 법적 근거로 마련되어 장애영유아가 어린이집이나 가정에서도 연계되어 지원받을 수 있게 될 필요가 있으며, 앞서 선행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인력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수교사의 양성과정부터 교사의 재교육 프로그램을 강조하는 내용을 법적 근거로 마련하여 장애영유아를 담당하는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III

장애통합보육 정책현황 및 쟁점

제 1절 장애통합보육 중앙·서울시 정책현황 분석

제 2절 장애통합보육 관련 기관 비교 분석

제 3절 서울시 장애통합보육 현황 분석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II

장애통합보육 정책현황 및 쟁점

제 1절 장애통합보육 중앙·서울시 정책현황 분석

1. 중앙정부·서울시 정책현황 비교 분석

장애통합보육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및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정책현황은 <표 III-1>과 같다. 중앙정부는 장애통합보육과 관련하여 보육료, 인건비(원장, 장애 전담교사, 치료사, 보조교사), 수당(장애 전담교사), 장비비, 기타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를 살펴보면,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인건비(서울형어린이집 장애 전담교사, 치료사, 보육도우미), 수당, 교재·교구비, 기타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에서 장애아통합어린이집 민간지정 시설에 근무하는 장애영유아 담당 교사 인건비 1인당 월 1,465,000원 지원 하고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서울형어린이집 (민간지정시설)에 근무하는 장애영유아 담당 교사 인건비를 정부지원시설과 똑같이 국공립보육교사 월 인건비 80%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장애통합보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는 유치원 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인해 전담교사 배치의 어려움이 있다(배혜숙, 2008). 또한 현행 정책에서 장애전담교사 1명 대 장애영유아 3명일 때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중간에 장애영유아가 퇴소를

할 경우, 2개월에 한해서만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아 대 전담(특수)교사의 비율은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은 내실있는 장애통합보육을 하는데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장애통합보육의 내실화를 위해 개선안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서울시는 중앙정부에서 제시하는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의 보조교사 지원금에 추가적인 인건비(월 1,183,000원)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보육도우미’ 명칭을 사용해 1일 6시간(주 5일 근무), 2개반 당 1명을 지원(최대 3명)하고 있어 진행되는 정책지원 중 가장 도움이 된다고 보육현장에서 이야기 한다. 하지만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기본 보육시간이 1일 8시간이기 때문에 ‘보육도우미’의 활용 시간에 대해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한 지원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장애전담교사(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에게 월 200,000원의 별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책에서 서울시는 추가적으로 장애통합보육을 운영 중인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에게 최대 월 100,000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 보다 서울시가 앞장서서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지만, 선행연구에서는 장애통합학급을 운영하는 전문 인력에게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밝히고 있다(김은영 외, 2007). 또한 장애통합학급을 운영하는 장애전담교사는 일반보육교사와 함께 협력해서 장애통합보육 운영 및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하지만 같은 공간에서 함께 교육지원을 하지만 일반보육교사는 추가적인 수당이 없다(정혜진, 안영주, 2016). 그렇기 때문에 장애통합학급을 함께 운영하는 일반보육교사에게도 추가적인 수당 지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종합해보면, 서울시는 중앙정부에 비해 장애통합보육에 대한 관심이 더 높으며, 추가적인 인건비, 수당, 교재교구비, 기타운영비 등의 정책지원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 장애통합보육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실태를 파악 후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논의되어야 한다.

표 Ⅲ-1 장애인통합보육 중앙정부·서울시 정책현황 비교

	중앙정부(보건복지부)	서울시
보육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 일반보육 매월 1인당 449,000원 보육료 지원 · 장애아 시간 연장 보육 시간당 4,000원 보육료 지원 ·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50% 지원 	보건복지부 내용과 동일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동 12명 이상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원장 월 인건비 80% 지원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보육교사특수교사 인건비 80% 지원 · 장애인통합어린이집 장애아보육 전담교사 (단,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원시설: 월 인건비 80% 지원 - 민간지정시설: 1인당 월 1,465,000 지원 · 장애아 방과후 지원: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월 인건비 100% 지원(전문, 정부지원 장애인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형어린이집 중 장애인통합어린이집 전담교사 월 인건비(국공립보육교사 급여) 80%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원시설의 장애인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월 인건비 100%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시설의 치료사 월 인건비 전액 지원(4대 보험료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전문·통합어린이집 보조교사 월 832,000원 지급 (단, 장애아 현원 6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4시간(주 20시간 근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전문·통합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월 1,183,000원 지급(4대 보험료 시설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6시간(주 5일 근무), 2개반 당 1명 지원(최대 3명)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통합어린이집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1인당 매월 20만원 수당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동 1명 감소될 경우, 감소 달 포함하여 2개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통합보육 운영 중인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최대 월 10만원 지원(계수당과 별도 적용)
교재 교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전문·통합어린이집 장애아동 1인당 21,000원 지급
장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전문·통합어린이집 장애아 현원 기준에 따라 차등지급 (장애아현원 20인 미만 3,000,000원 20인 이상 4,000,000원 지원) 	보건복지부 내용과 동일
기타 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보수가 필요한 장애인 전문·통합어린이집 개소당 30,000,000원 개보수비 지원(국비, 지방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보수가 필요한 장애인통합어린이집(국공립, 법인 우선지원) 개소당 10,000,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전문·통합어린이집 또는 방과후 지정 시설에서 장애아 방과후 반을 편성·운영하는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정시설 운영비 반당 월 550,000원 - 기타지정시설 운영비 반당 월 1,150,000원 - 보조교사 운영 시 반당 월 30만원 지급

자료 : 보건복지부, 서울시 홈페이지 확인 및 전화통화



2. 서울시 자치구 정책현황 비교 분석

장애통합보육과 관련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추가 정책지원을 하고 있는 6개 자치구 정책현황은 <표 III-2>과 같다. 서울시의 정책지원 이외에 장애통합보육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자치구는 강남구, 강북구, 도봉구, 서대문구, 송파구, 중구로 나타났다.

강남구는 장애통합보육과 관련하여 추가로 기타운영비를 더 지원하고 있었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개소당 월 20만원 씩 운영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하였고, 강북구는 장애아동이 입소할 때 1인당 6만원씩 보육료를 더 지원하고 있었다. 또한 도봉구는 장애담당교사에게 매월 10만원, 일반보육교사에게 매월 4만원, 치료사에게 매월 4만원 씩 복리후생비와 관련한 수당을 지급하였고, 추가적으로 장애아동들에게 매월 2만원씩 특기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대문구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치료사와 장애통합학급을 운영하는 일반보육교사에게 매월 20만원의 복리후생비와 관련한 수당을 지급하였고, 송파구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영양사의 인건비 50%를 지원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중구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원장에게 10~30만원의 추가 수당을 주었고, 특수교사 자격을 미소지한 장애전담교사(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에게 1인당 5만원씩 추가 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혜진, 안영주(2016)의 연구에서 내실있는 장애통합보육이 되기 위해서는 장애통합학급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장애전담교사(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는 20만원의 수당이 있는데 일반보육교사는 수당이 없는 것을 지적하면서 일반보육교사의 처우를 지원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도봉구가 (표 III-2)와 같이 장애담당교사 외 장애통합반을 운영하고 있는 일반보육교사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하고 있는 수당 금액은 다르지만 앞으로 서울시의 내실있는 장애통합보육 내실화를 위해서는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해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예산범위는 서로 다르지만 내실있는 장애통합보육이 이루어지기 위해 서울시는 다양한 장애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장애통합보육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서울시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표 Ⅲ-2 Ⅰ 장애통합보육 서울시 & 자치구 정책현황 비교

	강남구	강북구	도봉구	서대문구	송파구	중구
보육료		· 장애아동 입소료 1인당 6만원 지원				
인건비					· 장애통합어린이집 영양사 인건비 50% 지원	
수당			· 복리후생비 지급 장애담당교사: - 매월 10만원 일반교사: - 매월 4만원 치료사: - 매월 4만원	· 복리후생비 지급 - 매월 20만원 (장애통합어린이집 보육교사, 치료사)		· 원장 추가수당 10-30만원 지원 · 특수교사 자격 미소자자장애전담 교사 수당 1인당 5만원 지원
기타 운영비	· 장애통합어린이집 개소당 월 20만원 운영비 지원		· 장애아동 매월 2만원 특기 교육비 지급			

자료 : 25개 자치구 구청 홈페이지 확인 및 전화통화



제 2절 장애통합보육 관련 기관 비교 분석

1. 장애통합보육 관련 기관 비교 분석

장애통합보육과 관련한 지역사회 기관으로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한국보육진흥원 등이 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한국보육진흥원을 비교 분석해보면, 공통적으로 장애전담교사(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에게 다양한 교육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교육지원 외에 장애영유아를 위한 진단·평가, 치료, 보조공학기기 대여, 상담 및 가족지원을 주로 지원하고 있었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교육지원 외에 영유아를 위한 조기 선별 및 모니터링, 진단, 프로그램, 가족지원을 주로 지원하고 있었고, 한국보육진흥원은 교육지원 외에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한국보육진흥원은 장애영유아 담당 교사를 대상 교육위주로 이루어졌고,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장애영유아를 비롯하여 초·중등학생 학령기를 중심으로 대상이 확대되어 있었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장애영유아 및 장애담당 보육교사 대상으로 지원하는 차이점이 있었다.

■ 표 Ⅲ-3 ■ 장애통합보육과 관련된 기관 비교

특수교육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한국보육진흥원
1. 진단평가 2. 교육지원 - 장애영아교실 운영 - 순회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 - 연수(교사, 부모,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3. 관련서비스 - 치료지원 - 보조공학기기 지원 - 상담 및 가족지원	1. 교사지원 - 현장순회방문 및 컨설팅 - 교직원 상담 및 교육 2. 영유아발달지원 - 선별 및 모니터링 - 장애아 교육진단 - 개별화교육 프로그램 3. 가족지원 - 사회정서지원 - 양육자 상담 - 양육자 교육	1.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컨설팅 - 컨설턴트 양성교육 - 그룹 컨설팅 - 1:1 현장방문 컨설팅 - 거점어린이집 워크숍 2. 보육교직원 교육 - 어린이집에서 장애영유아를 담당하는 교사 대상
유아~초중등학령기 장애학생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영유아 및 장애담당 보육교사	장애영유아 담당 보육교사

자료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확인 및 전화통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11개의 지역구역별로 나누어져 있으며, 특수교육대상 학생(영·유아 포함), 부모, 교원 등에 대하여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특수교육 지원 및 정보 전달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크게 세 가지 영역(진단평가, 교육지원, 관련서비스)에서 장애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별 편차 없이 공통된 영역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지원이 아닌 유치원을 다니는 장애유아와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영아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영유아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에는 제한을 받는 수 있어 한계로 지적된다.

표 III-4 | 특수교육지원센터 사업 내용

특수교육지원센터	사업 내용
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	1. 진단평가 -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발견 시 진단·평가 의뢰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 의뢰 - 진단·평가 후 30일 이내 진단·평가 시행 여부 및 최종 의견을 교육장에게 보고 - 선정 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보호자에게 통보 후 선정학교 지정 배치 및 결과통보 - 배치된 학교로 취학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	
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	
북부특수교육지원센터	2. 교육지원 - 장애영아교실 운영 - 순회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 - 연수(교사, 부모,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중부특수교육지원센터	
강동송파특수교육지원센터	
강서양천특수교육지원센터	3. 관련서비스 - 치료지원 - 보조공학기기 지원 - 상담 및 가족지원
강남서초특수교육지원센터	
동작관악특수교육지원센터	
성동광진특수교육지원센터	
성북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	

자료 : 자치구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확인 및 전화통화

2) 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시 25개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장애아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장애통합 어린이집 및 미지정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지원을 통한 전문성 강화, 장애아영유아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부모역할 및 역량강화, 장애영유아 발달에 조기 개입함으로써 건강한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서울특별시, 2018).

지역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침아래 크게 세 가지 영역(교사지원, 영유아발달지원, 가족지원)에서 장애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세부 지원 영역이 지역의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강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추가적으로 일반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양육 상담을 진행하여 장애영유아 조기발견에 대한 사업이 이루어졌고, 관악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재교구 대여 및 지원 사업이 이루어졌고, 광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장애통합보육을 하는 장애전담교사들과 사례발표회를 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협약된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특수체육치료사가 월 2회 방문하여 치료를 해주는 프로그램이 타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 사업보다 추가적으로 이루어졌고, 노원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장애통합 보조교사를 추가적으로 지원하였고, 동작구와 양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매년 장애영유아를 담당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교사 힐링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다. 중구와 중랑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교재교구 및 도서, 평가도구 등을 대여하는 사업들을 추가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25개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장애영유아를 위한 큰 범위의 사업은 동일하게 이루어졌지만 자치구별 추가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치구별로 서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조사를 실시하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의 특수교사의 열악한 처우,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장애통합보육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자치구도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장애통합보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유관기관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표 III-5>와 같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장애아 지원 사업은 서울시 사업으로 25개 모든 센터에서 교사지원, 영유아 발달지원, 가족지원으로 이루어지며, 지원 대상 역시 보육교사, 장애아 및 가족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에는 자치구별로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특히 특수교사가 없거나 현재 구직 중으로 공석인 곳이 2곳이며, 양천구는 3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른 곳은 모두 1명의 특수교사가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9개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치료사를 협약하여 비상근으로 장애아 가족 및 장애영유아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애아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특수교사 평균 1명은 매우 적은 인력이다. 장애통합어린이집 중 서울시 보육포털에 장애영유아가 등록되어 있는 곳은 218개소, 1,445명 뿐 아니라 일반어린이집 장애 영유아지원, 가족지원까지 고려하면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특수교사 1명은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5-1 유아종합지원센터 장애아 지원 사업 내용 및 인력 비교 분석

유아종합지원센터	사업 내용	비고	전문 인력 현황	관할 장애이통합 어린이집 수	장애이통합어린이집 장애영유아 수
강남구 유아종합지원센터	- 교사지원 : 현장순회지원, 대·소집단 교사교육, 장애인식 개선교육 - 영유아발달지원 : 조기선별검사, 순회치료, 장애인식 개선교육 - 가족지원 : 가족체험프로그램, 부모상담 및 교육		특수교사 1명 치료사 2명(협약)	13 개소	133명
강동구 유아종합지원센터	- 교사지원 : 현장순회지원, 교사교육, 장애통합교사 워크숍 - 영유아발달지원 : 조기선별검사, 순회치료 - 가족지원 : 초등연계프로그램, 가족심리지원 프로그램, 부모교육/상담	일반어린이집 대상 지원(찾아가는 아동양육 상담)	특수교사 1명 치료사 2명(협약)	14 개소	93명
강북구 유아종합지원센터	- 교사지원 : 현장순회지원, 대·소집단 교사교육, 장애인식 개선교육 - 영유아발달지원 : 조기선별검사 - 가족지원 : 가족체험프로그램, 부모상담 및 교육, 초등연계프로그램		특수교사 1명 치료사 1명(협약)	3 개소	9명
강서구 유아종합지원센터	- 교사지원 : 현장순회지원, 대·소집단 교사교육, 교사 소모임 - 영유아발달지원 : 조기선별검사 - 가족지원 : 가족체험프로그램, 부모상담 및 교육, 초등연계프로그램		특수교사 無 (구직 중)	9 개소	66명
관악구 유아종합지원센터	- 교사지원 : 현장순회지원, 대·소집단 교사교육 - 영유아발달지원 : 조기선별검사 - 가족지원 : 가족체험프로그램, 부모상담 및 교육, 초등연계프로그램	교재교구 대여 및 지원	특수교사 1명	11 개소	57명
광진구 유아종합지원센터	- 교사지원 : 현장순회지원, 대·소집단 교사교육, 장애인식 개선교육 - 영유아발달지원 : 조기선별검사 - 가족지원 : 가족체험프로그램, 부모상담 및 교육, 초등연계프로그램	장애통합보육 사례 발표회	특수교사 1명 치료사 2명(협약)	11 개소	51명
구로구 유아종합지원센터	- 교사지원 : 현장순회지원, 대·소집단 교사교육, 장애인식 개선교육 - 영유아발달지원 : 조기선별검사 - 가족지원 : 가족체험프로그램, 부모상담 및 교육, 초등연계프로그램		특수교사 1명 치료사 2명(협약)	6 개소	47명
금천구 유아종합지원센터	- 교사지원 : 현장순회지원, 대·소집단 교사교육, 장애인식 개선교육 - 영유아발달지원 : 조기선별검사 - 가족지원 : 가족체험프로그램, 부모상담 및 교육, 초등연계프로그램	협약 어린이집에 특수체육치료사 월2회 방문	특수교사 1명	7 개소	24명
노원구 유아종합지원센터	- 교사지원 : 현장순회지원, 대·소집단 교사교육, 장애인식 개선교육 - 영유아발달지원 : 조기선별검사, 치료사 파견 - 가족지원 : 가족체험프로그램, 부모상담 및 교육, 초등연계프로그램	장애통합보육 보조원 지원 (3-12월까지)	특수교사 1명 상담전문원 1명 치료사 1명(협약) 심리교사 1명(협약)	17 개소	105명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내용	비고	전문 인력 현황	관할 장애이통합 어린이집 수	장애이통합 장애이통합어린이집 장애영유아 수
도봉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교사지원 : 현장순회지원, 대·소집단 교사교육 - 영유아발달지원 : 조기신발검사, 치료사 파견 - 가족지원 : 가족체협프로그램, 부모상담 및 교육, 초등연계프로그램		특수교사 1명	7 개소	47명
동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교사지원 : 현장순회지원, 대·소집단 교사교육 - 영유아발달지원 : 조기신발검사, 치료사 파견 - 가족지원 : 가족체협프로그램, 부모상담 및 교육, 초등연계프로그램		특수교사 1명 치료사 1명(협약)	4 개소	15명
동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교사지원 : 현장순회지원, 대·소집단 교사교육 - 영유아발달지원 : 조기신발검사 - 가족지원 : 가족체협프로그램, 부모상담 및 교육, 초등연계프로그램	교사 힐링 프로그램 (연 1~2회)	특수교사 1명	9 개소	36명
마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교사지원 : 현장순회지원, 대·소집단 교사교육 - 영유아발달지원 : 조기신발검사, 치료사 파견 - 가족지원 : 가족체협프로그램, 부모상담 및 교육, 초등연계프로그램		특수교사 1명 치료사 5명(협약)	11 개소	44명
서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교사지원 : 현장순회지원, 대·소집단 교사교육, 장애인식 개선교육 - 영유아발달지원 : 조기신발검사, 치료사 파견 - 가족지원 : 가족체협프로그램, 부모상담 및 교육, 초등연계프로그램		특수교사 1명	10 개소	50명
서초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교사지원 : 현장순회지원, 대·소집단 교사교육 - 영유아발달지원 : 조기신발검사 - 가족지원 : 가족체협프로그램, 부모상담 및 교육, 초등연계프로그램		특수교사 1명 치료사 4명(협약)	11 개소	70명
성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교사지원 : 현장순회지원, 대·소집단 교사교육 - 영유아발달지원 : 조기신발검사 - 가족지원 : 가족체협프로그램, 부모상담 및 교육, 초등연계프로그램		특수교사 1명 치료사 1명(협약)	5 개소	38명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교사지원 : 현장순회지원, 대·소집단 교사교육 - 영유아발달지원 : 조기신발검사 - 가족지원 : 가족체협프로그램, 부모상담 및 교육, 초등연계프로그램		특수교사 1명	11 개소	47명
송파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교사지원 : 현장순회지원, 대·소집단 교사교육, 장애인식 개선교육 - 영유아발달지원 : 조기신발검사, 치료사 파견 - 가족지원 : 가족체협프로그램, 부모상담 및 교육, 초등연계프로그램		특수교사 1명 치료사 1명(협약)	15 개소	85명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내용	비고	전문 인력 현황	관할 장애이통합 어린이집 수	장애이통합 장애이통합어린이집 장애영유아 수
양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교사지원 : 현장순회지원, 대·소집단 교사교육, 장애인식 개선교육 - 영유아발달지원 : 조기신발검사, 치료사 파견 - 가족지원 : 가족체험프로그램, 부모상담 및 교육, 초등연계프로그램	감각통합 교재교구 기관대여 교사 힐링 프로그램	특수교사 3명	25 개소	130명
영등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교사지원 : 현장순회지원, 대·소집단 교사교육, 장애인식 개선교육 - 영유아발달지원 : 조기신발검사, 치료사 파견 - 가족지원 : 가족체험프로그램, 부모상담 및 교육, 초등연계프로그램		특수교사 1명 치료사 2명(협약)	7 개소	48명
용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교사지원 : 현장순회지원, 대·소집단 교사교육 - 영유아발달지원 : 조기신발검사 - 가족지원 : 가족체험프로그램, 부모상담 및 교육, 초등연계프로그램		특수교사 1명	6 개소	29명
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교사지원 : 현장순회지원, 대·소집단 교사교육 - 영유아발달지원 : 조기신발검사, 치료사 파견 - 가족지원 : 가족체험프로그램, 부모상담 및 교육, 초등연계프로그램	감각통합 교재교구 기관대여	특수교사 1명	10 개소	47명
중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교사지원 : 현장순회지원, 대·소집단 교사교육 - 영유아발달지원 : 조기신발검사, 치료사 파견 - 가족지원 : 가족체험프로그램, 부모상담 및 교육, 초등연계프로그램		특수교사 無 (구직 중)	7 개소	47명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교사지원 : 현장순회지원, 대·소집단 교사교육, 장애인식 개선교육 - 영유아발달지원 : 조기신발검사, 치료사 파견 - 가족지원 : 가족체험프로그램, 부모상담 및 교육, 초등연계프로그램	교재교구 및 도서대여 장애통합보육 사례발표회	특수교사 1명	4 개소	42명
중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교사지원 : 현장순회지원, 대·소집단 교사교육, 장애인식 개선교육 - 영유아발달지원 : 조기신발검사 - 가족지원 : 가족체험프로그램, 부모상담 및 교육, 초등연계프로그램	교재교구 및 평가도구 대여	특수교사 1명	10 개소	85명
			특수교사25명 치료사(협약) 9센터 23명	218개소	1,445명

자료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확인 및 전화통화, 서울시 보육포털

제 3절 서울시 장애통합보육 현황 분석

1. 서울시 장애통합보육 어린이집 현황 분석

서울시에서 장애통합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크게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일반 어린이집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장애통합보육 어린이집의 비율을 살펴보면, 장애아통합어린이집 341개소(70.2%),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10개소(2.0%), 일반 어린이집 135개소(27.8%)의 비율로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2012년 266개소, 2013년 280개소, 2014년 300개소, 2015년 320개소, 2016년 326개소, 2017년 341개소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2017년 말 기준 서울시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전국 946개소 대비 36%에 해당한다.

서울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2012년 10개소, 2013년 10개소, 2014년 10개소, 2015년 10개소, 2016년 10개소, 2017년 10개소로 지속적으로 같은 개소수로 유지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말 기준 서울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전국 178개소 대비 5.6%에 해당한다.

서울시 일반 어린이집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일반 어린이집은 2012년 380개소, 2013년 263개소, 2014년 203개소, 2015년 170개소, 2016년 145개소, 2017년 135개소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말 기준 서울시 일반 어린이집은 전국 1,219개소 대비 11.1%에 해당한다. 일반 어린이집의 장애영유아의 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이들을 담임하는 보육교사는 장애담당 자격이 없어 실제로 장애영유아의 통합보육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에, 증가하고 있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장애통합보육이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 지원해야 될 부분에 대해 파악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표 Ⅲ-6 서울시 장애통합보육 어린이집 현황

(단위: 명, %)

구분	장애통합보육 어린이집			
	장애아통합	전문	일반	전체
2012년	266(40.5)	10(1.5)	380(58.0)	656(100.0)
2013년	280(50.6)	10(1.8)	263(47.6)	553(100.0)
2014년	300(58.5)	10(2.0)	203(39.5)	513(100.0)
2015년	320(64.0)	10(2.0)	170(34.0)	500(100.0)
2016년	326(67.8)	10(2.1)	145(30.1)	481(100.0)
2017년	341(70.2)	10(2.0)	135(27.8)	486(100.0)

자료 : 보건복지부(2012년-2017년), 보육통계

2. 서울시 장애통합보육을 이용하는 장애영유아 현황 분석

서울시에서 장애통합보육을 이용하는 장애영유아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일반 어린이집 등에서 재원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장애통합보육을 이용하는 장애영유아 수를 살펴보면, 장애아통합어린이집 1,617명(78.6%),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261명(12.7%), 일반 어린이집 178명(8.7%)의 비율로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에서 장애영유아를 위한 장애통합보육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시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재원 하고 있는 장애영유아의 수를 살펴보면,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은 2012년 1,405명, 2013년 1,478명, 2014년 1,550명, 2015년 1,572명, 2016년 1,641명, 2017년 1,617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말 기준 서울시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재원 하고 있는 장애영유아 수는 전국 4,066명 대비 39.8%에 해당한다.

서울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 재원 하고 있는 장애영유아의 수를 살펴보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2012년 249명, 2013년 250명, 2014년 240명, 2015년 229명, 2016년 241명, 2017년 261명으로 지속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말 기준 서울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 재원 하고 있는 장애영유아 수는 전국 7,098명 대비 3.7%에 해당한다.

서울시 일반 어린이집에 재원 하고 있는 장애영유아의 수를 살펴보면, 일반 어린이집은 2012년 492명, 2013년 363명, 2014년 287명, 2015년 244명, 2016년 206명, 2017년 178명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통합어린이집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장애영유아의 이용 어린이집 유형이 일반 어린이집에서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으로 변화한 것과도 연관이 있다.

이에, 장애영유아들에게 적합한 인적 환경, 물리적 환경, 프로그램을 지원해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장애영유아의 실태 및 요구를 파악하고 내실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해야한다.

표 III-7 | 서울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영유아 수 현황

(단위: 명, %)

구분	장애영유아				전체 영유아
	장애아통합	전문	일반	전체	
2012년	1,405(65.5)	249(11.6)	492(22.9)	2,146(100.0)	239,335
2013년	1,478(70.7)	250(11.9)	363(17.4)	2,091(100.0)	242,648
2014년	1,550(74.6)	240(11.6)	287(13.8)	2,077(100.0)	243,432
2015년	1,572(76.9)	229(11.2)	244(11.9)	2,045(100.0)	238,103
2016년	1,641(78.6)	241(11.5)	206(9.9)	2,088(100.0)	236,550
2017년	1,617(78.6)	261(12.7)	178(8.7)	2,056(100.0)	234,867

자료 : 보건복지부(2012년-2017년), 보육통계

3. 서울시 장애영유아 담당 교사 현황

서울시에서 장애영유아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로 나눌 수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장애영유아 담당 교사 수를 살펴보면,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수는 164명(25.4%), 특수교사 수는 401명(62.0%)으로 나타났고,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수는 21명(3.2%), 특수교사 수는 61명(9.4%)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장애통합보육을 담당하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수를 살펴보면,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2012년 188명, 2013년 189명, 2014년 174명, 2015년 147명, 2016년 151명, 2017년 164명으로 나타났고,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2012년 38명, 2013년 34명, 2014년 32명, 2015년 24명, 2016년 21명, 2017년 21명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장애통합보육을 담당하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장애통합보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사 수를 살펴보면,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2012년 308명, 2013년 330명, 2014년 364명, 2015년 395명, 2016년 418명, 2017년 401명으로 나타났고,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2012년 47명, 2013년 51명, 2014년 53명, 2015년 51명, 2016년 61명, 2017년 61명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장애통합보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사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통합학급을 담당하는 장애전담교사는 줄어드는 반면, 특수교사의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보육현장의 의 특수교사 채용의 어려움과는 다소 차이가 나타난다. 그러나 장애아 통합보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담당교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표 Ⅲ-8 서울시 장애영유아 담당 교사 수 현황

(단위: 명, %)

구분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전체
	장애아통합	전문	장애아통합	전문	
2012년	188(32.4)	38(6.5)	308(53.0)	47(8.1)	581(100.0)
2013년	189(31.3)	34(5.6)	330(54.6)	51(8.5)	604(100.0)
2014년	174(27.9)	32(5.1)	364(58.5)	53(8.5)	623(100.0)
2015년	147(23.8)	24(3.9)	395(64.0)	51(8.3)	617(100.0)
2016년	151(23.2)	21(3.2)	418(64.2)	61(9.4)	651(100.0)
2017년	164(25.4)	21(3.2)	401(62.0)	61(9.4)	647(100.0)

자료 : 보건복지부(2012년-2017년), 보육통계

IV

서울시 어린이집 취약보육(장애통합보육) 실태 및 요구

제 1절 조사 목적 및 개요

제 2절 조사 결과

제 3절 요약 및 시사점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V

서울시 어린이집 취약보육(장애통합보육) 실태 및 요구

제 1절 조사 목적 및 개요

1. 설문조사 목적 및 개요

1) 조사목적

본 연구는 서울시 어린이집 취약보육(장애통합보육)의 실태와 요구를 파악하여, 서울시 어린이집 취약보육(장애통합보육) 내실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이다. 따라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서울시 취약보육(장애통합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원장,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일반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의 취약보육(장애통합보육)에 대한 실태 및 요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어린이집 취약보육(장애통합보육) 내실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조사대상 및 표집

서울시 어린이집 취약보육(장애통합보육)의 실태와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원장,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일반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를 대상으로 취약보육(장애통합보육)에 대한 경험에 대해 조사를

계획하여, 설문조사는 2018년 5월 4일부터 2018년 5월 25일까지 이메일, 우편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조사 대상을 표집하기 위해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 조사 협조와 서울시보육포털을 활용하여 장애영유아 통합보육이 이루어지는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법인어린이집 원장 130명, 장애통합학급 담당교사(일반보육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300명을 표집 하였다. 총 430명이 조사에 응하였으며, 응답한 내용이 미흡한 설문지 22부를 제외하고 최종 원장 125부, 장애통합학급 담당교사(일반보육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283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3) 조사 내용

본 설문조사는 서울시 어린이집 취약보육(장애통합보육)의 운영 영역과 장애통합학급을 운영할 때의 실태와 요구를 나누어 살펴보기 위해 원장 대상 설문지, 장애통합학급 담당교사 설문지를 나누어 구성하였다. 장애통합보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설문지를 본 조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설문지 초안을 구성하였고, 장애통합보육과 관련한 교육 전문가, 현장 전문가와 함께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원장 대상 설문지의 조사영역은 ① 원장 일반적 사항, ② 인적 환경, ③ 물리적 환경, ④ 장애통합보육 운영, ⑤ 원장의 전문성, ⑥ 가정 및 타 기관 연계, ⑦ 정책지원 등 7개 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장애통합학급 담당교사 설문지의 조사영역은 ① 교사 일반적 사항, ② 인적 환경, ③ 물리적 환경, ④ 장애통합보육 운영 및 프로그램, ⑤ 교사의 전문성, ⑥ 가정 및 타 기관 연계, ⑦ 정책지원 등 7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원장 대상 설문지, 장애통합학급 담당교사 대상 설문지의 각 영역별 세부적인 조사 내용은 아래의 <표 IV-1>, <표 IV-2>와 같다.

【 표 IV-1 】 설문조사 내용(원장 대상)

주제	조사항목	조사 내용
원장 일반적 사항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근무 소재지, 학력,
	직무관련 특성	현 근무 어린이집 유형, 총 원장경력, 장애통합어린이집 원장경력, 전공
	어린이집 현황	어린이집 정원/현원, 장애영유아 수, 총 학급 수, 일반학급 수, 통합학급 수
인적 환경	어린이집 인적 현황	연령별 장애영유아 수, 통합학급 수, 교사 배치
	전문인력	전문인력 유형, 전문인력 채용 시 어려움, 채용하기 어려운 인력, 전문인력 확보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점
	보조인력	보조인력 유무, 하루 활용시간, 만족도
물리적 환경	물리적 환경	현재 구비된 물리적 환경, 필요한 물리적 환경
장애통합 보육 운영	어린이집 운영	장애통합보육 실시 계기, 운영 방식, 어려운 점
	외부교육(연수) 지원	외부교육(연수) 지원 유무, 외부교육(연수) 지원 장소
	외부자문	외부자문 유무, 외부자문 받는 기관, 도움 내용, 만족도, 가장 도움 되는 내용
원장 전문성	외부교육(연수) 참여	외부교육(연수) 유무, 실시 횟수, 만족도, 외부교육(연수) 도움 되었던 내용, 외부교육(연수) 원하는 내용
가정 및 타 기관 연계	가정 연계	가정연계 유무, 제공하는 정보, 가정연계 만족도, 소통 어려움
	지역사회 기관 연계	지역사회 기관 연계(협력) 유무, 협력기관, 연계(협력) 내용, 만족도
정책지원	정책지원	현재 받고 있는 정책지원 유무, 내용, 원하는 정책지원

【 표 IV-2 】 설문조사 내용(장애통합학급 담당 교사 대상)

주제	조사항목	조사 내용
교사 일반적 사항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근무 소재지, 학력,
	직무관련 특성	현 근무 어린이집 유형, 총 교사경력, 자격증 장애통합어린이집 교사경력, 전공, 교사 자격,
인적 환경	장애통합학급 인적 현황	담당학급 연령, 일반/장애 영유아 인원, 장애 유형, 교사 배치. 교사 대 장애영유아 비율 적절성
	보조인력	보조인력 유무, 유형, 인원 수, 하루 활용시간, 도움 내용, 만족도
물리적 환경	물리적 환경	현재 구비된 물리적 환경 만족도, 필요한 물리적 환경
장애통합 보육 운영 및 프로그램	장애통합학급 운영	장애통합학급 운영 시 어려운 점, 교사 간 협력 정도
	장애통합보육 프로그램	개별화 교육프로그램(IEP) 팀 구성, 평가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유무, 실시 횟수, 만족도 개별화 가족지원계획(IFSP) 팀 구성, 평가
교사 전문성	외부교육(연수) 참여	외부교육(연수) 유무, 실시 횟수, 만족도, 외부교육(연수) 도움 되었던 내용, 외부교육(연수) 원하는 내용
가정 및 타 기관 연계	가정 연계	가정연계 의사소통 방법, 소통 내용
	지역사회 기관 연계	지역사회 기관 연계(협력) 유무, 협력기관, 연계(협력) 내용, 만족도
정책지원	정책지원	현재 받고 있는 정책지원 내용, 현재 어린이집에서 받고 있는 지원 내용 원하는 정책지원

4)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원장)

본 연구에서 원장 대상으로 수거된 설문지 130부 중 응답이 불성실하여 분석할 수 없는 5부를 제외한 125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원장들의 일반적인 사항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IV-3>, <표 IV-4>와 같다.

표 IV-3 | 조사대상(원장) 일반적 사항(1)

(단위: 명, %)

구분		사례수(명)	비율(%)
연령	30대	7	5.6
	40대	37	29.6
	50대	53	42.4
	60대	11	8.8
	무응답	17	13.6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113	90.4
	법인	2	1.6
	민간	2	1.6
	무응답	8	6.4
장애통합 경력	1-5년	49	39.2
	6-10년	34	27.2
	11 - 15년	21	16.8
	16 - 20년	6	4.8
	무응답	15	12.0
어린이집 규모	40 - 79명	36	28.8
	80 - 99명	37	29.6
	100명 이상	46	36.8
	무응답	6	4.8
장애영유아 수	1 - 3명	45	36.0
	4 - 6명	34	27.2
	7 - 9명	30	24.0
	10 - 12명	6	4.8
	13명 이상	2	1.6
	무응답	8	6.4

표 IV-4 조사대상(원장) 일반적 사항(2)

(단위: 명, %)

지역	장애통합어린이집	사례수(명)	비율(%)
전체	243	125	51.4
강남구	13	6	46.2
강동구	14	3	21.4
강북구	3	2	66.7
강서구	9	7	77.8
관악구	11	5	45.5
광진구	11	10	90.9
구로구	6	1	16.7
금천구	7	5	71.4
노원구	17	6	35.3
도봉구	7	2	28.6
동대문구	4	0	0.0
동작구	9	8	88.9
마포구	11	5	45.5
서대문구	10	4	40.0
서초구	11	5	45.5
성동구	5	5	100.0
성북구	11	5	45.5
송파구	15	8	53.3
양천구	25	8	32.0
영등포구	7	5	71.4
용산구	6	5	83.3
은평구	10	2	20.0
종로구	7	4	57.1
중구	4	2	50.0
중랑구	10	5	50.0
무응답		7	

주: 서울시보육포털 기준, 장애통합어린이집 0학급, 장애영유아 0명을 제외한 전체 장애통합어린이집이 243곳임.

먼저 서울시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원장의 연령을 조사한 결과, '50대(42.4%)', '40대(29.6%)', '60대(8.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종사하고 있는 어린이집 유형을 조사한 결과, '국공립어린이집(90.4%)', '법인어린이집(1.6%)', '가정어린이집(1.6%)' 순으로 대부분의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당 원장들의 장애통합보육 원장 경력을 조사한 결과, '1~5년(39.2%)', '6~10년(27.2%)', '11~15년(16.8%)' 순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규모는 '100명 이상(36.8%)', '80~99명(29.6%)', '40~79명(28.8%)'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장애영유아 수를 조사한 결과, '1~3명(36.0%)', '4~6명(27.2%)', '7~9명(24.0%)' 순으로 나타나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대부분은 한 학급에서 1~3명의 장애영유아가 재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서울시보육포털 기준으로 0학급, 장애영유아 재원 0명을 제외하면 총 243곳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원장들의 응답률을 소재지별로 조사한 결과, 서울시 장애아통합어린이집 대비 '125곳(51.4%)'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응답률은 '성동구(100.0%)', '광진구(90.9%)', '동작구(88.9%)' 순으로 나타났다.

5)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교사)

본 연구에서 교사 대상으로 수거된 설문지 300부 중 응답이 완료되지 않은 17부를 제외한 283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장애통합학급 담당교사(일반보육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들의 일반적인 사항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IV-5>, <표 IV-6>와 같다.

【 표 IV-5 】 조사대상(교사) 일반적 사항(1)

(단위: 명, %)

구분		사례수(명)	비율(%)
연령	20대	129	45.6
	30대	83	29.3
	40대	32	11.3
	50대	7	2.5
	무응답	32	11.3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275	97.1
	법인	3	1.1
	민간	5	1.8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1	0.4
	전문대 졸업	93	32.9
	대학교 졸업	140	49.5
	대학원 이상	46	16.3
	무응답	3	1.1
장애통합 경력	1~5년	125	44.2
	6~10년	68	24.0
	11 - 15년	15	5.3
	16 - 20년	3	1.1
	무응답	72	25.4
교사자격	일반보육교사	85	30.0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108	38.2
	특수교사	71	25.1
	치료사	14	4.9
	무응답	5	1.8

표 IV-6 조사대상(교사) 일반적 사항(2)

(단위: 명, %)

구분	사례수(명)	비율(%)
강남구	18	6.4
강동구	15	5.3
강북구	1	0.4
강서구	12	4.2
관악구	5	1.8
광진구	14	4.9
구로구	3	1.1
금천구	9	3.2
노원구	16	5.7
도봉구	7	2.5
동대문구	4	1.4
동작구	17	6.0
마포구	6	2.1
서대문구	8	2.8
서초구	7	2.5
성동구	22	7.8
성북구	11	3.9
송파구	19	6.7
양천구	19	6.7
영등포구	11	3.9
용산구	4	1.4
은평구	2	0.7
종로구	11	3.9
중구	13	4.6
중랑구	26	9.2
무응답	3	1.1



먼저 장애통합학급 담당 교사의 연령을 조사한 결과, '20대(45.6%)', '30대(29.3%)', '40대(11.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종사하고 있는 어린이집 유형을 조사한 결과, '국공립어린이집(97.1%)', '민간어린이집(1.8%)', '법인어린이집(1.1%)'

순으로 나타났으며, 장애통합학급 담당 교사들의 최종학력을 조사한 결과, '대학교 졸업(49.5%)', '전문대 졸업(32.9)', '대학원 이상(16.3%)'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통합학급 담당 교사들의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 대학원 이상으로 합쳐 본다면 65.8%로 최종학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장애통합보육 경력을 살펴보면, '1~5년(44.2%)', '무응답(25.4%)', '6~10년(24.0%)' 순으로 나타나 6년 이하의 경력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통합학급을 운영하면서 담당 교사의 자격역할을 살펴보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38.2%)', '일반보육교사(30.0%)', '특수교사(25.1%)' 순으로 나타났다.

2. 심층면접(FGI) 개요

본 연구에서 서울시 어린이집 취약보육(장애통합보육)의 실태와 요구를 파악하여, 내실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설문조사 분석결과에 대한 자세한 요구를 더 알아보는 것과 설문지 대상 외에 장애통합보육과 관련된 기관의 담당자, 부모, 원장, 장애통합학급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심층면접(FGI)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심층면접(FGI)를 통해 설문조사에 대한 보충 자료와 장애통합보육과 관련된 요구를 심도 깊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수렴하였다.

1) 심층면접(FGI) 참여자

서울시 어린이집 취약보육(장애통합보육)의 실태와 요구를 다각적이고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해 장애통합보육과 관련된 기관 담당자 3명, 부모 3명, 원장 3명, 장애통합학급 담당 교사 3명을 선정하였다. 연령은 20대~50대까지 다양하게 분포하였고, 장애통합보육 관련 경력은 2년~14년까지 넓은 분포를 보였다.

서울시 어린이집 취약보육(장애통합보육)의 실태와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심층면접(FGI) 참여자의 특성은 아래의 <표 IV-7>과 같다.

【 표 IV-7 】 심층면접(FGI) 참여자 특성

구분	유형	연령	장애통합보육 관련 경력	최종학력
1차 심층면접(FGI)	장애담당 교사A	27세	5년	4년제 졸업
	장애담당 교사B	31세	2년	4년제 졸업
	장애담당 교사C	39세	5년	4년제 졸업
2차 심층면접(FGI)	기관 담당자 A	37세	12년	4년제 졸업
	기관 담당자 B	28세	3년	4년제 졸업
	기관 담당자 C	27세	3년	4년제 졸업
3차 심층면접(FGI)	원장 A	55세	10년	대학원 졸업
	원장 B	54세	10년	대학원 졸업
	원장 C	55세	14년	4년제 졸업
4차 심층면접(FGI)	부모 A	39세	-	4년제 졸업
	부모 B	42세	-	4년제 졸업
	부모 C	35세	-	전문대 졸업

2) 심층면접(FGI) 진행과정

심층면접(FGI)은 총 4회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차 심층면접(FGI)에서는 장애통합학급을 운영하는 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태 및 요구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2차 심층면접(FGI)에서는 장애통합보육과 관련된 유관 기관의 담당자들과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정책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3차 심층면접(FGI)에서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들을 대상으로 어려운 점, 요구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4차 심층면접(FGI)에서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채용하고 있는 장애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장애통합보육 서비스의 현황 및 요구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 표 IV-8 】 심층면접(FGI) 진행과정

구분	일시	장소
1차 심층면접(FGI)	2018년 5월 16일(수) 16:00-18:00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아트컬리지 1
2차 심층면접(FGI)	2018년 5월 17일(목) 10:30-12:30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소담 2실
3차 심층면접(FGI)	2018년 5월 21일(월) 16:00-18:00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교육장
4차 심층면접(FGI)	2018년 5월 24일(목) 10:30-12:30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컨퍼런스실

3. 전문가 자문 개요

본 연구에서 서울시 어린이집 취약보육(장애통합보육)의 실태와 요구를 파악하여, 내실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제언의 방향성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서울시 어린이집 취약보육(장애통합보육)의 내실화 방안 정책제언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수렴하였다.

1) 전문가 자문 참여자

서울시 어린이집 취약보육(장애통합보육)의 내실화 방안에 대한 정책제언을 다각적이고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대학교수,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원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으로 선정하였다. 연령은 40대 ~ 50대까지 분포하였고, 장애통합보육 관련 경력은 10년 ~ 20년까지 넓은 분포를 보였다.

전문가 자문 참여자의 특성은 아래의 <표 IV-9>과 같다.

▣ 표 IV-9 ▣ 전문가 자문 참여자 특성

구분	유형	연령	장애통합보육 관련 경력	전문영역
1차 전문가 회의	대학교 교수 A	46세	13년	학계 전문가
	원장 B	50세	12년	현장 전문가
	원장 C	49세	13년	현장 전문가
2차 전문가 회의	대학교 교수 A	52세	18년	학계 전문가
	대학교 교수 B	49세	14년	학계 전문가
	원장 C	55세	20년	현장 전문가
3차 전문가 회의	센터장 A	53세	15년	정부기관 전문가
	센터장 B	49세	10년	정부기관 전문가
4차 전문가 회의	대학교 교수 A	46세	13년	대학원 졸업
	대학교 교수 B	52세	18년	대학원 졸업
	원장 C	50세	12년	현장 전문가
	원장 D	49세	13년	현장 전문가

2) 전문가 자문 진행과정

전문가 자문은 총 4회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차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서울시 어린이집 취약보육(장애통합보육)의 내실화 방안에서 인적 환경에 대한 정책제언에 중점을 두었고, 2차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서울시 어린이집 취약보육(장애통합보육)의 내실화 방안에서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정책제언에 중점을 두었고, 3차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서울시 어린이집 취약보육(장애통합보육)의 내실화 방안에서 운영 및 프로그램, 교사(원장) 전문성에 대한 정책제언에 중점을 두었고, 4차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서울시 어린이집 취약보육(장애통합보육)의 내실화 방안에서 가정 및 타 기관과의 연계(협력)에 대한 정책제언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전문가 자문의 진행과정은 아래의 <표 IV-10>과 같다.

■ 표 IV-10 ■ 전문가 자문 진행과정

구분	일시	장소
1차 전문가 회의	2018년 8월 9일(목) 12:00-14:00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교육장
2차 전문가 회의	2018년 8월 13일(월) 12:30-14:30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교육장
3차 전문가 회의	2018년 8월 16일(목) 14:30-18:00	A 육아종합지원센터 B 육아종합지원센터
4차 전문가 회의	2018년 8월 20일(월) 16:00-18:00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교육장

제 2절 조사 결과

1. 서울시 장애통합보육 실태 및 요구(원장)

1) 인적 환경 실태 및 요구

(1) 전문 인력 현황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전문 인력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순으로 근무를 하는 것이 나타났다. 또한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근무하는 특수교사의 경우, 1명인 곳이 34개소(64.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어린이집 규모별로 살펴보면, '40~79명 12개소(92.3%)', '100명 이상 12개소(48.0%)', '80~99명 10개소(66.7%)'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경우, 1명인 곳이 48개소(53.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어린이집 규모별로 살펴보면, '40~79명 18개소(72.0%)', '80~99명 18개소(56.3%)', '100명 이상 12개소(36.4%)' 순으로 나타났다. 치료사의 경우, 1명인 곳이 21개소(95.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어린이집 규모별로 살펴보면, '100명 이상 16개소(94.1%)', '80~99명 5개소(100.0%)' 순으로 나타났고, '40명~79명' 규모의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서는 치료사 인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서의 전문 인력 현황 결과를 종합해보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비중이 가장 컸으며,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치료사 인력 배치가 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규모가 작은 장애통합어린이집일 경우에 다양한 전문 인력의 교육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심층면접(FGI)에서는 치료사가 있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재원 하는 경우, 장애영유아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저희 원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치료사 선생님이 이제 올라오셔서 치료를 하세요. 오늘

수업을 이런 것을 했다고 키즈노트에 내용 찍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수업했다고 알려 줍니다. 그러면 저도 사설에서 따로 받는 인지 수업, 언어 수업이랑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은 시너지가 올라가요. 왜냐하면 수업 교실에서 어린이집에서 했고, 애가 센터에서도 배웠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확실히 올라가더라고요.” (부모 A)

따라서 규모가 작은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일 경우라도 다양한 전문 인력(치료사)들을 배치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표 IV-11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전문 인력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치료사	
	1명	2명	3명	1명	2명	3명	4명	6명	1명	2명
전체	34(64.2)	11(20.8)	8(15.1)	48(53.3)	27(30.0)	13(14.4)	1(1.1)	1(1.1)	21(95.5)	1(4.5)
40~79명	12(92.3)	1(7.7)	0(0)	18(72.0)	6(24.0)	1(4.0)	0(0)	0(0)	0(0)	0(0)
80~99명	10(66.7)	5(44.4)	0(0)	18(56.3)	9(28.1)	5(15.6)	0(0)	0(0)	5(100.0)	0(0)
100명이상	12(48.0)	5(20.0)	8(32.0)	12(36.4)	12(36.4)	7(21.2)	1(3.0)	1(3.0)	16(94.1)	1(5.9)

(2) 전문 인력 채용 시 어려움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서 전문 인력을 채용할 경우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108명(93.9%)의 응답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전문 인력 중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전문 인력을 조사한 결과, ‘특수교사 99명(62.3%)’,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34명(21.4%)’, ‘치료사 13명(8.2%)’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어린이집 규모별로 살펴보면, ‘40~79명 29명(87.9%)’, ‘80~99명 30명(85.7%)’, ‘100명이상 40명(90.9%)’로 대부분의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원장들은 ‘특수교사’ 전문 인력 확보가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서의 전문 인력 채용 시 어려움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대부분의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서 전문 인력 채용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중에서도 ‘특수교사’ 인력 확보를 가장 어려워하였다. 심층면접(FGI)에서도 특수교사 인력 확보

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의견이 있었다.

“요즘 법이 바뀌어서 교사 대 장애영유아 비율 1:3에 다가 특수교사를 배치하라고 하는데,,, 유아는 그렇다고 치지만 영아 세 명이 어려워요, 장애영아 세 명이 어려워요? 보육료도 똑같고. 게다가 영아반 교사는 한 명이 없어도 금방 올 수도 있는데, 특수교사는 하늘에 별 따기예요.” (원장 B)

따라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장애유아를 담당하는 특수교사 또는 장애유아 담당 보육교사를 2016.3.1.부터 2018.3.1.까지 순차적으로 배치하도록 되어있는 법률이 실효성 있도록 자리 잡기 위해서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의 마련이 변경 필요하다.

표 IV-12 전문 인력 채용 시 어려움 / 확보하기 어려운 전문 인력

(단위: 명, %)

구분	전문인력 채용 시 어려움		확보하기 어려운 전문 인력				
	있다	없다	일반보육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보조인력
전체	108(93.9)	7(6.1)	6(3.8)	34(21.4)	99(62.3)	13(8.2)	7(4.4)
40~79명	33(91.7)	3(8.3)	2(6.1)	11(33.3)	29(87.9)	2(6.1)	0(0)
80~99명	33(97.1)	1(2.9)	4(11.4)	12(34.3)	30(85.7)	4(11.4)	3(8.6)
100명이상	42(93.3)	3(6.7)	0(0)	11(25.0)	40(90.9)	7(15.9)	4(9.1)

주: 다중응답(확보하기 가장 어려운 인력 문항)

(3)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요구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서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요구를 조사한 결과, ‘처우개선 52명(36.6%)’, ‘대학인력 양성 확대 35명(24.6%)’, ‘자격증 체계 정비 24명(16.9%)’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어린이집 규모별로 살펴보면, ‘40~79명 14명(46.7%)’, ‘80~99명 16명(55.2%)’, ‘100명이상 22명(62.9%)’로 대부분의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원장들은 ‘처우개선’에 대해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서의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요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대부분의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원장들은 ‘처우개선’이나 ‘대학인력 양성 확대’를 요구하였다. 이는 서울지역 근처에 특수교사 자격증을 주는 대학양성기관이 적으며, 특수교사 자격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급여를 더 많이 주는 특수학교나 유치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 결과라 볼 수 있다. 심층면접(FGI)에서도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요구의 의견이 있었다.

“가뜩이나 특수교사 자격증 있는 사람도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유치원으로 가고 싶어 해요. 그러니깐 누가 장애통합어린이집에 오려고 하겠어요. 급여를 올려주든지 특수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배출을 많이 해주든지 해야 하지 않겠어요?” (원장 C)

따라서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현장 요구를 반영하여 처우개선이나 특수교사 배출이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 표 IV-13 ■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요구

(단위: 명, %)

구분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요구							
	처우개선	교사대 이동비율 감소	장애정도 에 따른 배치	대체교사 지원	보조교사 지원	업무분담	대학인력 양성 확대	자격증 체계 정비
전체	52(36.6)	5(3.5)	7(4.9)	3(2.1)	13(9.1)	3(2.1)	35(24.6)	24(16.9)
40~79명	14(46.7)	1(3.3)	1(3.3)	0(0)	3(10.0)	1(3.3)	13(43.3)	11(36.7)
80~99명	16(55.2)	4(13.8)	3(10.3)	0(0)	3(10.3)	2(6.9)	12(41.4)	6(20.7)
100명이상	22(62.9)	0(0)	3(8.6)	3(8.6)	7(20.0)	0(0)	10(28.6)	7(20.0)

주: 다중응답

(4) 보조 인력 현황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조 인력의 유형을 조사한 결과, ‘장애통합보육도우미 45명(46.9%)’, ‘장애통합 보조교사 18명(18.7%)’, ‘기관자체고용 보조인력 16명(16.7%)’, ‘공익근무요원 13명(13.5%)’, ‘기타 4명(4.2%)’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강동구, 구로구, 서대문구,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에 속한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서는 보조인력 유형으로 가장 많이 나온 장애아통합보육도우미 보조 인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조 인력의 수를 조사한 결과, '1명 62곳(73.8%)', '2명 19곳(22.6)', '3명 3곳(3.6%)'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보조 인력이 1명인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조 인력의 하루 활용시간을 조사한 결과, '6시간 58명(66.7%)', '7시간 이상 16명(18.4%)', '5시간 이하 13명(14.9%)'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보조 인력 하루 활용시간은 6시간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서의 보조 인력 현황 결과를 종합해보면, 보조 인력의 유형으로는 장애아통합보육도우미 유형이 가장 많았고, 보조 인력은 1명, 하루 활용시간은 6시간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심층면접(FGI)에서는 보조 인력에 필요성, 하루 활용시간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장애 정도에 따라 뇌병변 2급, 1급 경우엔 1:1 보육이 필요해요. 이 아이를 전담해서 봐줄 수 있는 보조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원장 A)

“보육 인력 지원되는 시간이 4시간, 6시간 어정쩡해요. 실제 보육 시간은 종일 8시간 이면 8시간. 이렇게 풀타임으로 지원이 되어 저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사 B)

따라서 서울시에서 2013년부터 처음 시작한 장애통합보육도우미 보조 인력 사업을 확대하여 많은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서 보조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점과 하루 기본보육시간 8시간, 초과 보육이 늘어남에 따라 보조 인력의 활용시간도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표 IV-14 보조 인력 현황

(단위: 명, %)

구분	보조 인력 유형					보조 인력 수			하루활용시간		
	장애통합 보조교사	장애통합 보육도우미	가관자체 고용 보조인력	공익근무 요원	기타)	1명	2명	3명	5시간 이하	6시간	7시간 이상
전체	18(18.7)	45(46.9)	16(16.7)	13(13.5)	4(4.2)	62(73.8)	19(22.6)	3(3.6)	13(14.9)	58(66.7)	16(18.4)
강남구	0(0)	4(100.0)	0(0)	0(0)	1(25.0)	4(100.0)	1(25.0)	0(0)	1(20.0)	4(80.0)	1(20.0)
강동구	2(100.0)	0(0)	1(50.0)	0(0)	0(0)	0(0)	2(200.0)	0(0)	1(50.0)	0(0)	2(100.0)
강서구	0(0)	4(100.0)	0(0)	0(0)	0(0)	2(50.0)	2(50.0)	0(0)	0(0)	4(100.0)	0(0)
관악구	1(50.0)	1(50.0)	1(50.0)	0(0)	0(0)	1(50.0)	1(50.0)	0(0)	0(0)	2(100.0)	0(0)
광진구	0(0)	3(60.0)	2(40.0)	1(20.0)	0(0)	4(80.0)	1(20.0)	1(20.0)	1(20.0)	4(80.0)	1(20.0)
구로구	0(0)	0(0)	1(100.0)	0(0)	0(0)	1(100.0)	0(0)	0(0)	0(0)	0(0)	1(100.0)
금천구	1(25.0)	1(25.0)	2(50.0)	2(50.0)	0(0)	3(100.0)	2(66.7)	0(0)	4(133.3)	1(33.3)	0(0)
노원구	0(0)	3(100.0)	0(0)	0(0)	0(0)	3(100.0)	0(0)	0(0)	0(0)	3(100.0)	0(0)
도봉구	0(0)	2(100.0)	0(0)	0(0)	0(0)	1(100.0)	0(0)	0(0)	0(0)	2(100.0)	0(0)
동작구	1(16.7)	1(16.7)	2(33.3)	0(0)	2(33.3)	4(80.0)	1(20.0)	0(0)	1(20.0)	2(40.0)	2(40.0)
마포구	1(25.0)	2(50.0)	0(0)	2(50.0)	0(0)	4(133.3)	0(0)	0(0)	1(25.0)	2(50.0)	2(50.0)
서대문구	2(66.7)	0(0)	1(33.3)	0(0)	0(0)	2(66.7)	1(33.3)	0(0)	1(33.3)	2(66.7)	0(0)
서초구	1(33.3)	1(33.3)	1(33.3)	0(0)	0(0)	1(33.3)	2(66.7)	0(0)	0(0)	3(100.0)	0(0)
성동구	0(0)	4(100.0)	0(0)	2(50.0)	0(0)	5(125.0)	1(25.0)	0(0)	0(0)	4(100.0)	2(50.0)
성북구	0(0)	2(100.0)	0(0)	0(0)	0(0)	2(100.0)	0(0)	0(0)	0(0)	2(100.0)	0(0)
송파구	3(37.5)	3(37.5)	0(0)	1(12.5)	1(12.5)	7(100.0)	0(0)	1(12.5)	1(12.5)	6(75.0)	1(12.5)
양천구	0(0)	4(80.0)	1(20.0)	0(0)	0(0)	5(100.0)	0(0)	0(0)	0(0)	5(100.0)	0(0)
영등포구	0(0)	3(75.0)	2(50.0)	1(25.0)	0(0)	3(100.0)	2(66.7)	0(0)	0(0)	3(100.0)	2(66.7)
용산구	0(0)	0(0)	1(50.0)	2(100.0)	0(0)	2(100.0)	0(0)	0(0)	1(100.0)	0(0)	0(0)
은평구	0(0)	1(100.0)	0(0)	0(0)	0(0)	1(100.0)	0(0)	0(0)	0(0)	1(100.0)	0(0)
종로구	0(0)	3(75.0)	1(25.0)	0(0)	0(0)	3(75.0)	1(25.0)	0(0)	1(25.0)	3(75.0)	0(0)
중구	0(0)	1(50.0)	0(0)	2(100.0)	0(0)	1(50.0)	1(50.0)	1(50.0)	0(0)	1(100.0)	0(0)
중랑구	3(75.0)	1(25.0)	0(0)	0(0)	0(0)	3(75.0)	1(25.0)	0(0)	0(0)	2(66.7)	1(33.3)

주: 1) 기타에는 누리보조교사, 현장학습도우미가 포함됨.
 2) 다중응답
 3) 강북구, 동대문구는 해당 문항 무응답으로 인해 누락됨.



2) 물리적 환경 실태 및 요구

(1) 물리적 환경 현황

장애아통합어린이집 물리적 환경을 조사한 결과, ‘출입문, 경사로, 화장실 등 편의 시설 100명(84.7%)’, ‘특수책상과 의자 19명(16.1%)’, ‘신체활동 공간 44명(37.3%)’, ‘실외 놀이터기구 19명(15.1%)’, ‘보조기구(휠체어, 워커 등) 17명(14.4%)’, ‘치료 공간 31명(26.3%)’으로 물리적 환경이 구비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를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소재지 별로 살펴보면, ‘출입문, 경사로, 화장실 등 편의시설’은 동작구 8곳(100.0%), ‘특수 책상과 의자’는 광진구 3곳(30.0%), ‘신체활동 공간’은 송파구 5곳(62.5%), ‘실외 놀이터 기구’는 강남구 2곳(33.3%), 송파구 2곳(25.0%), 용산구 2곳(40.0%), ‘보조기구(휠체어, 워커 등)’는 광진구 3곳(30.0%), ‘치료 공간’은 성동구 4곳(80.0%), 영등포구 4곳(80.0%)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서의 물리적 환경 현황 결과를 종합해보면, 대부분의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의 물리적 환경에서 ‘출입문, 경사로,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물리적 환경은 미흡한 것을 알 수 있다. 심층면접(FGI)에서는 물리적 환경 중에서 보조 기기 대여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보조기기는 관내에 지체아이라든지 청각 친구들이라든지 필요한 보조기구들이 있잖아요. 휠체어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쓰는 그런 것들, 청각은 FM 송수신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센터차원에서 구입을 해서 대여를 하고 있어요.” (기관 담당자 C)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대대적인 현황 조사의 필요성이 있으며, 보조기기의 경우 관할 내 육아종합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 센터에서 보조기기를 대여할 수 있는 방향의 협력정책이 필요하다.

【 표 IV-15 】 물리적 환경 현황

(단위: 명, %)

구분	출입문, 경사로, 화장실 등 편의시설		특수책상과 의자		신체활동 공간		실외 놀이터 기구		보조기구 (휠체어, 워커 등)		치료 공간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전체	100(84.7)	18(15.3)	19(16.1)	99(83.9)	44(37.3)	74(62.7)	19(16.1)	99(83.9)	17(14.4)	101.85(6)	31(26.3)	87(73.7)
강남구	4(66.7)	2(33.3)	1(16.7)	5(83.3)	2(33.3)	4(66.7)	2(33.3)	4(66.7)	0(0)	6(100.0)	1(16.7)	5(83.3)
강동구	3(100.0)	0(0)	0(0)	3(100.0)	1(33.3)	2(66.7)	0(0)	3(100.0)	1(33.3)	2(66.7)	1(33.3)	2(66.7)
강북구	2(100.0)	0(0)	0(0)	2(100.0)	0(0)	2(100.0)	1(50.0)	1(50.0)	0(0)	2(100.0)	0(0)	2(100.0)
강서구	7(100.0)	0(0)	1(14.3)	6(85.7)	0(0)	7(100.0)	1(14.3)	6(85.7)	0(0)	7(100.0)	1(14.3)	6(85.7)
관악구	4(80.0)	1(20.0)	0(0)	5(100.0)	2(40.0)	3(60.0)	1(20.0)	4(80.0)	1(20.0)	4(80.0)	0(0)	5(100.0)
광진구	9(90.0)	1(10.0)	3(30.0)	7(70.0)	3(30.0)	7(70.0)	1(10.0)	9(90.0)	3(30.0)	7(70.0)	2(20.0)	8(80.0)
구로구	1(100.0)	0(0)	0(0)	1(100.0)	0(0)	1(100.0)	0(0)	1(100.0)	0(0)	1(100.0)	0(0)	1(100.0)
금천구	3(60.0)	2(40.0)	2(40.0)	3(60.0)	4(80.0)	1(20.0)	1(20.0)	4(80.0)	2(40.0)	3(60.0)	2(40.0)	3(60.0)
노원구	4(66.7)	2(33.3)	2(33.3)	4(66.7)	4(66.7)	2(33.3)	1(16.7)	5(83.3)	1(16.7)	5(83.3)	2(33.3)	4(66.7)
도봉구	2(100.0)	0(0)	0(0)	2(100.0)	1(50.0)	1(50.0)	1(50.0)	1(50.0)	0(0)	2(100.0)	0(0)	2(100.0)
동작구	8(100.0)	0(0)	1(12.5)	7(87.5)	3(37.5)	5(62.5)	1(12.5)	7(87.5)	1(12.5)	7(87.5)	1(12.5)	7(87.5)
마포구	4(80.0)	1(20.0)	0(0)	5(100.0)	4(80.0)	1(20.0)	1(20.0)	4(80.0)	0(0)	5(100.0)	2(40.0)	3(60.0)
서대문구	3(75.0)	1(25.0)	0(0)	4(100.0)	1(25.0)	3(75.0)	0(0)	4(100.0)	0(0)	4(100.0)	3(75.0)	1(25.0)
서초구	4(80.0)	1(20.0)	0(0)	5(100.0)	3(60.0)	2(40.0)	0(0)	5(100.0)	1(20.0)	4(80.0)	0(0)	5(100.0)
성동구	5(100.0)	0(0)	1(20.0)	4(80.0)	1(20.0)	4(80.0)	1(20.0)	4(80.0)	2(40.0)	3(60.0)	4(80.0)	1(20.0)
성북구	4(80.0)	1(20.0)	1(20.0)	4(80.0)	1(20.0)	4(80.0)	0(0)	5(100.0)	0(0)	5(100.0)	1(20.0)	4(80.0)
송파구	6(75.0)	2(25.0)	1(12.5)	7(87.5)	5(62.5)	3(37.5)	2(25.0)	6(75.0)	2(25.0)	6(75.0)	2(25.0)	6(75.0)
양천구	7(87.5)	1(12.5)	1(12.5)	7(87.5)	1(12.5)	7(87.5)	0(0)	8(100.0)	1(12.5)	7(87.5)	2(25.0)	6(75.0)
영등포구	5(100.0)	0(0)	1(20.0)	4(80.0)	4(80.0)	1(20.0)	1(20.0)	4(80.0)	1(20.0)	4(80.0)	4(80.0)	1(20.0)
용산구	5(100.0)	0(0)	2(40.0)	3(60.0)	0(0)	5(100.0)	2(40.0)	3(60.0)	0(0)	5(100.0)	0(0)	5(100.0)
은평구	1(50.0)	1(50.0)	0(0)	2(100.0)	0(0)	2(100.0)	0(0)	2(100.0)	0(0)	2(100.0)	0(0)	2(100.0)
종로구	4(100.0)	0(0)	0(0)	4(100.0)	2(50.0)	2(50.0)	1(25.0)	3(75.0)	0(0)	4(100.0)	2(50.0)	2(50.0)
중구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0(0)	2(100.0)	1(50.0)	1(50.0)	1(50.0)	1(50.0)
중랑구	4(80.0)	1(20.0)	1(20.0)	4(80.0)	1(20.0)	4(80.0)	1(20.0)	4(80.0)	0(0)	5(100.0)	0(0)	5(100.0)

주: 1) 동대문구는 해당 문항 무응답으로 인해 누락됨.



(2) 물리적 환경 요구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물리적 환경 요구를 조사한 결과, ‘치료 공간 26명(45.6%)’, ‘신체활동 공간 14명(24.6%)’, ‘감각통합 교재교구 8명(14.0%)’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규모별로 살펴보면, ‘40~79명’은 ‘치료 공간 11명(73.3%)’이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80~99명’은 ‘치료 공간 12명(70.6%)’이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100명 이상’은 ‘신체활동 공간 5명(45.5%)’이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서의 물리적 환경 요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원장들은 치료 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었으며, 어린이집의 규모가 작을 경우에도 치료 공간을 필요로 했고, 어린이집 규모가 100명 이상으로 클 경우에는 신체활동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층면접(FGI)에서는 물리적 환경 중에서 치료 공간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치료사 순회지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럴 경우 1:1로 조용한 공간이 필요한데, 치료 공간이 없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요.” (교사 C)

따라서 서울시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한다면 첫 번째로 치료 공간을 확충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의 필요성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 표 IV-16 】 물리적 환경 요구

(단위: 명, %)

구분	물리적 환경 요구					
	감각통합 교재 교구	대소근육 활동 교구	보조공학기기	특수책상과 의자	신체활동 공간	치료 공간
전체	8(14.0)	5(8.8)	2(3.5)	2(3.5)	14(24.6)	26(45.6)
40~79명	3(20.0)	2(13.3)	0(0)	0(0)	5(33.3)	11(73.3)
80~99명	2(11.8)	2(11.8)	2(11.8)	1(5.9)	4(23.5)	12(70.6)
100명이상	3(27.3)	1(9.1)	0(0)	1(9.1)	5(45.5)	3(27.3)

주: 다중응답

3) 장애통합보육 운영 실태

(1) 장애통합보육 실시 계기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원장들의 장애통합보육 실시 계기를 조사한 결과, ‘원장(설립자, 위탁체)의 철학 84명(43.1%)’, ‘위탁 시 취약보육을 선택해야 해서 74명(37.9%)’, ‘시·자치구의 요구 27명(13.8%)’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원장의 장애통합보육 경력별로 살펴보면, ‘1~5년’은 ‘위탁 시 취약보육을 선택해야 해서 36명(80.0%)’이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6~10년’은 ‘원장(설립자, 위탁체)의 철학 27명(79.4%)’이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11년 이상’은 ‘원장(설립자, 위탁체)의 철학 16명(80.0%)’이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원장들의 장애통합보육 실시 계기 결과를 종합해보면, 장애통합보육 경력이 작은 원장들은 위탁 시 취약보육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가 많았고, 장애통합보육 경력이 높은 원장들은 원장(설립자, 위탁체)의 철학에 의해 장애통합보육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심층면접(FGI)에서는 장애통합보육 실시 계기 중 원장들의 철학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장애통합보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원장님의 철학이 많이 반영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철학을 가지고 하지 않고 타인에 의해 시작하게 되면 어려움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기관 담당자 A)

“운영에 대한 철학. 원장님들이 장애통합보육의 중심을 갖고 가야하니, 교사들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원장님의 장애통합보육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장 C)

따라서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장애통합보육을 실시하게 된 계기도 중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그 중에서도 원장의 철학이 장애통합보육의 성공을 좌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원장의 교육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 표 IV-17 】 장애통합보육 실시 계기

(단위: 명, %)

구분	장애통합보육 실시 계기			
	원장(설립자, 위탁체)의 철학	위탁 시 취약보육 (장애, 다문화, 시간연장) 선택해야 해서	시·자치구의 요구	기타)
전체	84(43.1)	74(37.9)	27(13.8)	10(5.1)
1~5년	35(77.8)	36(80.0)	13(28.9)	4(8.9)
6~10년	27(79.4)	21(61.8)	8(23.5)	3(8.8)
11년 이상	22(84.6)	17(65.4)	6(23.1)	3(11.5)

주: 1) 기타에는 일반영유아 중 장애발생이 포함됨.
2) 다중응답

(2)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 시 어려운 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 시 어려운 점을 조사한 결과, ‘특수교사 인력확보 및 배치 82명(26.7%)’, ‘경계선상의 장애영유아 증가 62명(20.2%)’, ‘보조인력 부족 49명(16.0%)’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원장의 장애통합보육 경력별로 살펴보면, ‘1~5년’, ‘6~10년’, ‘11년 이상’ 모두 ‘특수교사 인력확보 및 배치’, ‘경계선상의 장애영유아 증가’, ‘보조인력 부족’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 시 어려운 점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대부분의 원장들은 특수교사 인력확보 및 배치, 경계선상의 장애영유아 증가, 보조인력 부족의 원인으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층면접(FGI)에서는 장애통합보육 시 어려운 점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일반 아동 같은 경우에도 경계선상의 아동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린이집에서도 일반 아동이지만, 다음 연령이 되었을 때, 통합 아동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교사 A)

따라서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 상 어려운 점에서 인력 배치 및 보조 인력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바 있다. 하지만 심층면접(FGI)에서도 꾸준히 나왔던 이야기가

경계선상의 장애영유아가 증가하고 있고, 그런 영유아들이 진단을 제대로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두 배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장애 영유아의 진단 및 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화 될 필요가 있다.

표 IV-18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 시 어려운 점

(단위: 명, %)

구분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 시 어려운 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교사 간 협력	특수교사 인력확보 및 배치	물리적 환경 부족	원장의 전문성 부족	담당교사의 전문성 부족	장애영유아 부모와 관계	경계선상의 장애영유아 증가	보조인력 부족	기타)
전체	19(6.2)	82(26.7)	37(12.0)	6(1.9)	21(6.8)	27(8.8)	62(20.2)	49(16.0)	4(1.3)
1~5년	9(20.0)	33(73.3)	17(37.8)	6(13.3)	10(22.2)	13(28.9)	23(51.1)	21(46.7)	0(0)
6~10년	4(11.8)	28(82.4)	12(35.3)	0(0)	8(23.5)	7(20.6)	25(73.5)	14(41.2)	3(8.8)
11년 이상	6(23.1)	21(80.8)	8(30.8)	0(0)	3(11.5)	7(26.9)	14(53.8)	14(53.8)	1(3.8)

주: 1) 기타에는 일반영유아 중 장애발생이 포함됨.
2) 다중응답

(3) 외부자문 실시 현황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외부자문을 가장 많이 받는 기관을 조사한 결과, ‘육아종합지원센터 89명(88.1%)’,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8명(7.9%)’, ‘외부기관(센터, 치료실) 2명(2.0%)’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어린이집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서울시 모든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외부자문을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가장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표 IV-19 】 외부자문 실시 현황

(단위: 명, %)

구분	보건소	외부기관 (센터, 치료실)	육아종합지원센터	전국장애아 통합어린이집협의회	기타 ¹⁾
전체	1(1.0)	2(2.0)	89(88.1)	8(7.9)	1(1.0)
강남구	0(0)	0(0)	4(80.0)	1(20.0)	0(0)
강동구	0(0)	1(50.0)	1(50.0)	0(0)	0(0)
강북구	0(0)	0(0)	1(100.0)	0(0)	0(0)
강서구	0(0)	0(0)	4(66.7)	1(16.7)	1(16.7)
관악구	0(0)	0(0)	4(100.0)	0(0)	0(0)
광진구	0(0)	0(0)	10(100.0)	0(0)	0(0)
금천구	0(0)	1(25.0)	3(75.0)	0(0)	0(0)
노원구	0(0)	0(0)	5(100.0)	0(0)	0(0)
도봉구	0(0)	0(0)	0(0)	1(100.0)	0(0)
동작구	0(0)	0(0)	6(85.7)	1(14.3)	0(0)
마포구	1(20.0)	0(0)	4(80.0)	0(0)	0(0)
서대문구	0(0)	0(0)	1(50.0)	1(50.0)	0(0)
서초구	0(0)	0(0)	3(100.0)	0(0)	0(0)
성동구	0(0)	0(0)	4(100.0)	0(0)	0(0)
성북구	0(0)	0(0)	5(100.0)	0(0)	0(0)
송파구	0(0)	0(0)	7(87.5)	1(12.5)	0(0)
양천구	0(0)	0(0)	7(100.0)	0(0)	0(0)
영등포구	0(0)	0(0)	4(100.0)	0(0)	0(0)
용산구	0(0)	0(0)	5(100.0)	0(0)	0(0)
은평구	0(0)	0(0)	2(100.0)	0(0)	0(0)
종로구	0(0)	0(0)	2(50.0)	2(50.0)	0(0)
중구	0(0)	0(0)	2(100.0)	0(0)	0(0)
중랑구	0(0)	0(0)	5(100.0)	0(0)	0(0)

주: 1) 기타에는 사회복지관이 포함됨.

2) 구로구, 동대문구는 해당 문항 무응답으로 인해 누락됨.

(4) 외부자문 내용 및 만족도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외부자문 내용을 조사한 결과, ‘개별화 교육프로그램(IEP) 계획-

실행-평가 방법 101명(80.8%), '교사 간의 협력할 수 있는 방법 92명(73.6%)', '교사교육(장학, 컨설팅) 91명(72.8%)'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외부자문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교사 간의 협력할 수 있는 방법 평균(3.22)', '개별화 교육프로그램(IEP) 계획-실행-평가 방법 평균(3.20)', '장애발견, 진단, 검사 평균(3.19)'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0 외부자문 내용 및 만족도

(단위: 명, %, 평균)

외부자문 내용	외부자문 유무		만족도	
	있다	없다	평균	표준편차
① 개별화 교육프로그램(IEP) 계획-실행-평가 방법	101(80.8)	24(19.2)	3.20	0.61
② 교사 간의 협력할 수 있는 방법	92(73.6)	33(26.4)	3.22	0.56
③ 장애통합보육 운영 방법(예산, 교사매치 등)	48(38.4)	77(61.6)	3.04	0.74
④ 교사교육(장학, 컨설팅)	91(72.8)	34(27.2)	3.17	0.64
⑤ 장애발견, 진단, 검사	83(66.4)	42(33.6)	3.19	0.64
⑥ 치료연계 방법	73(58.4)	52(41.6)	3.17	0.68
⑦ 장애영유아 가족 상담	62(49.6)	63(50.4)	3.07	0.69
⑧ 초등전환 및 진학지도	80(64.0)	45(36.0)	3.13	0.69
⑨ 개별화 가족지원계획(IFSP) 운영 방법	65(52.0)	60(48.0)	3.14	0.64

IV

4) 원장 전문성 실태 및 요구

(1) 외부교육(연수) 참여

최근 2년 이내에 원장들이 받은 외부교육(연수) 유무를 조사한 결과, '육아종합지원센터 91명(72.8%)',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61명(48.8%)', '한국보육진흥원 36명(28.8%)', '특수교육지원센터 10명(8.0%)'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 이내에 원장들이 받은 외부교육(연수) 실시횟수를 조사한 결과, '육아종합지원센터 평균(2.99)',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평균(2.55)', '한국보육진흥원 평균(1.54)', '특수교육지원센터 평균(1.33)'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 이내에 원장들이 받은 외부교육(연수)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평균(3.43)’, ‘특수교육지원센터 평균(3.40)’, ‘한국보육진흥원 평균(3.39)’, ‘육아종합지원센터 평균(3.31)’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원장의 외부교육(연수) 참여 결과를 종합해보면, 원장들은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가장 많은 교육을 받고 있었고, 교육의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 수 있었다. 특히,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에서 진행되는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IV-21 】 외부교육(연수) 유무, 실시횟수, 만족도(원장)

(단위: 명, %, 평균)

2년 이내 받은 외부교육(연수) 주최	외부교육 유무		실시횟수		만족도	
	있다	없다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한국보육진흥원	36(28.8)	89(71.2)	1.54	0.86	3.39	0.49
육아종합지원센터	91(72.8)	34(27.2)	2.99	2.02	3.31	0.59
특수교육지원센터	10(8.0)	115(92.0)	1.33	0.52	3.40	0.52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61(48.8)	64(51.2)	2.55	1.67	3.43	0.53

(2) 도움 되었던 외부교육(연수) 내용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원장들이 도움 되었던 외부교육(연수) 내용을 조사한 결과, ‘긍정적 행동 지원 36명(23.4%)’, ‘개별화교육프로그램 계획 31명(20.1%)’, ‘개별화교육프로그램 실행 및 평가 30명(19.5%)’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원장의 장애통합보육 경력별로 살펴보면, ‘1~5년’의 경우, ‘긍정적 행동 지원 16명(38.1%)’이 가장 높았고, ‘6~10년’의 경우, ‘긍정적 행동 지원과 개별화교육프로그램 계획 모두 11명(36.7%)’이 가장 높았고, ‘11년 이상’의 경우, ‘장애영유아의 역할과 협력 11명(42.3%)’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원장들이 도움 되었던 외부교육(연수) 내용 결과를 종합해보면, 대부분의 원장들은 장애영유아의 긍정적 행동 지원에 대한 외부교육(연수) 내용에

도움을 받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를 장애통합보육 원장 경력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을 때는 경력별로 도움 되었던 외부교육(연수) 내용이 조금씩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IV-22 | 도움 되었던 외부교육(연수) 내용(원장)

(단위: 명, %)

구분	도움이 되었던 외부교육(연수) 내용				
	장애영유아 가족연계 및 지원	장애영유아교사의 역할과 협력	긍정적 행동 지원	개별화교육프로그램 계획(작성)	개별화교육프로그램 실행 및 평가
전체	29(18.8)	28(18.2)	36(23.4)	31(20.1)	30(19.5)
1~5년	11(26.2)	11(26.2)	16(38.1)	15(35.7)	13(31.0)
6~10년	8(26.7)	6(20.0)	11(36.7)	11(36.7)	8(26.7)
11년 이상	10(38.5)	11(42.3)	9(34.6)	5(19.2)	9(34.6)

주: 다중응답

(3) 외부교육(연수) 요구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원장들이 요구하는 외부교육(연수) 내용을 조사한 결과, ‘장애영유아 가족연계 및 지원 55명(32.2%)’, ‘긍정적 행동 지원 41명(24.0%)’, ‘장애영유아 교사의 역할과 협력 33명(19.3%)’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원장의 장애통합보육 경력별로 살펴보면, ‘1~5년’의 경우, ‘장애영유아 가족연계 및 지원 25명(51.0%)’이 가장 높았고, ‘6~10년’의 경우, ‘장애영유아 가족연계 및 지원 16명(47.1%)’이 가장 높았고, ‘11년 이상’의 경우, ‘장애영유아 가족연계 및 지원과 긍정적 행동지원 모두 14명(53.8%)’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원장들이 요구하는 외부교육(연수) 내용 결과를 종합해보면, 대부분의 원장들은 장애영유아 가족연계 및 지원에 대한 외부교육(연수)을 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장애통합보육 원장 경력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을 때는 ‘11년 이상’경력 원장들은 추가적으로 긍정적 행동 지원에 대한 외부교육(연수) 내용을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심층면접(FGD)에서는 원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외부 교육(연수)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운영하면 장애영유아 부모들에게 정말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그럴 때 마다 저희가 별로 아는 것이 없으니 어디다가 연결해주거나 지원해주는 것도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고 원장들이 가정연계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을 교육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원장 A)

따라서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원장의 전문성이 높아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교육컨텐츠를 개발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될 필요가 있다.

표 IV-23 | 외부교육(연수) 요구(원장)

(단위: 명, %)

구분	외부교육(연수) 요구				
	장애영유아 가족연계 및 지원	장애영유아교사의 역할과 협력	적응행동 발달 교수방법	긍정적 행동 지원	장애영유아 지역사회 연계
전체	55(32.2)	33(19.3)	20(11.7)	41(24.0)	22(12.8)
1~5년	25(51.0)	20(40.8)	11(22.4)	14(28.6)	6(12.2)
6~10년	16(47.1)	8(23.5)	5(14.7)	13(38.2)	8(23.5)
11년 이상	14(53.8)	5(19.2)	4(15.4)	14(53.8)	8(30.8)

주: 다중응답

5) 가정 및 타 기관 연계 실태

(1) 가정연계(정보 제공)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가정연계방법으로 가정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조사한 결과, ‘가정연계활동 정보 67명(26.1%)’, ‘교육과 관련된 전문적 정보 66명(25.7%)’, ‘부모교육 및 역할에 대한 정보 65명(25.3%)’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장애영유아 수별로 살펴보면, ‘1~3명’의 경우, ‘부모교육 및 역할에 대한 정보와 지역

사회 연계 정보 모두 22명(52.4%)이 가장 높았고, '4~6명'의 경우, '교육과 관련된 전문적 정보 20명(60.6%)'이 가장 높았고, '7~9명'의 경우, '가정연계활동 정보 21명(73.4%)'이 가장 높았고, '10~12명'의 경우, '가정연계활동 정보 6명(100.0%)'이 가장 높았고, '13명 이상'의 경우, '교육과 관련된 전문적 정보 2명(100.0%)'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가정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대부분의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서는 가정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재원 하는 장애아영유아 수별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에는 조금씩 차이는 있었지만 크게 차이나지 않았고, 가정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IV-24 가정에게 제공하는 정보

(단위: 명, %)

구분	가정에게 제공하는 정보			
	교육과 관련된 전문적 정보	가정연계활동 정보	부모교육 및 역할에 대한 정보	지역사회 연계 정보
전체	66(25.7)	67(26.1)	65(25.3)	59(22.9)
1 - 3명	19(45.2)	20(47.6)	22(52.4)	22(52.4)
4 - 6명	20(60.6)	19(57.6)	18(54.5)	17(51.5)
7 - 9명	20(69.0)	21(72.4)	20(69.0)	16(55.2)
10 - 12명	5(83.3)	6(100.0)	5(83.3)	3(50.0)
13명 이상	2(100.0)	1(50.0)	0(0)	1(50.0)

주: 다중응답

(2) 지역사회 연계(협력) 많이 하는 기관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서 지역사회 연계(협력)를 많이 하는 기관을 조사한 결과, '육아종합지원센터 96명(89.7%)',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5명(4.7%)', '장애인 복지관과 외부기관(센터, 치료실) 모두 2명(1.9%)'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장애영유아 수별로 살펴보면, '1~3명'의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 38명(95.0%)'이 가장 높았고, '4~6명'의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 29명(93.5%)'이 가장

높았고, '7~9명'의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 24명(85.7%)'이 가장 높았고, '10~12명'의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 4명(66.7%)'이 가장 높았고, '13명 이상'의 경우, '외부 기관(센터, 치료실), 육아종합지원센터 모두 1명(50.0%)'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서 지역사회 연계(협력)를 많이 하는 기관 결과를 종합해보면, 대부분의 기관에서 장애통합보육과 관련하여 서울시 자치구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협력)를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심층면접(FGI)에서는 지역사회 연계(협력) 기관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육도 많이 받고 협력도 많이 받고 있긴 한데, 거기에는 인력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근처에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교육 및 협력을 받으려고 하면 부처가 다르다고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비슷한 업무를 하는데 어디는 되는 거고, 어디는 안 되고 하니깐 너무 답답해요.” (원장 B)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교사 지원이라든지 부모 지원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조금 다른 거는 저희는 어린이집 기관이 아니라, 교육청 소속에 유치원이라든지 초·중·고등학교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담당자 C)

따라서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다양한 기관에서 연계(협력)를 받아야 하는데 한 곳으로 치중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관할 부처의 차이로 인해 협력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연계(협력)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 표 IV-25 】 지역사회 연계(협력) 많이 하는 기관

(단위: 명, %)

구분	지역사회 연계(협력) 많이 하는 기관					
	행정기관 (동사무소, 구청 등)	장애인 복지관	외부 기관 (센터, 치료실)	육아종합지원센터	전국장애아통합 어린이집협의회	기타1)
전체	1(0.9)	2(1.9)	2(1.9)	96(89.7)	5(4.7)	1(0.9)
1-3명	1(2.5)	1(2.5)	0(0)	38(95.0)	0(0)	0(0)
4-6명	0(0)	1(3.2)	0(0)	29(93.5)	1(3.2)	0(0)
7-9명	0(0)	0(0)	0(0)	24(85.7)	3(10.7)	1(3.6)
10-12명	0(0)	0(0)	1(16.7)	4(66.7)	1(16.7)	0(0)
13명 이상	0(0)	0(0)	1(50.0)	1(50.0)	0(0)	0(0)

주: 1) 기타에는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가 포함됨.

(3) 지역사회 연계(협력) 도움 내용, 만족도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역사회 연계(협력) 시 도움 내용을 조사한 결과, ‘개별화 교육프로그램(IEP) 연계(협력) 방법 97명(77.6%)’, ‘장애영유아 문제행동 대처방법 79명(63.2%)’, ‘장애영유아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 73명(58.4%)’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역사회 연계(협력)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 연계(협력) 방법과 가정과 연계(협력) 방법 모두 평균(3.19)’, ‘장애영유아 문제행동 대처방법과 장애영유아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 모두 평균(3.16)’, ‘부모교육 내용 및 방법(부모상담 지원) 평균(3.11)’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역사회 연계(협력) 시 도움 내용과 만족도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가정과 연계(협력) 방법’에 대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대부분 지역사회 연계(협력) 시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사회 연계(협력) 시 만족도는 대부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면접(FGI)에서는 지역사회 연계(협력) 시 원하는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저희 어린이집 주변에 연계(협력) 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아졌으면 하구요. 요즘 장애영유아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이해도도 낮고, 장애영유아를 초과보육 시키는 일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장애통합보육을 이해하기 힘들어하시는 일반자녀 부모들도 계셔서



이러한 부모들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교육 쪽을 협력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 A)

따라서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들은 지역사회 연계(협력)에 만족하면서 더 원하는 내용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지역사회 연계(협력)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구축체계를 마련 할 필요가 있다.

【 표 IV-26 】 지역사회 연계(협력) 도움 내용, 만족도

(단위: 명, %, 평균)

지역사회 연계(협력) 내용	도움내용 유무		만족도	
	있다	없다	평균	표준편차
① 장애영유아 문제행동 대처방법	79(63.2)	46(36.8)	3.16	0.54
② 개별화 교육프로그램(IEP) 연계(협력) 방법	97(77.6)	28(22.4)	3.19	0.51
③ 장애영유아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	73(58.4)	52(41.6)	3.16	0.50
④ 가정과 연계(협력) 방법	55(44.0)	70(56.0)	3.19	0.48
⑤ 부모교육 내용 및 방법(부모상담 지원)	72(57.6)	53(42.4)	3.11	0.62

6) 정책지원 현황 및 요구

(1) 정책지원 현황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현재 받고 있는 정책지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교재·교구비 102명(33.1%)’, ‘교사 인건비 101명(32.8%)’, ‘보조인력 지원 46명(14.9%)’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규모별로 살펴보면, ‘40~79명’의 경우, ‘교재·교구비 33명(97.1%)’이 가장 높았고, ‘80~99명’의 경우, ‘교재·교구비와 교사 인건비 모두 32명(91.4%)’이 가장 높았고, ‘100명 이상’의 경우, ‘교사 인건비 39명(88.6%)’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현재 받고 있는 정책지원 현황을 종합해보면,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정책지원으로 교사 인건비와 교재·교구비 지원은 대부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인력 지원의 경우 장애영유아의 수에 따라 지원범위가 달라짐에 따라 응답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표 IV-27 정책지원 현황

(단위: 명, %)

구분	받고 있는 정책지원						
	교사 인건비	시설 개·보수비	기관 운영비	교재·교구비	보조인력 지원	치료사 지원	기타
전체	101(32.8)	8(2.6)	12(3.9)	102(33.1)	46(14.9)	24(7.8)	15(4.9)
40~79명	30(88.2)	3(8.8)	2(5.9)	33(97.1)	10(29.4)	1(2.9)	6(17.6)
80~99명	32(91.4)	4(11.4)	3(8.6)	32(91.4)	13(37.1)	8(22.9)	2(5.7)
100명이상	39(88.6)	1(2.3)	7(15.9)	37(84.1)	23(52.3)	15(34.1)	7(15.9)

주: 1) 다중응답

2) 기타에는 방과 후 보육 장애시설 운영비가 포함됨.

(2) 정책지원 요구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정책지원을 조사한 결과, ‘보조인력 지원 38명(27.1%)’, ‘진단-배치-상담 연계 서비스 지원과 처우개선(원장, 일반보육교사, 치료사) 모두 24명(17.2%)’, ‘교사 대 장애영유아 비율 감소 22명(15.7%)’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규모별로 살펴보면, ‘40~79명’의 경우, ‘처우개선(원장, 일반보육교사, 치료사) 11명(40.7%)’이 가장 높았고, ‘80~99명’의 경우, ‘보조인력 지원 11명(44.0%)’이 가장 높았고, ‘100명 이상’의 경우, ‘보조인력 지원 18명(54.5%)’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정책지원 결과를 종합해보면, 대부분의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서 보조인력 지원을 요구하였다. 이는 현재 지원되고 있는 보조 인력에서 추가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또한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규모별로 요구하는 정책지원을 살펴보았을 때, 규모가 작은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서는 원장, 일반보육교사, 치료사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면접(FGI)에서는 정책지원으로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다.

“장애영유아를 데리고 나가기 위해서는 이 아동에게 두 사람의 교사가 붙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혼자서는 신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체력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 이게 조금만 멀어지면 지역사회 연계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장애영유아를 함께 데리고 나갈 때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활동 보조 인력이 상황에 따라서 항상 우리 원에만 배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배치될 수 있는 형태로라도 되어야 바깥활동에 대한 것들을 자유롭게 계획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원장 B)

“장애통합학급을 두 반, 세 반 하다보면 원을 두 개 운영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처우개선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을 받기 위해 장애통합을 한다고 할 때에는 정말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한 반으로 가도 통합은 통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어떤 철학, 사명감, 이런 것이 같이 오려면 그것에 따른 처우는 같이 가줘야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명감으로만 끌고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싶습니다.” (원장 C)

따라서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원장집단에서는 보조인력 지원, 처우개선 부분에서 시급히 정책지원이 추가적으로 요구되어 진다고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내실화 방안을 강구할 때, 언급한 내용들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표 IV-28 | 정책지원 요구(원장)

(단위: 명, %)

구분	정책지원 요구					
	교사 대 장애영유아 비율 감소	보조인력 지원	진단-배치-상담 연계 서비스 지원	교사교육 확대 (원장 포함)	처우개선 (원장, 일반보육교사, 치료사)	부모교육 확대 (장애인식교육, 부모상담)
전체	22(15.7)	38(27.1)	24(17.2)	15(10.7)	24(17.2)	17(12.1)
40~79명	7(25.9)	9(33.3)	8(29.6)	3(11.1)	11(40.7)	3(11.1)
80~99명	9(36.0)	11(44.0)	9(36.0)	7(28.0)	8(32.0)	5(20.0)
100명이상	6(18.2)	18(54.5)	7(21.2)	5(15.2)	5(15.2)	9(27.3)

주: 다중응답

2. 서울시 장애통합보육 실태 및 요구(교사)

1) 인적 환경 실태 및 요구

(1) 교사 대 장애영유아 비율 적절성

장애통합학급을 운영하는 담당 교사의 교사 대 장애영유아 비율 적절성을 조사한 결과, ‘대체로 적절하지 않음 112명(41.3%)’, ‘대체로 적절함 101명(37.3%)’, ‘전혀 적절하지 않음 38명(14.0%)’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장애통합학급 담당 교사의 역할 별로 살펴보면, ‘일반보육교사’의 경우, ‘대체로 적절하지 않음 41명(50.0%)’이 가장 높았고,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경우, ‘대체로 적절하지 않음 45명(42.9%)’이 가장 높았고, ‘특수교사’의 경우, ‘대체로 적절함 27명(38.0%)’이 가장 높았고, ‘치료사’의 경우, ‘대체로 적절함 9명(69.2%)’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통합학급을 운영하는 담당 교사의 교사 대 장애영유아 비율 적절성 결과를 종합해보면, 장애통합학급에서 일반보육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집단은 현재의 교사 대 장애영유아 비율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수교사와 치료사 집단은 현재의 교사 대 장애영유아 비율에 대해 대체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9 교사 대 장애영유아 비율 적절성

(단위: 명, %)

구분	전혀 적절하지 않음	대체로 적절하지 않음	대체로 적절함	매우 적절함
전체	38(14.0)	112(41.3)	101(37.3)	20(7.4)
일반보육교사	11(13.4)	41(50.0)	24(29.3)	6(7.3)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14(13.3)	45(42.9)	41(39.0)	5(4.8)
특수교사	11(15.5)	25(35.2)	27(38.0)	8(11.3)
치료사	2(15.4)	1(7.7)	9(69.2)	1(7.7)

(2) 교사 대 장애영유아 비율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장애통합학급을 운영하는 담당 교사 중에 교사 대 장애영유아 비율이 적절하지 않다고 선택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장애정도가 달라서 138명(45.1%)’, ‘장애영유아 안전문제 103명(33.7%)’, ‘1:1지도가 필요한 상황이 많아서 38명(12.4%)’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장애통합학급 담당 교사의 역할별로 살펴보면, ‘일반보육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모두 ‘장애정도가 달라서’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통합학급을 운영하는 담당 교사 중에 교사 대 장애영유아 비율이 적절하지 않다고 선택한 이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장애통합학급 담당 교사인 일반보육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모두 ‘장애정도가 달라서’란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면접(FGI)에서는 교사 대 장애영유아 비율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저희 반에는 뇌병변 등급이 높은 장애유아 한 명이 있어요. 그런데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교사 대 장애영유아 비율이 1:3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옆에 대부분 붙어 있어야 해요. 그럴 때에는 다른 장애영유아들에게 교육이 이루어지기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유형별이나 장애 정도에 따라서 교사 대 장애영유아 비율이 조절 가능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사 B)

따라서 장애통합학급을 운영할 때, 교사 대 장애영유아 비율 문제로 어려운 현실들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른 방안들을 다각도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표 IV-30 교사 대 장애영유아 비율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교사 대 장애영유아 비율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장애정도가 달라서	장애영유아 안전문제	1:1지도가 필요한 상황이 많아서	장애영아의 경우 1:3 적절치 않음	기타
전체	138(45.1)	103(33.7)	38(12.4)	19(6.2)	8(2.6)
일반보육교사	43(67.2)	28(43.8)	10(15.6)	4(6.3)	3(4.7)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54(57.4)	47(50.0)	15(16.0)	11(11.7)	2(2.1)
특수교사	37(66.1)	25(44.6)	12(21.4)	4(7.1)	3(5.4)
치료사	4(100.0)	3(75.0)	1(25.0)	0(0)	0(0)

주: 1) 기타에는 교실공간이 좁음, 분담업무 과중 등이 포함됨.
2) 다중응답

(3) 보조 인력에게 도움 받는 내용

장애통합학급을 운영할 때 보조 인력에게 도움 받는 내용을 조사한 결과, ‘기본생활 보조 61명(31.9%)’, ‘교육활동 보조 42명(22.0%)’, ‘실외활동 보조 31명(16.2%)’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장애통합학급 담당 교사의 역할별로 살펴보면, ‘일반보육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모두 ‘기본생활 보조’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통합학급을 운영할 때 보조 인력에게 도움 받는 내용에 대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장애통합학급 담당 교사인 일반보육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모두 대부분의 보조 인력들에게 도움을 받는 내용으로 ‘기본생활 보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언급한 내용처럼 장애영유아의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에 따라 1:1 지도가 많이 필요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생활에 대한 부분을 보조 인력에게 도움을 받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 표 IV-31 】 보조 인력에게 도움 받는 내용

(단위: 명, %)

구분	보조 인력에게 도움 받는 내용					
	기본생활 보조	실의활동 보조	교육활동 보조	식사지도 보조	청소	중증장애영유아 전담 보조
전체	61(31.9)	31(16.2)	42(22.0)	27(14.1)	15(7.9)	15(7.9)
일반보육교사	15(51.4)	11(31.4)	12(34.3)	4(11.4)	0(0)	4(11.4)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0(45.5)	15(34.1)	16(36.4)	12(27.3)	8(18.2)	7(15.9)
특수교사	20(54.1)	5(13.5)	13(35.1)	9(24.3)	6(16.2)	4(10.8)
치료사	3(75.0)	0(0)	1(25.0)	2(50.0)	1(25.0)	0(0)

주: 다중응답

(4) 보조 인력 만족도

장애통합학급을 운영 시 보조 인력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대체로 만족함 76명(48.7%)’, ‘매우 만족함 43명(27.6%)’, ‘대체로 만족 못함 31명(19.9%)’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장애통합학급 담당 교사의 역할별로 살펴보면, ‘일반보육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모두 ‘대체로 만족함’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통합학급을 운영 시 보조 인력의 만족도에서 ‘대체로 만족 못함’, ‘매우 만족 못함’을 선택한 분들에게 보조인력 활용 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문지식 부족으로 18명(54.5%)’의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장애통합학급 담당 교사의 역할별로 살펴보면, ‘일반보육교사’의 경우, ‘기타 4명(40.0%)’이 가장 높았고,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경우, ‘전문지식 부족으로 7명(70.7%)’이 가장 높았고, ‘특수교사’의 경우, ‘전문지식 부족으로 8명(61.5%)’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통합학급을 운영 시 보조 인력의 만족도에 대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장애통합학급 담당 교사인 일반보육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모두 보조 인력 활용 시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조 인력 활용 시 만족하지 못한다는 그룹에게 이유를 물었을 때에는 보조 인력들이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만족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면접(FGI)에서는 보조 인력 만족도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저희 원은 보조 인력으로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되어 있어요. OO구에서는 공익요원을 통합 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신청을 하면 배치를 하거든요. 공익근무요원이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장애영유아들에게는 부분적인 도움이에요. 왜냐하면 남자잖아요. 그런데 전문지식이 떨어져서 보육도우미 만큼의 교실 내에서의 도움이 이루어지지 않고, 차라리 원에 없었으면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원장 B)

따라서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배치되는 보조 인력의 경우, 장애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전문적인 지식의 필요할 때가 많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보조 인력의 배치도 중요하지만 보조 인력을 양성할 때에는 기본적인 교육의 절차가 꼭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방안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표 IV-32 보조 인력 만족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보조인력 만족도				보조인력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매우 만족 못함	대체로 만족 못함	대체로 만족함	매우 만족함	실제로 별 도움이 되지 않아서	전문지식 부족으로	관계형성의 어려움으로	기타1)
전체	6(3.8)	31(19.9)	76(48.7)	43(27.6)	5(15.2)	18(54.5)	1(3.0)	9(27.3)
일반보육교사	4(7.4)	11(20.4)	23(42.6)	16(29.6)	2(20.0)	3(30.0)	1(10.0)	4(40.0)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0(0)	11(19.0)	28(48.3)	19(32.8)	1(10.0)	7(70.0)	0(0)	2(20.0)
특수교사	2(4.5)	9(20.5)	25(56.8)	8(18.2)	2(15.4)	8(61.5)	0(0)	3(23.1)

주: 1) 기타에는 하루활동시간이 짧아서, 일반영유아 보조가 더 도움, 매일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서 등이 포함됨.

2) 물리적 환경 실태 및 요구

(1) 물리적 환경 만족도 및 요구

장애통합학급을 운영 시 물리적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대체로 만족함 170명(65.4%)’, ‘대체로 만족 못함 63명(24.2%)’, ‘매우 만족함 22명(8.5%)’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장애통합학급 담당 교사의 역할별로 살펴보면, ‘일반보육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모두 ‘대체로 만족함’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통합학급을 운영 시 필요한 물리적 환경에 대한 요구를 조사한 결과, ‘감각통합 교재교구 64명(30.9%)’, ‘대소근육 활동 교구 60명(29.0%)’, ‘신체 활동 공간 28명(13.5%)’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장애통합학급 담당 교사의 역할별로 살펴보면, ‘일반보육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모두 ‘감각통합 교재교구’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통합학급을 운영 시 물리적 환경의 만족도와 필요한 물리적 환경에 대한 요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장애통합학급 담당 교사인 일반보육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모두 현재 구비된 물리적 환경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필요한 물리적 환경에 대한 요구에서는 장애통합학급 담당 교사 모두 ‘감각통합 교재교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장애통합학급을 운영 시 장애영유아들만을 위한 치료 교구들이 현재 많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심층면접(FGI)에서는 장애통합학급을 운영하는 담당 교사가 필요로 요구되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재교구비용이 지원받고 있지만 장애영유아를 위한 감각통합 교재교구의 가격이 너무 비싸요. 거기다가 장애영유아들의 장애 유형도 다 다르기 때문에 특정 영역의 교재교구를 구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저희가 교재교구를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매년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 어려움이 많아요.” (교사 B)

따라서 장애통합학급을 운영할 때 장애영유아들의 장애유형이 다르고, 장애영유아와 관련된 교재교구 가격이 비싸서 현실적으로 장애영유아들만을 위한 교재교구를 제공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지역 내 육아종합지원센터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장애영유아와 관련된 교재교구를 대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표 IV-33 물리적 환경 만족도 및 요구

(단위: 명, %)

구분	현재 구비된 물리적 환경 만족도				필요한 물리적 환경 요구					
	매우 만족 못함	대체로 만족 못함	대체로 만족함	매우 만족함	장애통합 교재 교구	대소근육 활동 교구	보조공학 기기	특수책상과 의자	신체활동 공간	치료 공간
전체	5(1.9)	63(24.2)	170(65.4)	22(8.5)	64(30.9)	60(29.0)	22(10.6)	12(5.8)	28(13.5)	21(10.2)
일반보육교사	2(2.4)	19(22.9)	56(67.5)	6(7.2)	17(42.5)	15(37.5)	4(10.0)	4(10.0)	9(22.5)	11(27.5)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1.9)	25(23.6)	73(68.9)	6(5.7)	30(54.5)	29(52.7)	9(16.4)	4(7.3)	11(20.0)	5(9.1)
특수교사	1(1.4)	19(26.8)	41(57.7)	10(14.1)	17(44.7)	16(42.1)	9(23.7)	4(10.5)	8(21.1)	5(13.2)

주: 다중응답(필요한 물리적 환경 문항)

3) 장애통합보육 운영 및 프로그램 실태

(1) 장애통합학급 운영 시 어려운 점

장애통합학급을 운영 시 어려운 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반장애영유아의 생활지도 144명(19.2%)’, ‘장시간 장애통합보육 운영 142명(18.9%)’, ‘경계선상의 장애영유아 증가 106명(14.2%)’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장애통합학급 담당 교사의 역할별로 살펴보면, ‘일반보육교사’의 경우, ‘일반/장애영유아의 생활지도 52명(61.2%)’이 가장 높았고,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경우, ‘일반/장애영유아의 생활지도와 장시간 장애통합보육 운영 모두 59명(55.7%)’이 가장 높았고, ‘특수교사’의 경우, ‘장시간 장애통합보육 운영 39명(54.9%)’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통합학급을 운영 시 어려운 점에 대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장애통합학급을 운영하면서 일반/장애영유아의 생활 지도를 하는 부분과 장시간 장애통합보육 운영을

하는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통합학급 담당 교사의 역할로 살펴보면 일반보육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일반/장애영유아의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나타냈고,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와 특수교사는 장시간 장애통합보육 운영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면접(FGI)에서는 장애통합학급을 운영 시 어려움 점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계속 해서 이야기 하는 것 같지만 교사 대 장애영유아 비율이 장애유형 정도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담당하는 교사만으로 힘든 경우가 많아요. 이런 아동과 일반 아동들이 함께 있으니 생활지도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교사 A)

“옛날에는 장애가 있는 아동들은 오후에는 병원이나 센터로 빠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보육 끝까지 있거나 심지어 당직교실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힘이 듭니다. 당직교실로 넘어가는 경우 저희 특수교사는 초과 근무를 당연하게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교사 C)

따라서 장애통합학급을 운영하는 담당 교사들은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높은 순위로 나온 ‘일반/장애 영유아의 생활지도’, ‘장시간 장애통합보육 운영’, ‘경계선상의 장애영유아 증가’의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심도 깊게 대안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표 IV-34 장애통합학급 운영 시 어려운 점

(단위: 명, %)

구분	장애통합학급 운영 시 어려운 점								
	장애통합학급 교사 간 협력	일반/장애 영유아의 생활지도	장애인식에 대한 태도	장시간 장애통합보육 운영	장애영유아의 이해도 및 교사전문성 부족	장애유형 구분 없는 반배치	장애영유아의 시간 연장 보육 시	부모들과의 관계 및 요구	경계선상의 장애영유아 증가
전체	52(6.9)	144(19.2)	65(8.7)	142(18.9)	42(5.6)	77(10.3)	37(4.9)	85(11.3)	106(14.2)
일반보육교사	14(16.5)	52(61.2)	19(22.4)	44(51.8)	15(17.6)	19(22.4)	11(12.9)	27(31.8)	41(48.2)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0(18.9)	59(55.7)	29(27.4)	59(55.7)	17(16.0)	30(28.3)	16(15.1)	35(33.0)	37(34.9)
특수교사	18(25.4)	33(46.5)	17(23.9)	39(54.9)	10(14.1)	28(39.4)	10(14.1)	23(32.4)	28(39.4)

주: 다중응답

(2) 장애 인식개선교육 현황

장애 인식개선교육을 대상별로 실시 유무를 조사한 결과, ‘교사 233(82.3%)’, ‘부모 128명 (45.2%)’, ‘영유아 243명(85.9%)’이 장애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부모를 대상으로 한 장애 인식개선교육은 ‘안 한다’가 155명(54.8%)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인식개선교육을 대상별로 실시 횟수를 조사한 결과, ‘영유아 평균(3.93)’, ‘교사 평균(1.78)’, ‘부모 평균(1.63)’ 순으로 나타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장애 인식개선교육 실시횟수가 가장 많았고, 부모를 대상으로 한 장애 인식개선교육 실시횟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인식개선교육을 대상별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영유아 평균(3.08)’, ‘교사 평균(3.05)’, ‘부모 평균(2.86)’ 순으로 나타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장애 인식개선교육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부모를 대상으로 한 장애 인식개선교육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인식개선교육을 대상별로 실시 유무, 실시 횟수, 만족도에 대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장애 인식개선교육이 가장 잘 이루어지고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부모를 대상으로 한 장애 인식개선교육이 가장 잘 이루어지지 않고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보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면접(FGI)에서는 장애 인식개선교육을 할 때 어려운 점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장애 인식개선교육이 의무로 되어 저희도 계획하고 실행하려고 하는데 부모들이 잘 참여를 하지 않아요. 일단 장애영유아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시는 일반부모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희도 고민이 많아요.” (교사 A)

따라서 장애 인식개선교육이 법적으로 의무화 된 이후에 실제 현장에서의 현황조사가 자세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으며, 부모를 대상으로 한 장애 인식개선교육에 대한 콘텐츠 개발, 참여유도 방법 등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 표 IV-35 】 장애 인식개선교육 현황

(단위: 명, %, 평균)

장애 인식개선교육 대상	교육 실시유무		실시 횟수		만족도	
	한다	안 한다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교사	233(82.3)	50(17.7)	1.78	1.96	3.05	0.60
부모	128(45.2)	155(54.8)	1.63	1.33	2.86	0.65
영유아	243(85.9)	40(14.1)	3.93	4.10	3.08	0.52

4) 교사 전문성 실태 및 요구

(1) 외부교육(연수) 참여

최근 2년 이내에 교사들이 받은 외부교육(연수) 유무를 조사한 결과, ‘육아종합지원센터 222명(78.4%)’,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92명(32.5%)’, ‘한국보육진흥원 90명(31.8%)’, ‘특수교육지원센터 36명(12.7%)’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 이내에 교사들이 받은 외부교육(연수) 실시횟수를 조사한 결과, ‘육아종합지원센터 평균(3.72)’,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평균(1.67)’, ‘한국보육진흥원 평균(1.36)’, ‘특수교육지원센터 평균(1.20)’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 이내에 교사들이 받은 외부교육(연수)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보육진흥원 평균(3.24)’, ‘육아종합지원센터 평균(3.17)’,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평균(3.16)’, ‘특수교육지원센터 평균(3.11)’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교사의 외부교육(연수) 참여 결과를 종합해보면, 교사들은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가장 많은 교육을 받고 있었으나 교육의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진행되는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IV-36 】 외부교육(연수) 유무, 실시횟수, 만족도(교사)

(단위: 명, %, 평균)

2년 이내 받은 외부교육(연수) 주최	외부교육 유무		실시횟수		만족도	
	있다	없다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한국보육진흥원	90(31.8)	193(68.2)	1.36	0.83	3.24	0.45
육아종합지원센터	222(78.4)	61(21.6)	3.72	3.25	3.17	0.60
특수교육지원센터	36(12.7)	247(87.3)	1.20	0.41	3.11	0.74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92(32.5)	191(67.5)	1.67	1.06	3.16	0.55

(2) 도움 되었던 외부교육(연수) 내용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교사들이 도움 되었던 외부교육(연수) 내용을 조사한 결과, ‘긍정적 행동 지원 115명(30.8%)’, ‘개별화교육프로그램 계획 89명(23.9%)’, ‘장애영유아 교사의 역할과 협력 63명(16.9%)’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장애통합학급 담당 교사의 역할별로 살펴보면, ‘일반보육교사’의 경우, ‘장애영유아교사의 역할과 협력, 긍정적 행동 지원 모두 24명(38.7%)’이 가장 높았고,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경우, ‘개별화교육프로그램 계획 51명(52.6%)’이 가장 높았고, ‘특수교사’의 경우, ‘긍정적 행동 지원 38명(55.1%)’이 가장 높았고, ‘치료사’의 경우, ‘긍정적 행동 지원, 개별화교육프로그램 계획 모두 4명(40.0%)’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교사들이 도움 되었던 외부교육(연수) 내용 결과를 종합해보면, 대부분의 교사들은 장애영유아의 긍정적 행동 지원에 대한 외부교육(연수) 내용에 도움을 받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를 장애통합학급 담당 교사의 역할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을 때는 역할별로 도움 되었던 외부교육(연수) 내용이 조금씩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 표 IV-37 】 도움 되었던 외부교육(연수) 내용(교사)

(단위: 명, %)

구분	가장 도움이 되었던 외부교육(연수) 내용				
	장애통합보육의 이해	장애영유아교사의 역할과 협력	긍정적 행동 지원	장애영유아 초등학교 전이 프로그램	개별화교육프로그램 계획(작성)
전체	52(13.9)	63(16.9)	115(30.8)	54(14.5)	89(23.9)
일반보육교사	27(43.5)	24(38.7)	24(38.7)	3(4.8)	8(12.9)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10(10.3)	15(15.5)	49(50.5)	29(29.9)	51(52.6)
특수교사	13(18.8)	21(30.4)	38(55.1)	20(29.0)	26(37.7)
치료사	2(20.0)	3(30.0)	4(40.0)	2(20.0)	4(40.0)

주: 다중응답

(3) 외부교육(연수) 요구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교사들이 요구하는 외부교육(연수) 내용을 조사한 결과, ‘긍정적 행동 지원 103명(23.5%)’, ‘장애영유아 초등학교 전이 프로그램 74명(16.8%)’, ‘장애영유아 가족연계 및 지원 72명(16.4%)’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장애통합학급 담당 교사의 역할별로 살펴보면, ‘일반보육교사’의 경우, ‘긍정적 행동 지원 37명(46.3%)’이 가장 높았고,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경우, ‘긍정적 행동 지원 39명(37.1%)’이 가장 높았고, ‘특수교사’의 경우, ‘장애영유아 초등학교 전이 프로그램 32명(45.1%)’이 가장 높았고, ‘치료사’의 경우, ‘의사소통 발달 교수방법 7명(50.0%)’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교사들이 요구하는 외부교육(연수) 내용 결과를 종합해보면, 대부분의 교사들은 장애영유아의 긍정적 행동 지원에 대한 외부교육(연수) 내용을 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장애통합학급 담당 교사의 역할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을 때는 일반보육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긍정적 행동 지원’을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고, 특수교사는 ‘장애영유아 초등학교 전이 프로그램’을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고, 치료사는 ‘의사소통 발달 교수방법’을 응답하는 비율이 높아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면접(FGI)에서는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외부교육(연수)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장애통합학급 한 반 안에 일반보육교사나 특수교사 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게다가 치료지원을 주는 치료사까지 매우 다양한 배경을 지닌 교사들이 함께 하나의 방향성을 향해 갈 때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어려운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교육이 생긴다면 각자의 요구에 따라 담당 교사의 역할별 교육이 이루어지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교사 C)

따라서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교사의 요구를 바탕으로 장애통합학급의 다양한 담당교사 역할별 교육컨텐츠를 개발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될 필요가 있다.

【 표 IV-38 】 외부교육(연수) 요구(교사)

(단위: 명, %)

구분	외부교육(연수) 요구					
	장애영유아 유형별 특성	장애영유아 가족연계 및 지원	의사소통 발달 교수방법	사회성 발달 교수방법	긍정적 행동 지원	장애영유아 초등학교 전이 프로그램
전체	60(13.7)	72(16.4)	63(14.3)	67(15.3)	103(23.5)	74(16.8)
일반보육교사	30(37.5)	10(12.5)	18(22.5)	16(20.0)	37(46.3)	15(18.8)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17(16.2)	35(33.3)	23(21.9)	33(31.4)	39(37.1)	24(22.9)
특수교사	10(14.1)	25(35.2)	15(21.1)	13(18.3)	23(32.4)	32(45.1)
치료사	3(21.4)	2(14.3)	7(50.0)	5(35.7)	4(28.6)	3(21.4)

주: 다중응답

5) 가정 및 타 기관 연계 실태

(1) 가정연계(의사소통 방법)

장애통합학급에서 가정과 의사소통 하는 방법을 조사한 결과, ‘직접 대면(상담, 부모회의 등) 249명(22.9%)’, ‘연락장(알림장, 부모교환 노트) 242명(22.3%)’, ‘가정통신문 152명(14.0%)’, ‘이메일 또는 전화 상담 130명(12.0%)’, ‘가정방문 111명

(10.2%)', '기관 홈페이지 32명(2.9%)'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 장애통합학급에서 가정과 의사소통할 때 다양한 방법을 많이 사용하지만 주로 직접 대면(상담, 부모회의 등)과 연락장(알림장, 부모교환 노트)을 가장 많이 사용하여 연락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표 IV-39 】 가정과 의사소통 방법

(단위: 명, %)

가정과 의사소통 방법						
부모 오리엔테이션	가정방문	연락장 (알림장, 부모교환 노트)	가정통신문	기관 홈페이지	이메일 또는 전화 상담	직접 대면 (상담 부모회의 등)
169(15.6)	111(10.2)	242(22.3)	152(14.0)	32(2.9)	130(12.0)	249(22.9)

주: 다중응답

(2) 가정연계(의사소통 내용)

장애통합학급에서 가정과 의사소통 하는 내용을 조사한 결과, '부모협조 사항 232명(22.7%)', '가족 스트레스 해소 방안 227명(22.2%)', '장애영유아의 성장발달 관련 내용 159명(15.5%)'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장애통합학급 담당 교사의 역할별로 살펴보면, '일반보육교사'의 경우, '가족 스트레스 해소 방안 66명(86.8%)'이 가장 높았고,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경우, '부모협조 사항 101명(96.2%)'이 가장 높았고, '특수교사'의 경우, '가족 스트레스 해소 방안과 부모협조 사항 모두 66명(94.3%)'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통합학급에서 가정과 의사소통 하는 내용 결과를 종합해보면, 대부분의 교사들은 다양한 내용으로 가정과의 소통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부모협조 사항'으로 소통하는 것이 가장 많았다. 이를 장애통합학급 담당 교사의 역할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을 때는 일반보육교사와 특수교사는 '가족 스트레스 해소 방안'을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고,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와 특수교사는 '부모협조 사항'을 응답하는 비율이 높아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0 가정과 의사소통 내용

(단위: 명, %)

구분	가정과 의사소통 내용						
	장애영유아의 성장발달 관련 내용	가정에서의 장애영유아 양육법	가족 스트레스 해소 방안	장애영유아 문제행동 대처방법	보육과정 관련 정보	기관에서의 전반적인 생활	부모협조 사항
전체	159(15.5)	102(10.0)	227(22.2)	147(14.3)	32(3.1)	125(12.2)	232(22.7)
일반보육교사	46(60.5)	33(43.4)	66(86.8)	46(60.5)	6(7.9)	28(36.8)	65(85.5)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60(57.1)	34(32.4)	95(90.5)	60(57.1)	16(15.2)	57(54.3)	101(96.2)
특수교사	53(75.7)	35(50.0)	66(94.3)	41(58.6)	10(14.3)	40(57.1)	66(94.3)

주: 다중응답

(3) 지역사회 기관 연계(협력) 현황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역사회 기관 연계(협력)를 가장 많이 받는 기관을 조사한 결과, ‘육아종합지원센터 325명(41.4%)’, ‘외부기관(센터, 치료실) 163명(20.7%)’, ‘장애인 복지관 96명(12.3%)’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어린이집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서울시 모든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은 지역사회 기관 연계(협력) 시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가장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표 IV-41 】 지역사회 기관 연계(협력) 현황

(단위: 명, %)

구분	보건소	병원	행정기관 (동사무소, 구청 등)	장애인 복지관	외부기관 (센터, 치료실)	특수교육 지원센터	육아종합 지원센터	전국장애아 통합어린이집 협의회
전체	34(4.3)	8(1.0)	47(6.0)	96(12.3)	163(20.7)	51(6.5)	325(41.4)	62(7.8)
강남구	0(0)	1(5.9)	1(5.9)	3(17.6)	8(47.1)	6(35.3)	10(58.8)	4(23.5)
강동구	0(0)	0(0)	1(7.1)	2(14.3)	6(42.9)	1(7.1)	12(85.7)	0(0)
강서구	0(0)	0(0)	1(8.3)	2(16.7)	6(50.0)	2(16.7)	10(83.3)	4(33.3)
관악구	0(0)	0(0)	0(0)	0(0)	1(25.0)	0(0)	4(100.0)	2(50.0)
광진구	4(30.8)	0(0)	0(0)	0(0)	2(15.4)	0(0)	13(100.0)	0(0)
구로구	0(0)	0(0)	0(0)	1(33.3)	1(33.3)	0(0)	3(100.0)	0(0)
금천구	0(0)	0(0)	4(50.0)	1(12.5)	3(37.5)	0(0)	4(50.0)	0(0)
노원구	0(0)	1(9.1)	3(27.3)	0(0)	3(27.3)	2(18.2)	7(63.6)	1(9.1)
도봉구	1(16.7)	0(0)	2(33.3)	1(16.7)	3(50.0)	2(33.3)	4(66.7)	0(0)
동대문구	0(0)	0(0)	0(0)	0(0)	2(66.7)	1(33.3)	2(66.7)	0(0)
동작구	0(0)	0(0)	2(4.3)	4(28.6)	10(71.4)	2(14.3)	11(78.6)	0(0)
마포구	0(0)	0(0)	0(0)	0(0)	2(50.0)	0(0)	4(100.0)	1(25.0)
서대문구	0(0)	0(0)	1(14.3)	3(42.9)	5(71.4)	1(14.3)	7(100.0)	1(14.3)
서초구	1(16.7)	0(0)	0(0)	0(0)	3(50.0)	0(0)	5(83.3)	0(0)
성동구	2(11.8)	0(0)	3(17.6)	5(29.4)	3(17.6)	1(5.9)	12(70.6)	2(11.8)
성북구	1(9.1)	1(9.1)	0(0)	0(0)	4(36.4)	1(9.1)	11(100.0)	1(9.1)
송파구	0(0)	1(5.3)	1(5.3)	0(0)	7(36.8)	3(15.8)	15(78.9)	2(10.5)
양천구	2(16.7)	0(0)	3(25.0)	3(25.0)	5(41.7)	2(16.7)	9(75.0)	2(16.7)
영등포구	4(50.0)	0(0)	3(37.5)	3(37.5)	5(62.5)	1(12.5)	6(75.0)	1(12.5)
용산구	0(0)	0(0)	0(0)	1(25.0)	0(0)	0(0)	3(75.0)	1(25.0)
은평구	0(0)	0(0)	0(0)	2(100.0)	1(50.0)	1(50.0)	2(100.0)	1(50.0)
종로구	0(0)	1(12.5)	1(12.5)	0(0)	6(75.0)	0(0)	6(75.0)	0(0)
중구	0(0)	0(0)	0(0)	2(22.2)	2(22.2)	1(11.1)	7(77.8)	3(33.3)
중랑구	3(12.0)	0(0)	3(12.0)	14(56.0)	10(40.0)	4(16.0)	22(88.0)	6(24.0)

주: 1) 강북구는 해당 문항 무응답으로 인해 누락됨.
2) 다중응답

(4) 지역사회 기관 연계(협력) 내용 및 만족도

장애통합학급의 지역사회 기관 연계(협력) 내용을 조사한 결과, ‘장애영유아 문제행동 대처방법 174명(61.5%)’, ‘개별화 교육프로그램(IEP) 연계(협력) 방법 169명(59.7%)’, ‘장애영유아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 150명(53.0%)’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통합학급의 지역사회 기관 연계(협력)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부모교육 내용 및 방법(부모상담 지원) 평균(3.12)’, ‘장애영유아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 평균(3.06)’, ‘가정과 연계(협력) 방법 평균(3.04)’ 순으로 나타났다.

【 표 IV-42 】 지역사회 기관 연계(협력) 내용 및 만족도

(단위: 명, %, 평균)

지역사회 연계(협력) 내용	도움내용 유무		만족도	
	있다	없다	평균	표준편차
① 장애영유아 문제행동 대처방법	174(61.5)	109(38.5)	3.02	0.49
② 개별화 교육프로그램(IEP) 연계(협력) 방법	169(59.7)	114(40.3)	3.00	0.54
③ 장애영유아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	150(53.0)	133(47.0)	3.06	0.58
④ 가정과 연계(협력) 방법	144(50.9)	139(49.1)	3.04	0.43
⑤ 부모교육 내용 및 방법(부모상담 지원)	134(47.3)	149(52.7)	3.12	0.58

6) 정책지원 현황 및 요구

(1) 어린이집에서 받고 있는 지원 현황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서 현재 받고 있는 지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원받지 않음 155명(73.5%)’, ‘교사 대 아동비율 감소 25명(11.8%)’, ‘기타 13명(6.2%)’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장애통합학급 담당 교사의 역할별로 살펴보면, ‘일반보육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모두 ‘지원받지 않음’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3 어린이집에서 받고 있는 지원 현황

(단위: 명, %)

구분	어린이집에서 받고 있는 지원					
	교사대 장애영유아 비율 감소	공동업무 경감	당직근무 경감	정부지원금 외 추가 지원금	기타	지원받지 않음
전체	25(11.8)	5(2.4)	2(0.9)	11(5.2)	13(6.2)	155(73.5)
일반보육교사	8(12.5)	1(1.6)	0(0)	7(10.9)	7(10.9)	41(64.1)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10(12.2)	4(4.9)	1(1.2)	2(2.4)	4(4.9)	61(74.4)
특수교사	3(5.6)	0(0)	0(0)	2(3.7)	1(1.9)	48(88.9)
치료사	4(36.4)	0(0)	1(9.1)	0(0)	1(9.1)	5(45.5)

주: 1) 기타에는 보조교사 지원, 치료사 지원, 장애통합관련 연수 지원이 포함됨.

(2) 정책지원 요구

장애통합학급을 운영하는 담당 교사들이 요구하는 정책지원을 조사한 결과, ‘교사 대 장애영유아 비율 감소 88명(28.3%)’, ‘보조인력 지원 62명(19.9%)’, ‘교사교육 확대(원장 포함) 48명(15.4%)’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장애통합학급 담당 교사의 역할별로 살펴보면, ‘일반보육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모두 ‘교사 대 장애영유아 비율 감소’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통합학급을 운영하는 담당 교사들이 요구하는 정책지원 결과를 종합해보면, 대부분의 교사들이 교사 대 장애영유아 비율 감소를 요구하였다. 이는 현재 교사 대 장애영유아 비율인 1:3 비율의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또한 장애통합학급 담당 교사의 역할별로 요구하는 정책지원을 살펴보면, 교사 대 장애영유아 비율 감소 이외에 일반보육교사는 ‘보조인력 지원, 교사교육 확대(원장 포함)’가 있었고,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교사교육 확대(원장 포함), 보조인력 지원, 처우개선’이 있었고, 특수교사는 ‘보조인력 지원, 장애통합학급의 교사 간 협력’이 있었고, 치료사는 ‘보조인력 지원, 교사교육 확대(원장 포함), 처우개선, 장애통합학급의 교사 간 협력’ 등의 정책지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면접(FGI)에서는 정책지원으로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다.

“교사 대 장애영유아 비율 1:2만 되더라도 정말 장애통합학급을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교사 B)

“장애통합학급을 담당하는 일반보육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그리고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 모두 각자 역할에서 맞추어진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을 할 때엔 대체교사 지원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교사 C)

따라서 장애통합학급을 운영할 때, 교사집단에서는 교사 대 장애영유아 비율 감소, 보조인력 지원, 교사교육 확대, 처우개선 부분에서 시급히 정책지원이 추가적으로 요구되어 진다고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 장애아통합어린이집 내실화 방안을 강구할 때, 언급한 내용들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표 IV-44 정책지원 요구(교사)

(단위: 명, %)

구분	원하는 정책지원					
	교사 대 장애영유아 비율 감소	보조인력 지원	부모교육 확대 (장애인식교육, 부모상담)	교사교육 확대 (원장 포함)	처우개선 (원장, 일반보육교사, 치료사)	장애통합학급의 교사 간 협력
전체	88(28.3)	62(19.9)	32(10.3)	48(15.4)	37(11.9)	44(14.2)
일반보육교사	32(48.5)	27(40.9)	13(19.7)	14(21.2)	11(16.7)	13(19.7)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30(44.1)	17(25.0)	8(11.8)	20(29.4)	17(25.0)	14(20.6)
특수교사	23(44.2)	16(30.8)	10(19.2)	12(23.1)	7(13.5)	15(28.8)
치료사	3(42.9)	2(28.6)	1(14.3)	2(28.6)	2(28.6)	2(28.6)

주: 다중응답

제 3절 요약 및 시사점

서울시 장애아통합어린이집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요약 및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장애통합보육의 인적 환경을 분석한 결과, 원장들은 전문 인력(특수교사)의 수급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으며,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처우개선'을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조 인력은 '장애통합보육도우미'가 가장 많았고, 하루 시간은 '6시간' 근무하면서 '기본생활 보조'에 대해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장애통합학급을 운영하는 교사들은 교사 대 장애영유아 비율에 대해 '대체로 적절하지 않음'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이유로는 '장애정도가 달라서'로 나타났다. 또한 인적 환경에서 전문 인력 특히 특수교사 수급에 대한 어려움, 처우 개선의 요구, 원장과 교사 모두 '보조인력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통합보육 운영의 질 제고를 위해 특수교사 확보를 위한 방안, 교사 대 장애영유아 비율 조정, 장애아보육도우미 확대 등 현실적 지원방안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장애통합보육의 물리적 환경을 분석한 결과, 장애영유아를 위한 출입문, 경사로, 화장실 등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있다(84.7%)'로 나타났지만 그 외 특수책상과 의자, 신체활동 공간, 실외놀이터 기구, 보조기구, 치료 공간 등은 대부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장들은 '치료 공간'을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현재 구비된 물리적 환경에 대해 '대체로 만족(65.4%)'하고 있었고, 필요한 물리적 환경에서는 장애영유아들을 위한 다양한 감각통합 교재교구(30.9%)와 대소근육 활동교구(29%) 구비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재·교구비가 지원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내실있는 장애통합보육을 위해서는 다양한 장애특성을 지원 할 수 있는 교재·교구의 활용은 중요하다. 따라서 장애통합학급 내 물리적 환경의 질 제고를 위해 '감각통합 교재교구'를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장애통합보육의 운영 및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 시

외부자문은 육아종합지원센터(88.1%), 외부자문 내용은 개별화 교육프로그램(IEP) 계획-실행-평가(80.5%)를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통합보육 운영 시 장애 인식개선교육을 교사(82.3%), 부모(45.2%), 영유아(85.9%)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었고, 실시 횟수는 교사 평균 1.78, 부모 평균 1.63, 영유아 평균 3.93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장애통합보육 운영 시 어려운 점에 대해 원장은 특수교사 인력확보 및 배치(26.7%), 경계선상의 장애영유아 증가(20.2%), 보조인력 부족(16%) 순으로 나타났고, 교사는 일반/장애영유아의 생활지도(19.2%), 장시간 장애통합보육 운영(18.9%), 경계선상의 장애영유아 증가(14.2%)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통합보육의 운영 및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외부 기관과의 정기적 연계가 지원되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 가장 많은 외부자문 및 연계(협력)와 현장순회지원을 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특수교사는 평균 1명이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정기적인 외부자문 및 연계(협력), 현장순회지원을 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또한 대상별(교사, 부모, 영유아) 장애 인식 정도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장애 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이 잘 구성되어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또한 원장들은 장애통합보육을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 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내실있는 장애통합보육이 되기 위해 장애통합보육의 운영 가이드라인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장애통합보육 운영 및 프로그램의 질 제고를 위해 외부자문 활성화 방안, 대상별(교사, 부모, 영유아) 장애 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장애통합보육 운영 가이드라인 매뉴얼 개발 및 보급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장애통합보육의 교사(원장) 전문성 실태 및 요구를 분석한 결과, 원장과 교사는 전문성 향상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원장 72.8%, 교사 78.4%)에서 가장 많은 외부 교육을 받았으며, 최근 2년 이내에 원장은 평균 2.99, 교사는 평균 3.72 횟수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교육 시 가장 도움이 되었던 내용으로 원장은 긍정적 행동지원(23.4%), 개별화교육프로그램 계획(20.1%), 개별화교육프로그램 실행 및 평가(19.5%) 순으로 나타났고, 교사는 긍정적 행동지원(30.8%), 개별화교육프로그램 계획(23.9%), 장애영유아교사의 역할과 협력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부교육의

요구에서 원장은 장애영유아 가족연계 및 지원(32.2%), 긍정적 행동지원(24%), 장애영유아교사의 역할과 협력(19.3%) 내용을 원했고, 교사는 긍정적 행동지원(23.5%), 장애영유아 초등학교 전이프로그램(16.8%), 장애영유아 가족연계 및 지원(16.4%) 내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2년 이내에 원장과 교사 모두 평균 4회 이하의 교육을 받은 후의 응답한 점을 고려할 때, 교사(원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적으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애통합보육 교사(원장) 전문성의 질 제고를 위해 교사와 원장이 요구하는 내용을 기반한 교육컨텐츠를 개발하여 교육을 지원 할 수 있는 교사(원장) 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장애통합보육에서 가정 및 타 기관 연계(협력) 실태를 분석한 결과, 가정에 제공하는 정보로는 가정연계활동 정보(26.1%), 교육과 관련된 전문적 정보(25.7%), 부모 교육 및 역할에 대한 정보(25.3%) 순으로 나타났고, 가정과 의사소통방법으로 직접대면(22.9%), 연락장(22.3%), 부모 오리엔테이션(15.6%) 순으로 나타났고, 의사소통 내용으로 부모협조 사항(22.7%), 가족스트레스 해소 방안(22.2%), 장애영유아의 성장발달 관련 내용(15.5%)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기관 연계(협력)는 육아종합지원센터(89.7%)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 지역사회 연계 시 도움 받는 내용에서 원장은 개별화 교육프로그램(IEP) 연계방법(77.6%), 교사는 장애영유아 문제행동 대처방법(61.5%) 연계로 나타났다. 또한 심층면접(FGI) 조사에서는 가정 및 타 기관 연계(협력)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통합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 장애영유아가 손쉽게 정보를 듣고 참여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에 가정 및 타 기관 연계(협력)의 질 제고를 위해 서울형 장애통합보육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해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서울시 장애통합보육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는 특수교사 확보를 위한 방안, 교사 대 장애영유아 비율 조정, 장애아보육도우미 확대 등의 인적 환경 지원, '감각통합 교재교구'를 지원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 지원, 외부자문 활성화 방안, 대상별(교사, 부모, 영유아) 장애 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장애통합보육 운영 가이드

라인 매뉴얼 개발 및 보급 등 장애통합보육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 교사와 원장이 요구하는 내용을 기반한 교육컨텐츠 개발 및 교육 지원 방안 등 교사(원장) 전문성 지원, 서울형 장애통합보육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 등 가정 및 타 기관 연계(협력) 지원이 필요로 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V

서울시 어린이집 취약보육(장애통합보육) 내실화 방안

제 1절 서울시 장애통합보육 운영의 주요 쟁점

제 2절 서울시 장애통합보육 운영 내실화 방안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V

서울시 어린이집 취약보육(장애통합보육) 내실화 방안

제 1절 서울시 장애통합보육 운영의 주요 쟁점

서울시 장애통합보육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앞장서서와 같이 인적 환경, 물리적 환경, 운영 및 프로그램, 교사(원장) 전문성, 가족 및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협력) 등 장애영유아를 둘러싼 포괄적서비스의 지원 연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서울시의 장애영유아의 내실있는 통합보육을 위한 다음의 쟁점들 고려할 수 있다.

서울시 장애통합보육 운영의 주요 쟁점에서 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부분은 장애통합보육의 전문 인력 확보다. 특수교사의 자격 취득을 할 수 있는 대학의 수가 매우 제한적이며, 장애통합학급이 2개 반(6명) 이상이면 특수교사를 두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는 장애통합학급 2개 반 이상인 어린이집의 수가 적은 이유와도 관련이 있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장애아보육도우미(6시간)를 지원하는 정책은 보조인력 지원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통합학급 2개 반 운영에 장애보육도우미 1명을 지원하므로 장애통합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력 확보는 주요쟁점으로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교사 대 장애영유아의 비율이 일정하게 1:3인 것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장애정도에 따라 교사의 역할에는 매우 차이가 크므로 교사 대 장애영유아의 비율에 대한 부분은 인적 환경에 쟁점이 된다.

둘째,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12월 31일 기준 서울시 전체어린이집(6,226개소)의 20.5%인 1,274개소가 국공립

어린이집이다. 이러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위탁 시 취약보육을 위한 장애 통합보육 운영선택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원장의 장애 통합보육에 대한 철학 및 전문성 부족이 운영 활성화를 위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장애통합보육 운영에 대한 원장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의 제고를 통한 운영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특히 어린이집에서 장애담당교사의 개별화교육(IEP,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팀 운영을 위한 슈퍼비전 등 자문, 관리체계가 부족하며,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매뉴얼 부재 등 원장의 장애통합보육 운영에 대한 전문성은 쟁점으로 꼽을 수 있다.

셋째, 장애통합학급의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장애통합학급 일반보육교사, 특수교사 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지원 수당 등의 차이, 이들 교사간의 소통, 협력은 쟁점이 될 수 있다. 장애통합학급 교사의 위치 및 역할, 일반교사의 장애인식 개선제고 등에 대한 전문성 강화 방안 및 지원체계 개선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장애통합보육의 내실 있는 운영은 장애담당 교사의 전문성 강화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장애아지원 사업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특수교사 순회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육아종합지원센터 특수교사의 수는 평균 1명으로 지원 사업에도 어려움이 나타났다. 이는 유치원 등 유관기관 특수교사 인건비와 비교할 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문성 있는 특수교사 확보 방안도 쟁점이 되지만 장애아 담당교사의 전문성 강화지원을 위한 교육컨텐츠 개발, 전문가 자문 등의 지원체계 구축은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고려해 볼 수 있다.

다섯째, 장애아를 지원하는 가족 및 지역사회 연계는 본 연구 FGI(심층면접)조사 결과, 장애아가 있는 부모는 정보가 없어 어떻게 진단받고, 어느 곳에서 보육 받아야 하는지 몰라 어려움이 많다고 이야기 한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증가 등 장애아 지원 사업이 확장되는 현 시점에서 장애영유아 지원체계의 필요성은 쟁점사항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장애아 통합보육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서울시 3차 보육중장기(2016~2020) 비전인 「모든 아이가 행복한 보육특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장애의 유무를 떠나 모든 영유아가 동등하게 누리는 보육서비스, 안심하고 맡기는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한 장애아 통합보육의 내실 있는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적·물리적 환경 지원, 장애통합보육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 교사(원장) 전문성,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 등 내실 있는 장애통합보육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그림 V-1 Ⅱ 서울시 중장기 보육계획

서울시 중장기보육계획(제1차, 제2차, 3차)		
제1차 서울시 중장기보육계획 (2006-2010)		
비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정책 목표	공보육 기반구축	
	보육서비스 수준 확대	
정책 과제	공보육 기반구축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지원-책임-평가연계시스템 구축	
제2차 서울시 중장기 보육계획 (2011-2015)		
비전	안심하고 맡기는 보육 모든 아이가 행복한 서울	
정책 과제	보육의 공공성 확대	
	맞춤형 보육 제공	
	안심보육환경 조성	
	보육인프라 구성	
제3차 서울시 중장기 보육계획 (2016-2020)		
비전	아이가 행복한 보육특별시 서울	
정책 목표	누구나 누리는 보육 서비스	
	안심하고 맡기는 어린이집	
	지역사회가 함께 키우는 돌봄문화	
정책 과제	고품격의 보육서비스 제공	
	아동인권존중 보육환경 조성	
	보육교사가 즐겁게 일하는 보육환경 조성	
	맞춤형 돌봄지원체제 고도화	
	돌봄친화지역문화조성	

자료 : 서울시 내부자료



제 2절 서울시 장애통합보육 운영 내실화 방안

1. 인적 환경

1) 특수교사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장애통합보육에서 장애영유아를 담당하고 있는 인적 환경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실제 장애통합보육 실태 조사(원장) 결과에 따르면, 전문 인력 특히 특수교사 채용이 가장 어렵다고 62.3%가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가 2012년을 전후로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아동복지법」 등 만 3세 이상의 장애아 의무보육(교육)에 대한 사항이 강조되었으며,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2조에서는 장애아동의 개별화 교육지원을 위한 특수교사, 일반교사 등 개별화 교육지원팀을 구성하고 개별화 교육계획을 작성하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장애아동복지법」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 담당 보육교사의 배치에서 장애통합반 2개 반 이상일 경우 특수교사 1명을 두도록 한다. 특수교사는 개별화 교육계획이 가능하도록 자격의 전문성이 강화되었다. 이에 자격경로가 하나로 축소되는 과정에서 특수교사의 배출은 줄어든 것이다<표 V-1 참조>.

【표 V-1】 특수교사 자격 기준 변화

특수교사 (2012년 이전 자격기준)	특수교사 (2012년 이후 자격기준)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유치원과정만 해당)을 소지한 사람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의한 교사 자격기준 중 치료교육 과목의 특수학교 실기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3.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에서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유치원과정만 해당)을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 시행당시(12. 8. 5.) 어린이집에 배치된 특수교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과정을 2016. 3. 1. 까지 최종 이수한 사람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특수교사 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2012~2018년)

그러나 서울시는 2012년 이후 특수교사 자격 기준 강화로 인해 특수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대학교 및 대학원 수가 매우 제한적이다<표 V-2 참조>.

【 표 V-2 】 서울권 특수교사 양성 기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설립별	대학명	학과명	지역
4년제 (사립)	이화여대	특수교육과	서울특별시
	중부대	유아특수교육과	경기도 고양시
	평택대	유아특수교육과	경기도 평택시
교육대학원	이화여대	특수교육과	서울특별시
	아주대	특수교육	경기도 수원시

자료 : 교육부, 특수교육연차보고서(2017)

또한 특수교사 자격을 가진 교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관은 국공립유치원이며,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근무여건과 교사처우가 열악한 실정이어서 특수교사들이 장애통합현장에 가기보다 병원이나 복지관을 선택하고 있다(김은영 외, 2007). 이러한 상황에서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특수교사 확보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특수교사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서울시 장애통합보육 내실화를 위한 특수교사 확보와 관련하여 고려해볼 수 있는 대안들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에 2012년 특수사의 자격증 강화 당시 어린이집에 배치된 장애아 담당 교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2016년 3월 1일까지 80시간 이수한 경우, 보건복지부 인정 특수교사 자격증이 발급된 사례가 있다.

위의 사례와 같이, 현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을 갖춘 교사에게 특수교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경력, 교육과목 이수 등과 같은 내용을 고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 할 수 있다.

둘째, 장애통합보육에서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요구 결과,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원장들은 처우개선(36.6%)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V-3 참조>. 이는 어린이집 특수교사 보다 공립유치원 특수교사의 처우가 높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이에 어린이집 특수교사에게 지급하고 있는 수당의 대안보다는 급여체계의 현실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특수교사역시 자치구 관내 장애담당교사의 개별화 교육계획 순회지원을 실시하므로 이에 맞는 급여체계를 고려 할 필요가 있다.



【 표 V-3 】 기관 유형별 특수교사 급여 비교

	공립유치원 특수교사	육아종합지원센터 특수교사 (공무원 8급 or 보육교사 4호봉 선택 가능)		국공립어린이집 특수교사
기본 급여	1,958,400원 (교육공무원 9호봉 기준)	1,591,900원 (공무원 8급 1호봉 기준)	1,809,700원 (보육교사 4호봉 기준)	1,702,800원 (보육교사 1호봉 기준)
수당	급식비 : 130,000원 교직수당 : 250,000원 담임수당 : 130,000원 특수교사수당 : 70,000원 580,000원	급식비 : 130,000원 직급수당 : 105,000원 235,000원	특수교사수당 : 200,000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 220,000원 420,000원	처우개선비 : 145,000원 누리수당 : 300,000원 특수교사수당 : 200,000원 자치구수당 : 50,000원 695,000원
총 급여	2,538,400원	1,826,900원	2,122,800원	2,397,800원
추가 수당	명절수당 : 급여의 60%(연 2회) 정근수당 : 근무연수에 따라 급여의 0-50%(연 2회) 성과급 : 평가등급차등(1회)	명절수당 : 급여의 60%(연 2회) 정근수당 : 근무연수에 따라 급여의 0-50%(연 2회)	-	-

자료 : 서울시 보육사업안내(2018년), 2018년 교육공무원 봉급표, 2018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주 1) 급여 산출 근거는 해당기관 1년차를 기준함.
2) 자치구수당은 자치구마다 변동 가능함.

2) 교사 대 장애영유아 비율 조정 방안

장애통합보육의 현행 교사 대 아동비율은 1:3으로 반을 편성하도록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장애통합보육 실태 조사(교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의 55.3%가 현행 교사 대 아동비율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장애정도가 달라서 45.1%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시행령 제6조에서는 교사 대 아동비율 조정 없이 특수교사의 배치기준만 강화되고 있다. 장애영유아의 연령이나 장애정도의 고려 없이 동일한 교사 배치만 강조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더욱 어려움이 있다<표 V-4 참조>.

【 표 V-4 】 장애영유아 전담 교사 비율관련 법률 조항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시행령 제6조(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배치)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배치하는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수는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배치된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영유아 수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6.2.11.> 1. 취학하지 아니한 만 5세 이상의 장애영유아: 2016년 3월 1일부터 2. 만 4세의 장애영유아: 2017년 3월 1일부터 3. 만 3세의 장애영유아: 2018년 3월 1일부터

이와 같이, 장애통합보육 시 장애영유아의 장애 정도에 따라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이 장애영유아의 안전과도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장애통합보육 시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만 3세 이하 장애영아의 경우 1:1이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유형에 따라 현행 1:3 비율을 최대범위로 지정하되 그 안의 비율은 장애영유아의 장애유형에 따라 교사 대 아동비율을 조정한다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영유아의 경우 1:1, 1:2 보육을 통해 질 높은 장애통합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동시에 장애영유아의 안전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3) 장애아보육도우미 확대

장애통합보육에서 보조 인력은 장애통합학급 전담 교사가 일상적인 보육업무 이외에 기본생활, 실외활동, 교육활동, 식사지도 등의 업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장애영유아와 함께 생활을 하는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심층면접(FGI) 조사 결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실제 현장에서는 장애통합보육에 보조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과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에 보조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아보육도우미’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아보육도우미 사업은 현행 미취학 장애아 현원기준으로 2개 반(6명) 당 장애아보육도우미 1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1일 6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되, 근무시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추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장애통합보육 실태 조사(원장) 결과에 따르면, 보조 인력 유형에서는 장애아보육도우미 46.9%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장애통합보육 실태 조사(교사) 결과에 의하면, 보조 인력의 만족도에 대해 76.3%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서울시 ‘장애아보육도우미’ 사업은 보조인력 지원 사업으로 현장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장애통합보육 실태 조사에서 어린이집에 채용하고 있는 장애영유아 수의 경우, ‘1~3명’36%, ‘4~6명’27.2%, ‘7~9명’24% 순으로 나타나 ‘1~3명’36%는 장애통합



학급이 1개 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서울시 사업인 ‘장애아보육도우미’ 보조 인력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실제 현장에서는 ‘장애아보육도우미’ 사업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긴 하지만 실제로 취약지대인 1개 반(장애영유아 1~3명)인 곳이 더 많지만 보조 인력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 장애통합보육 내실화를 위한 장애아보육도우미 확대(안)와 관련하여 고려해볼 수 있는 대안들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애아보육도우미’ 사업에서 현행 2개 반 당 1명의 장애아보육도우미를 지원하는 것에서 장애유형에 따라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를 제안한다.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아 보육도우미의 지원을 추가로 고려하는 것은 일상생활 지원 등 장애통합보육 운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보육교사의 보육시간은 보육준비 시간, 점심시간 등을 포함하면 평균 9시간 36분 동안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보건복지부, 2015). 이를 지원하고 있는 장애아보육도우미의 역할은 장애영유아 전담 지도 외에도 기본생활지도, 교육활동지도이며,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아보육도우미 사업은 현행 1일 6시간 주 5일 근무로 진행되고 있다. 어린이집운영 시간이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총 8시간 동안 영유아와 함께 통합보육 운영되는 것을 고려할 때, 질 높은 장애통합보육서비스를 이루기 위해서 장애아보육도우미 시간을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확대(안)를 제안한다. ‘장애아보육도우미’ 시간 확대(안)가 실행된다면 장애통합학급을 운영하는 전담 교사가 장애영유아를 지원하는 시간이 많아져 내실 있는 장애통합보육을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표 V-5】 장애아보육도우미 확대(안)

장애아보육도우미 지침 근거(현행)	장애아보육도우미 지침 근거(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준(미취학 장애아 현원기준) - 2개 반 당 1명 지원 - 어린이집 당 최대 3명까지 지원 · 근로기준 - 1일 6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시설과의 근로계약서 체결내용에 의하여 최종 확정(근무시간을 연장할 경우 시설 추가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준(미취학 장애아 현원기준) - 장애유형에 따라 추가적인 인력 지원 · 근로기준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시설과의 근로계약서 체결내용에 의하여 최종 확정

자료 : 서울시 보육사업안내(2018년)

2. 물리적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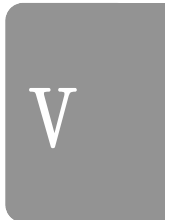
1)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재교구’ 지원 활성화

내실 있는 장애통합보육을 실천하기 위해 고려해야할 중요한 요인으로 ‘물리적 환경’이며, 장애영유아와 일반영유아가 동일한 물리적 환경에서 교육 활동의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하지만 실제 장애통합보육 실태 조사(원장)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구비된 물리적 환경은 ‘특수책상과 의자’ 16.1%, ‘신체활동 공간’ 37.3%, ‘실외 놀이터 기구’ 16.1%, ‘보조기구(휠체어, 워커 등)’ 14.4%, ‘치료 공간’ 26.3%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현재 서울시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물리적 환경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원장이 요구하는 물리적 환경은 ‘치료 공간’ 45.6%, ‘신체활동 공간’ 24.6%, ‘감각통합치료 교재교구’ 14%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사가 요구하는 물리적 환경은 ‘감각통합치료 교재교구’ 30.9%, ‘대소근육활동 교재교구’ 29%, ‘신체활동 공간’ 13.5%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주목 할만 부분은 장애영유아와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장애영유아 전담 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물리적 환경이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재교구 59.9%인 점이다. 이처럼 서울시 어린이집 장애통합보육 운영을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서울시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서 전반적인 환경의 개선이 요구되지만 그중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재교구’ 지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통합어린이집의 교재교구비의 사용이 장애통합반 운영에 필요한 교재교구비 사용 등으로 명시하는 부분의 고려할 수 있다. 이는 교사들의 경우 가장 요구도가 높은 ‘감각통합 교재교구’, ‘대소근육활동 교재교구’는 사용의 빈도가 높을 것으로 볼 때 어린이집에서 교재교구비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난감 대여를 통한 활성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양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센터 내 장남감도서관을 활용하여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재교구 대여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처럼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장남감도서관은 일반부모를 대상으로 장난감을 단기 대여하지만 이를 확대하여 기관(어린이집)에서 기관대여를 신청하면 장애 영유아를 위한 '감각통합 교재교구'를 충분히 비치하여 장애통합보육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재교구 대여사업을 하고 있는 곳도 있다.

이에, 서울시 장애통합보육 내실화를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고려해볼 수 있는 대안들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영유아를 위한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서울시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 대여 기능의 확대를 고려 할 수 있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감각통합 교재교구'를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 도서관에서 기관(어린이집)으로 대여를 실시한다면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양한 장애유형을 가진 장애영유아들이 감각통합 교재교구를 사용할 수 있어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현재 서울시에서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재교구비가 1인당 21,000원(앞의 <표 III-1> 참조)이 책정되어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교재교구비가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재교구 구입으로 잘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 이에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존 교재교구비의 지출 범위를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재교구비 지출 범위가 명확해진다면 앞선 실태조사에서 교사가 원하는 물리적 환경 지원으로 '감각통합 교재교구' 활용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장애통합보육 운영 및 프로그램

1) 외부자문 활성화 방안

서울시 장애통합보육 어린이집의 외부자문에 대해 장애통합보육 실태 조사(원장) 결과에 따르면, 외부자문은 지역 내 '육아종합지원센터' 88.1%로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부자문에 대한 만족도는 4점 만점에 '평균 3.20'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실제 현장에서는 외부자문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장애통합보육의 내실화를 위해 외부자문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서울시 보육사업안내에서는 장애아지원 사업으로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특수교사 운영 인력 1명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교사 1명이 서울시 해당 자치구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영유아 발달 지원, 교사 지원, 가족 지원)을 모두 수행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특수교사는 장애통합어린이집 개별화교육계획, 영유아발달검사 등 자치구 관내 순회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특수교사 채용 시 경력교사 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나 유관기관과 비교하여 특수교사의 수, 낮은 급여로 채용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에 서울시 보육사업안내에서는 '보육업무경력 3년 미만이라도 채용할 수 있음'이라 명시되어있으며<표 V-6 참조>,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의 특수교사 인건비에 대해서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25개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마다 서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시 보육사업안내에 명시된 인건비 지원기준으로 보면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근무하는 특수교사의 인건비보다 낮은 것이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특수교사 수급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장애통합보육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외부자문은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부분 실시하기 때문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담당자(특수교사)는 전문성 및 그에 맞는 급여 체계 확보가 필요하다. 이에, 서울시 장애통합보육의 외부자문 활성화 방안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의 특수교사 확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영유아 발달 지원, 교사 지원, 가족 지원)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보육사업안내에 명시되어 있는 '특수교사 운영인력 1명'으로 자치구 특수교사 순회지원 서비스와 영유아발달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다. 25개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특수교사는 평균 1명이며, 특수교사 1명 당 평균 장애영유아 약 58명으로 많은 장애영유아를 1명이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앞의 <표 III-5> 참조). 그러므로 자치구 장애영유아 수·장애아통합어린이집 수를 고려한 '특수교사 추가 인력 편성'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다<표 V-6 참조>.

【표 V-6】 서울시 장애지원 프로그램 운영 특수교사 확대(안)

특수교사 지침 근거(현행)	특수교사 지침 근거(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 운영(운영 인력 및 관리) - 운영 인력 : 1명(특수교사) <p>※ 특수교사의 자격기준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적용. 보육업무경력 3년 미만이라도 채용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 운영(운영 인력 및 관리) - 운영 인력 : 자치구 장애영유아 수 고려 1~3명(특수교사) <p>※ 특수교사의 자격기준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적용. 보육업무경력 3년 이상 채용할 수 있음</p>

자료 : 서울시 보육사업안내(2018년)

둘째, 서울시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특수교사 인건비·처우개선비는 어린이집 특수교사, 공립유치원 특수교사 보다 낮은 임금체계이므로 자치구 장애통합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특수교사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한 임금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이는 경험이 높은 특수교사 채용으로 어린이집 순회지원 등 질 높은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대상별(교사, 부모, 영유아) 장애 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장애 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2항17),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6

17)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조2항¹⁸⁾에 근거하여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모든 교직원, 영유아가 1년에 1회 이상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장애 인식개선교육은 장애에 대해 인식하고 정서적 이해 단계를 거쳐 장애인식태도가 형성되어진 후 수용하는 단계로 발전하게 된다. 긍정적으로 형성된 장애인식은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장애인과 서로 다른 차이점을 알고 인정하며 동등한 입장에서 배려와 도움을 주는 행동을 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조귀희, 2016). 이와 관련하여 영유아 시기는 주변 환경 속에서 상호영향을 받으면서 발달하기 때문에 영유아와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부모의 장애 인식 정도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받아들이는 태도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이에 부모에게 장애 인식개선교육은 꼭 필요하다.

이에 따라 서울시 장애통합보육 장애 인식개선교육에 대해 장애통합보육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한다(82.3%, 평균 1.8회, 만족도 3.0)',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한다(45.2%, 평균 1.6회, 만족도 2.8)', 영유아를 대상으로 '교육한다(85.9%, 평균 3.9회, 만족도 3.1)'로 나타났다. 이처럼 실제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장애 인식개선교육은 부모의 참여가 미흡하며, 장애 인식개선교육프로그램 자료가 부재하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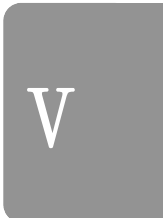
따라서 장애통합보육의 장애 인식개선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영유아에게 영향력이 가장 큰 부모, 교사에 대한 장애 인식개선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애 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표 V-7 참조>.

첫째,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 인식개선교육에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6조3항에 제시하고 있는 장애의 정의,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한 교육방향으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둘째,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 인식개선교육에는 장애통합보육에 대한 이해, 자신의 장애인식 정도, 사례로 보는 장애 인식개선교육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18) 제1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하며, 관련된 사례발굴을 통해 부모가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최대한 글을 줄이고 그림(만화) 워크북 형식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또한 장애 인식개선교육에서 부모의 참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부모가 다 모이는 학기 초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장애인식개선교육이 개발된 워크북을 기반 한 교육이 진행되어진다면 교육의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 인식개선교육에는 장애영유아의 특성 및 긍정적인 이미지에 대한 내용, 장애영유아는 일반영유아와 다른 존재가 아닌 비슷한 점이 많은 평등권이 담긴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영유아의 눈높이에 맞는 그림책을 선정하여 교육이 진행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또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할 때 사용할 그림책 자료는 Blaska(2003)가 제시한 그림책 선정기준¹⁹⁾에 따라 선택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진다면 일반영유아들이 장애영유아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어 교육의 효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 표 V-7 】 대상별 장애 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안)

구분	교사	부모	영유아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의 정의 ·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통합보육에 대한 이해 · 자신의 장애인식 정도 · 사례로 보는 장애 인식개선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영유아의 특성 및 긍정적인 이미지에 대한 내용 · 평등권이 담긴 내용
교육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집단 PPT 활용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집단 PPT 활용 교육 · 그림(만화) 워크북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림책을 활용한 교육 · 반 편견 프로그램

19) Blaska(2003), 장애인식개선교육 그림책 선정 10가지 선정 기준

1. 동정이 아닌 감정이입을 증진시켜야 한다.
2. 조롱이 아닌 수용을 묘사하여야 한다.
3. 실패보다는 성공을, 혹은 실패 후의 성공을 강조해야 한다.
4. 장애유아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증진시킨다.
5. 장애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를 얻도록 유아를 지원한다.
6. 장애인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책이어야 한다.
7. '그들 중의 하나'가 아닌 '우리 중의 하나'라는 태도를 증진시킨다.
8. 장애보다 사람을 먼저 강조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9. 장애나 장애인을 슈퍼맨이나 부족한 사람이 아닌 현실적인 모습을 묘사한다.
10. 장애인의 특성을 현실적인 방법으로 묘사한다. 모든 장애유아가 똑같이 그려져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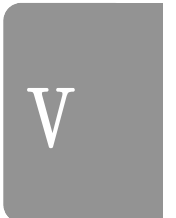
3) 장애통합보육 운영 가이드라인 매뉴얼 개발 및 보급

서울시의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2012년 266개소에서 2017년 12월 기준으로 341개소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장애통합보육 실시시기에 대한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원장(설립자, 위탁체)의 철학(43.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원장의 경력별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는 원장 1-5년 경력인 경우에 ‘위탁 시 취약보육(장애, 다문화, 시간연장)을 선택해야 해서(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최근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증가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시 취약보육을 선택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해석가능하다.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내실 있는 장애통합보육을 위해서는 원장님의 보육철학이 중요하며, 원장들의 장애통합보육에 대한 전문성이 꼭 필요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김은영 외, 2007; 이정립 외, 2012). 이처럼 실제 현장에서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들을 위한 교육이 꼭 필요하며, 운영적인 면에서 도움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통합보육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장애통합보육 운영 가이드라인 매뉴얼 개발 및 보급’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표 V-8 참조>. 장애통합보육 운영 가이드라인 매뉴얼 개발 시 고려해야할 점은 장애통합보육 운영을 시작하는 원장의 장애통합보육의 이해,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정의, 장애아통합어린이집 법적기준, 장애통합보육 운영 계획, 장애영유아 입소부터 졸업(초등전이²⁰)까지, 교사간의 협력, 가족과의 협력,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 평가, 자치구별 영유아발달 검사 및 진단기관, 사례로 알아보는 궁금한 사항 등의 내용을 넣어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처음 운영하는 원장이 가이드라인 매뉴얼을 보면서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 및 보급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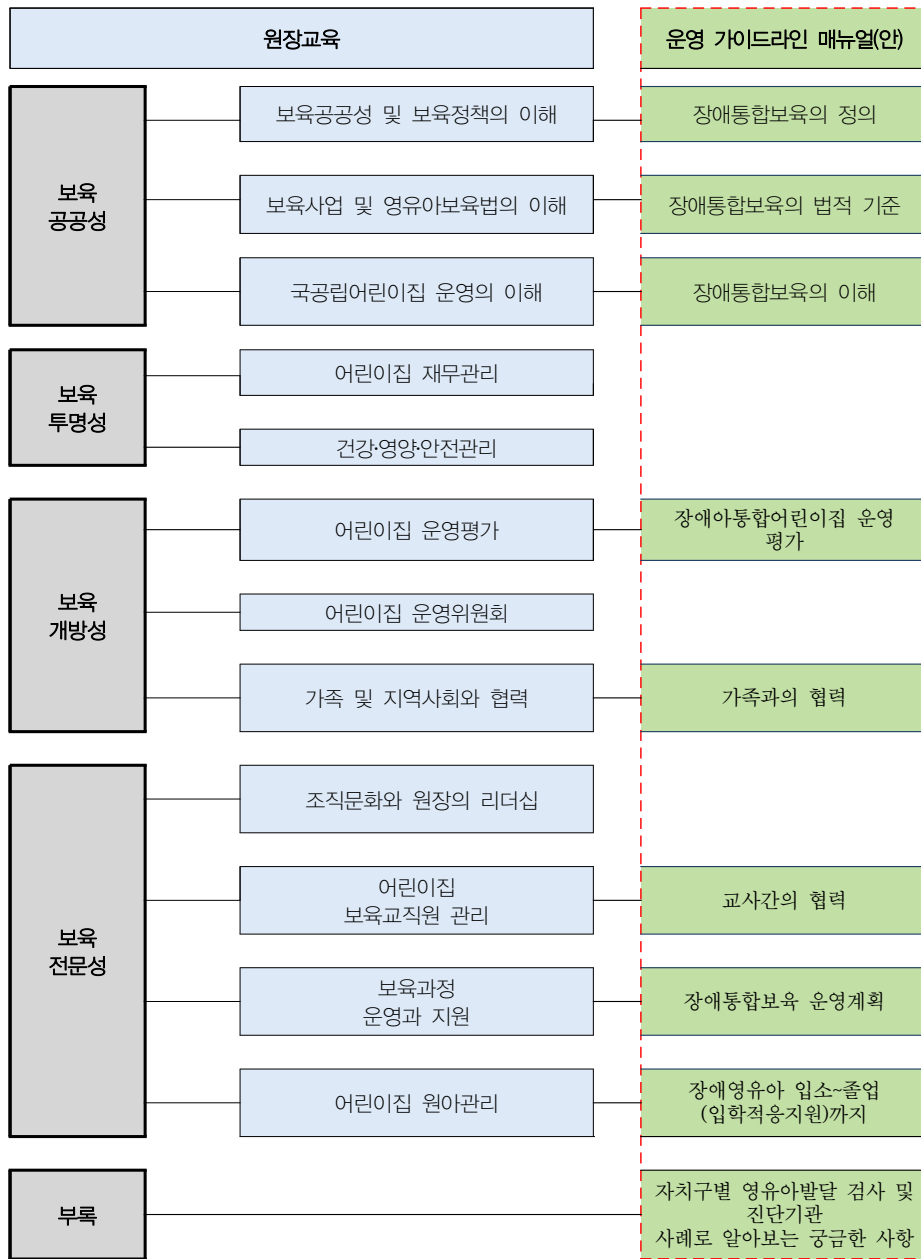
장애통합보육 운영 매뉴얼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실제’ 교육 개발과 같이 보육공공성, 개방성, 전문성으로 구분하였으며, 보육투명성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실제에서 다루고 있어 제외하였으며, 원장, 부모 모두 심층면접 조사에서 요구하고 있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기관의 정보, 궁금한 사항을 담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여 부록으로 개발에 넣는 것을 제안한다. 이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4차에 걸쳐 진행한 결과를 토대로

20) 전문가 자문회의(2018.08.20)에서 ‘초등전이’라고 사용되는 용어는 ‘입학적응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의미전달에 명확하여 용어를 적용으로 제시함.



제안하였다.

【 표 V-8 】 장애통합보육 운영 가이드라인 매뉴얼 개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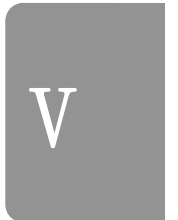
4. 교사(원장) 전문성

1) 교사(원장) 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서울시 취약보육 영역에서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수와 장애영유아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앞의 <표 III-6, III-7> 참조). 앞서 II 장 장애통합보육의 이론적 고찰에서 밝힌 것과 같이 장애통합보육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내면적으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장애통합보육에 실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교사(원장)가 자신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장애통합보육 외부교육(연수)에 대해 장애통합보육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장의 외부교육(연수)은 지역 내 '육아종합지원센터(72.8%, 평균 3회)',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48.8%, 평균 2.5회)', '한국보육진흥원(28.8%, 평균 1.5회)'에서 교육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사의 외부교육(연수)은 지역 내 '육아종합지원센터(78.4%, 평균 3.7회)',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32.5%, 평균 1.7회)', '한국보육진흥원(31.8%, 평균 1.4회)'에서 교육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교사 및 원장이 장애통합보육에 대한 교육(연수)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유관 기관(한국보육진흥원,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에서 최근 1년간의 교육과정 살펴본 결과<표 V-9>,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특별직무교육,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에서는 일반교육 외에 1박2일의 워크숍 형태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센터마다 특수교사 확보여부, 사업예산 범위 등에 따라 교육 횟수와 일정, 내용 등이 변동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표 V-9 】 장애통합보육 교사(원장)교육 비교

한국보육진흥원(특별직무교육)	양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예)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동 복지와 장애인식개선 · 장애아 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 · 아동권리와 장애아 학대예방 · 장애아급식 및 영양관리 · 장애아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 장애아 보건위생관리 · 장애아의 이해 I, II · 일반보육과정에 기반한 장애영유아 교수방법 I, II · 운동발달 교수방법 · 의사소통 발달 교수방법 · 사회성 발달 교수방법 · 인지발달 교수방법 · 자조기술 발달 교수방법 · 개별화교육프로그램 작성, 실행, 평가 · 긍정적 행동 지원 · 장애 영유아 가족지원 · 지역사회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통합 교사들 간 협력방안 · 긍정적 행동지원 · 장애통합교사 감정조절능력 강화 · 장애통합보육의 운영목적 및 교사의 역할 · 장애인해 및 인권교육 · 문제행동, 강점으로 극복 · 장애인 인권교육 및 체험 · 개별화교육프로그램 작성 · 장애인식개선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화교육프로그램(IEP) · 짝궁연수(특수교사와 보육교사 교육) · 신입원장교육(보육사업안내 운영) · 개별화교육프로그램(IEP) 실행과 평가 · 원장워크숍(장애통합보육 관련)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2018년)
 양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사이트(<http://www.yhccic.or.kr>)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내부자료

한편, 한국보육진흥원 특별직무교육에서는 가장 다양한 주제에 대해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공통적으로 개별화교육프로그램(IEP) 교육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외부교육(연수) 요구에 대해 장애통합보육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원장은 ‘장애영유아 가족연계 및 지원(32.2%)’, ‘긍정적 행동 지원(24%)’, ‘장애영유아교사의 역할과 협력(19.3%)’의 교육 내용을 요구하고 있었고, 교사는 ‘긍정적 행동 지원(23.5%)’, ‘장애영유아 초등학교 전이 프로그램(16.8%)’, ‘장애영유아 가족연계 및 지원(16.4%)’의 교육 내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실제 현장에서 생활하면서 꼭 필요로 하는 교육내용들이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편성되어 있는 장애통합보육 관련 교육이 많지만 실제 수요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반영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원장)의 전문성에 대한 정책 요구에서 ‘원장, 일반보육교사를 포함한 교사교육 확대’에 대한 요구가 원장 10.7%, 교사 15.4%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이유에 대해 최근 어린이집의 일반학급에서 ‘경계선상의 장애영유아가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이 원장 20.2%, 교사 48.2%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실제

현장에서는 경계선상의 장애영유아의 증가로 인해 장애통합학급을 운영하는 일반 보육교사, 일반 어린이집의 원장 및 일반보육교사도 장애영유아에 대한 이해 및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상의 장애영유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보육교사, 원장을 대상으로 한 장애통합보육 관련 교육과정을 살펴본 결과<표 V-10, 표 V-11>, 일반보육교사는 일반직무교육(기본 과정, 심화 과정)과 승급교육(2급 승급교육, 1급 승급교육)에서 장애통합보육을 위한 교육시간이 배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과 시간은 제한적인 것을 볼 수 있었다. 원장의 경우, 일반직무교육(기본 과정, 심화 과정)과 원장 사전직무교육에서 장애통합보육을 위한 교육이 배정되어 있으며, 장애통합보육의 운영 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시간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실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하면 일반보육교사, 원장들에게 장애통합보육과 관련된 교육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 표 V-10 】 일반보육교사 장애통합보육 관련 교육 비교

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		보육교사 승급교육	
기본 과정	심화 과정	2급 승급교육	1급 승급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통합보육 운영 실제 - 개별화 프로그램 이해,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통합보육 운영 실제 - 개별화 프로그램 적용 및 부모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영유아의 이해 - 발달기 영유아의 다양성 이해 - 영유아 선별, 장애진단, 중재의 중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영유아의 이해 및 지원 - 특수 영유아 특성별 지도 - 기관 내 장애영유아 지원 관리방안
2시간	2시간	4시간	4시간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2018년)

【 표 V-11 】 원장 장애통합보육 관련 교육 비교

원장 일반직무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기본 과정	심화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통합보육 운영 실제 - 기관 내 장애통합보육의 운영 이해 - 개별화교육프로그램의 실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통합보육을 위한 운영 관리 - 기관 내 특수교사 및 담임교사의 협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통합보육의 운영관리 - 장애통합보육 프로그램 및 인력 관리
2시간	2시간	4시간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2018년)



이에, 서울시 어린이집 취약보육(장애통합보육)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교사(원장) 교육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고려해볼 수 있는 방안들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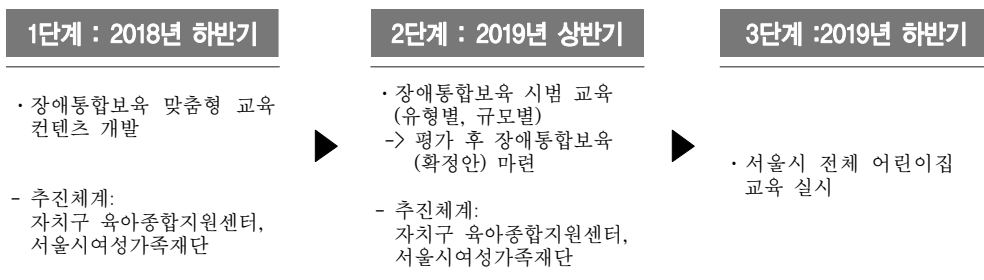
첫째, 현재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원장, 장애전담교사를 위한 다양한 관련 교육에서 원장이 요구한 '장애영유아 가족연계 및 지원', '긍정적 행동 지원', '장애영유아교사의 역할과 협력'과 교사가 요구한 '긍정적 행동 지원', '장애영유아 초등학교 전이 프로그램', '장애영유아 가족연계 및 지원'내용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한다. 실제 현장에서 요구 하는 교육내용으로 개편되어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교육 참여 의지와 학습 집중도가 높아져 교사(원장) 전문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서울시 일반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의 장애통합보육과 관련된 교육의 시간과 범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경계선상의 장애영유아 증가로 인해 일반어린이집에서 장애통합보육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일반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가 장애통합보육에 대한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를 위한 맞춤형 교육컨텐츠를 개발하여 교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교사(원장) 교육 추진과정(안) 정책 제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V-12>와 같다.

【 표 V-12 】 교사(원장) 교육 추진과정(안)



5. 가정 및 타 기관 연계(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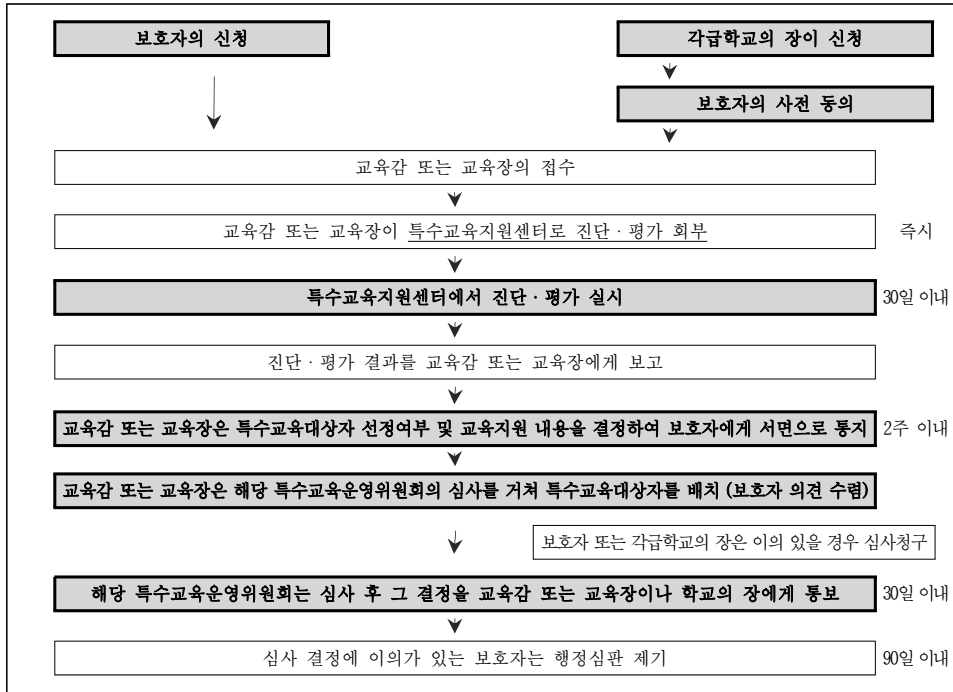
1) 서울형 장애통합보육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서울시의 장애통합보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려면 장애통합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 장애영유아가 손쉽게 정보를 듣고 참여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장애통합보육에 대한 전달체계가 교육부, 보건복지부 이원화 체계로 나누어져 있다. 유치원은 각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의해 관리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는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장애통합보육의 양적증가와 함께 질적인 내실화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는 시점에서 장애영유아의 질적인 보육을 위한 확고한 지원체계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유치원의 경우, 2007년에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이 되어있으며, <표 V-13>과 같이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이 신청하여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지원하는 체계의 관리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 표 V-13 】 서울시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체계



자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규칙 [별지 1호 서식]

어린이집의 경우, 서울시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서울시 보육사업안내 p94)은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교직원을 지원함으로써 통합보육의 전문성을 강화, 장애영유아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부모로서의 역할정립과 역량 강화, 장애영유아 발달에 조기 개입함으로써 잠재력을 개발하고 건강한 발달을 촉진'을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림 V-1>과 같은 지원체계로 영유아 발달 지원, 가족 지원, 교사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 특수교사 1명으로 장애영유아 선별 및 모니터링, 가족지원, 장애담당 교사 순회 지원의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서울시 장애통합보육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선별 및 모니터링 담당, 가족지원 담당, 순회지원 담당으로 세분화하여 인력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림 V-2】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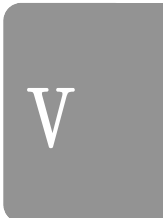


자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규칙 [별지 1호 서식]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비교해본 결과,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장애 영유아에 대한 조기발견, 진단·평가, 배치, 관리가 체계적으로 명시되어 지원하고 있는 반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조기발견, 진단·평가, 관리의 기능은 하고 있지만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상황에 따라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실제 장애통합보육 지원체계가 장애영유아 및 가족이 one-stop으로 진단·평가·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통합보육 전달체계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행정 간의 상호이해가 원활하지 못하고, 행정체계의 이원화로 정책과 실행이 서로 다른 행정체계 속에서 진행되다 보니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이소림, 2011). 이와 같이, 장애통합보육의 지원체계를 구성할 때에 특수교육지원센터와의 연계(협력)에 대한 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만 3세 이상 장애통합보육이 의무화되어지면서 초등학교 입학에 어린이집 개별화교육프로그램(IEP)을 실시한 서류가 필요하지만 이를 어린이집에서는 정보가 없어 서류를 놓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만의 장애통합보육서비스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서울형 장애통합보육서비스 지원체계 모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그림 V-2 참조>.

첫째, 서울시의 내실 있는 장애통합보육을 위해서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애통합보육지원팀을 구성하여 체계적 지원을 실시하는 방안이다. 이는 현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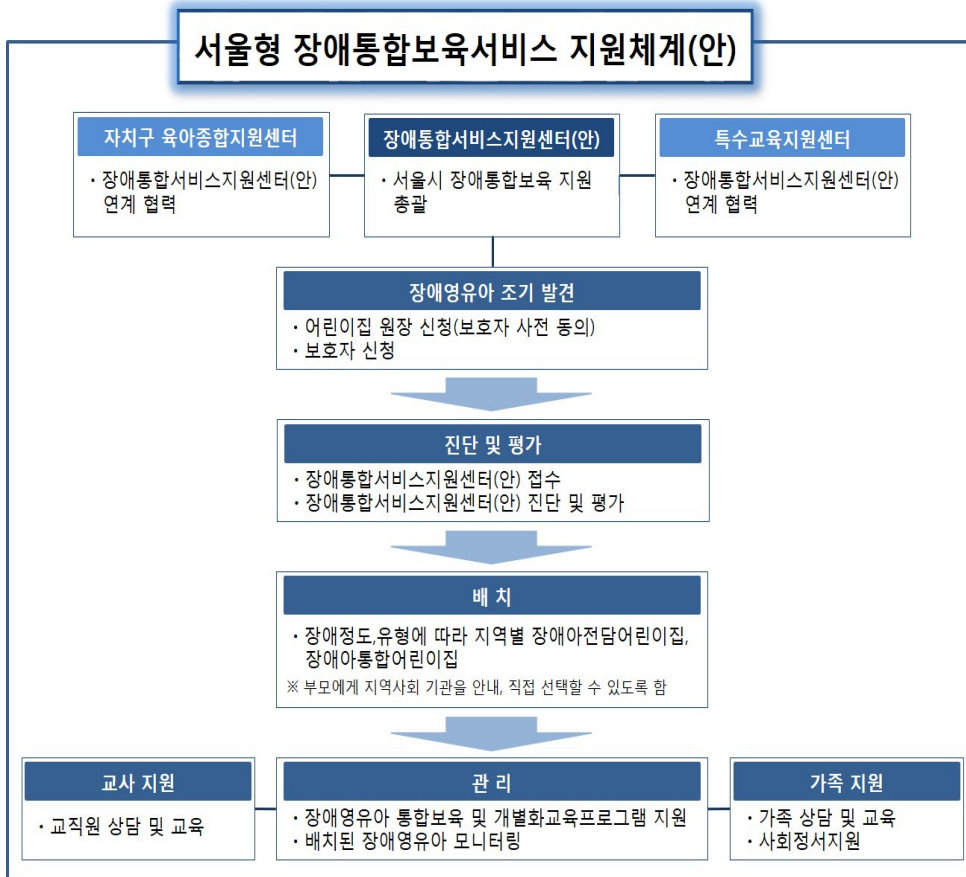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으로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처럼 조기 발견 - 진단 및 평가 - 배치 - 관리의 기능까지 전담할 수 있는 인력과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존 인력에서 장애통합보육지원팀으로 확대하여 체계적 지원을 실시한다면 장애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이 25개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의 장애통합보육지원을 조정(Control) 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한 후 장애영유아 조기 발견 - 진단 및 평가 - 배치 - 관리의 기능을 실행하는 기능을 두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서울시 장애통합보육 조정(Control) 기구²¹⁾가 생길 때에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특수교사 및 치료사의 인력풀이 구성되어야 하며,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연계 협력이 잘 이루어져 장애영유아를 가진 부모가 신청했을 때, one-stop 지원 체계에 의해 진단 및 평가 - 배치 - 관리의 영역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루어진다면 서울시만의 성공적인 ‘서울형 장애통합보육서비스 지원체계 모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21)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현재 장애아 지원 사업 담당이 없으며, 특수교사 교육만 실시되고 있어 기존의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확대 or 새로운 조정기구(안) 실시 방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

Ⅰ 그림 V-3 Ⅰ 서울형 장애통합보육서비스 one-stop 지원체계 모형(안)



참고문헌

- 권미경, 최효미, 최지은, 김건희 (2015).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Ⅰ). 육아정책연구소
- 김경은, 이대균 (2017). 장애통합보육을 경험한 교사들이 느끼는 어려움과 보람. 열린유아교육연구, 22(1), 549-575.
- 김경희, 홍기영 (2009). 장애아 통합 보육교사의 보육신념과 보육효능감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아동보육연구, 5(1), 5-24.
- 김기홍 (2012). 독일의 통합교육 현황과 운영사례를 통한 시사점. 특수아동교육연구, 14(1), 221-255.
- 김송이, 백선희, 백은주 (2015). 서울시 보육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김순임 (2012). 통합보육에 대한 비장애아동 학부모의 태도 연구. 서울기독교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김은영, 이소현, 유은영, 송신영 (2007).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내실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김양화, 김남순 (2014). 미국과 한국의 IEP 변화과정 고찰 및 지적장애학생 IEP 운영의 발전 방안. 특수교육학연구, 48(4), 55-79.
- 김진호, 차재경 (2017). 장애 영유아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 및 연구방법 고찰. 특수교육, 16(4), 187-211.
- 박경란, 박미정 (2015). 한국과 일본의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지역 실천 사례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6(3), 109-130.
- 박승희 (2003). 한국 장애학생 통합교육.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의 관계 재정립. 서울: 교육과학사.
- 박은혜, 이소현 (2011). 특수아동교육. 서울: 학지사.
- 박혜준 (2010). 통합교육의 의미 다시 생각하기: 모든 이들을 위한 통합교육과 보편적 학습설계의 원리를 중심으로. 통합교육연구, 5(2), 103-128.
- 박희영, 김자경, 서주영 (2016). 장애유아 통합교육기관 유아특수교사의 개별화교육지원팀 참여 경험에 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3(3), 323-346.
- 변순옥 (2014). 통합보육이 장애아동 발달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박사논문.
- 보건복지부 (2014). 장애아 보육프로그램, 제1권.
_____ (2015).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고서
_____ (2017). 2012-2017년 보육통계

- _____ (2017).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 - 2022) 보고서
- _____ (2018). 2018년 보육사업안내
- 서울특별시 (2018). 『제3차 서울시 저출산 중장기 계획('16~' 20)』 2018년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
- _____ (2018). 2018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 신미희, 최세민 (2006). 장애 영유아 통합보육에 대한 어린이집 교사의 태도와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유아특수교육연구, 6(1), 69-84.
- 안의정, 원종례, 김승현 (2017). 일과에 삽입된 관계증진 프로그램이 통합된 장애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 및 또래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 유아특수교육연구, 17(4), 277-297.
- 오선영, 강병재 (2002). 유아교사의 교육신념에 따른 역할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역할 수행 간의 차이. 열린유아교육연구, 7(2), 155-184.
- 오원석 (2008).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에 대한 교사와 비장애아동의 태도 변인 간 관계 분석.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오유정, 강경숙, 조운경, 박재국, 최병갑 (2006). 일반학교배치 특수교육대상 학생 실태조사 연구. 안산: 국립특수교육원.
- 위키백과 (2016). 미국의 장애인 교육법
- 이길동 (2010). 장애유아 통합교육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 독일 아이텐스하임 유치원 현장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15(4), 169-189.
- 이명환, 박수연 (2010). 독일의 육아정책. 육아정책연구소
- 이소현 (2000). 특수교육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가족 참여를 위한 지원 및 중재 방안 고찰. 언어청각장애연구, 5(1), 1-18.
- _____ (2007). 유치원 통합 교육을 통한 「개별화 교육과정」의 개발 및 실행 방안 고찰. 유아특수교육연구, 7(2), 111-135.
- 이정림, 김은영, 엄지원, 강경숙 (2012). 장애영유아 통합보육·교육 현황과 선진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원, 이윤진, 김희수 (2017). 2018-2022 보육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이지연, 한수진 (2010). 정서행동장애 학생 어머니의 성공적인 통합교육 인식에 대한 개념도. 인간이해, 31(2), 231-250.
- 이혜민, 강영심, 정혜윤 (2016). 통합교육 경험이 있는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장애유아 통합교육 효능감 수준과 영향요인.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5(1), 371-389.
- 전한나, 조운경 (2010).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장애유아 통합에 대한 신념과 실제 및 욕구 분석.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4(1), 5-28.
- 정길정 (2002). 장애유아 통합보육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정혜진, 안영주 (2016). 경기도 어린이집 장애 영유아 통합보육 개선방안.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조재규 (2014). 장애영유아의 통합보육 현황과 보육교사의 통합보육에 대한 인식. 특수교육

- 교과교육연구, 7(3), 71-93.
- 최미진, 이미숙, 한민경 (2017). 일반유아교사와 유아특수교사의 협력교수에 대한 경험과 의미.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60(1), 51-69.
- 홍정숙 (2012). 특별지원교육을 통해 본 일본 통합교육과 한국에의 시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3(1), 305-324.
- Bruininks, R. H. (1987). Adaptive Behavior and Mental Retardatio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21(1), 69-88.
- Gabke, R. A., Laycock, V. K., Maroney, S. A., & Smith, C. R. (1991). Preparing to integrate students with behavioral disorders. Reston, VA: The Council for Exceptional Children.
- Odom, S. L. (2000). Preschool inclusion: What we know and where we go from here.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20(1), 20-27.
- Sailor, W. (1991). Special education in the restructured school. *Remedial and Special Education*, 12, 8-22.
- Turnbull, A. P., & Turnbull, H. R. (1990). Families, professionals, and exceptionality: A special partnership. Merrill Publishing Company.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2017).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U.S Department of Education Policy Statement on Inclusion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Early Childhood Programs.

<홈페이지 주소>

- 독일 -

https://www.kmk.org/fileadmin/Dateien/pdf/Eurydice/Bildungswesen-engl-pdfs/dossier_en_ebook.pdf

- 미국 -

<http://www.betterstart.net.au/can-i-get-better-start/> (Better Start, 2018)

<https://cainclusion.org/camap/home/about-us/> (California Map to Inclusion & Belonging, 2018)

<https://www.draccess.org/> (Desired Results Access Project, 2018)

<https://sites.ed.gov/idea/about-idea/#IDEA-History>

<https://sites.ed.gov/idea/about-idea/> 및 [https://sites.ed.gov/idea/discretionary-grants/\(IDEA, 2018](https://sites.ed.gov/idea/discretionary-grants/(IDEA, 2018)

http://porthuronsd.ss16.sharpschool.com/about_us/special_education___early_childhood_services
(Port Huron Area School District, 2018)

<https://www.acf.hhs.gov/ecl/inclusive-high-quality-early-childhood-programs> (Office of Early Childhood Development, 2018)

<https://www.wested.org/about-us/> (Wested, 2018)

- 일본 -

<http://www.mext.go.jp/en/policy/education/elsec/title02/detail02/1373858.htm> (일본 문부과학성, 2017)

<http://www.mext.go.jp/en/policy/education/overview/index.htm> (일본 문부과학성, 2018)

<http://www.mext.go.jp/en/policy/education/lawandplan/title01/detail01/1373798.htm>

- 호주 -

https://docs.education.gov.au/system/files/doc/other/dse-fact-sheet-1-dda_0.pdf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2015)

https://docs.education.gov.au/system/files/doc/other/dse-fact-sheet-2-dse_0.pdf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2015)

<https://www.dss.gov.au/our-responsibilities/disability-and-carers/program-services/for-people-with-disability/overview-of-early-intervention-services-and-supports> (Department of Social Service, 2018)

<http://www.essexheightsps.vic.edu.au/page/71/Program-for-Students-with-Disabilities> (Essex Height Primary School, 2018)

Abstract

Enhancing the Management of Inclusive Child Care Centers in Seoul: Integration of Children with Disability

Park, Eun Mi

Ji, Sung Hwa

Research Fellow, Family Policy Research Depart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management of inclusive child care centers in Seoul.

On this purpose, we analyzed the preliminary studies and current policies, and analyzed the conditions and the needs of inclusive child care centers in Seoul. 125 directors and 283 teachers working in inclusive child care centers were surveyed with questionnaires, and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3 teachers, 3 directors, 3 administrators working in inclusive child care centers and 3 parents who have children with disability.

The results showed that the directors had the most difficulty in ‘recruiting special education teachers’(26.7%), and what they needed the most were ‘the space for treatment in the center’(45.6%) and ‘in-service training on working with the families with special needs’(32.2%). The teachers faced the most difficulty in ‘guiding disabled children the basic life skills’(19.2%), and what they wanted the most were ‘more multisensory teaching materials in the classroom’(30.9%) and ‘in-service training on the positive behavior support’(23.5%).

In conclusion, we suggested governmental supports on recruiting more

full-time/part-time special education teachers, adjusting the teacher-disabled children ratio, expanding the provision of inclusive education program and teaching materials, connecting with the professionals in the communities, developing inclusive education programs for teachers, parents, and children, providing in-service training for teachers in inclusive child care centers, and developing manuals for inclusive child care center management in Seoul.

Key word : inclusive child care, inclusive child care centers, children with disability, special education teacher

부록

부록 1. 심층면접 질문지

부록 2. 서울시 어린이집 취약보육(장애통합보육) 실태 설문지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1 심층면접 질문지

영역	질문																		
인적사항	1. 응답자 개인특성																		
	<table border="1"> <tr> <td>성명</td> <td></td> <td>연령</td> <td>만 ()세</td> </tr> <tr> <td>어린이집</td> <td></td> <td>자치구</td> <td></td> </tr> <tr> <td rowspan="2">직위</td> <td rowspan="2"></td> <td rowspan="2">경력</td> <td>현어린이집 ()년 ()개월</td> </tr> <tr> <td>장애통합보육경력 ()년 ()개월</td> </tr> <tr> <td rowspan="2">학력</td> <td rowspan="2"></td> <td>전화번호</td> <td>☎</td> </tr> <tr> <td>/이메일</td> <td>E-mai</td> </tr> </table>	성명		연령	만 ()세	어린이집		자치구		직위		경력	현어린이집 ()년 ()개월	장애통합보육경력 ()년 ()개월	학력		전화번호	☎	/이메일
성명		연령	만 ()세																
어린이집		자치구																	
직위		경력	현어린이집 ()년 ()개월																
			장애통합보육경력 ()년 ()개월																
학력		전화번호	☎																
		/이메일	E-mai																
장애통합보육 운영의 어려운 점	2. 장애통합보육 운영에 대한 원장님의 철학, 지식 등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장애통합보육 운영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장애담당영유아교사 및 특수교사 채용의 어려움 -부모와의 어려움 -학급운영: 교사:(장애)아동비율, 보조인력 활용 등의 어려움 4.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지원은 무엇입니까? 5. 장애영유아 통합보육 운영에서 가장 시급한 지원으로 무엇입니까?																		
장애통합보육 학급 운영	6. 장애통합보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한 물리적 환경은 무엇입니까? 7. 장애영유아 통합보육 학급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며, 해결방법으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8. 장애통합보육 프로그램 운영, 개별화 교육 운영의 현황,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9. 장애통합보육을 위한 교사 간 협력은 잘 이루어지십니까? 잘 이루어진다면 어떤 점/ 협력의 어려움이 있다면 가장 시급한 지원은 무엇입니까?																		
가정 및 지역사회 연계	10. 가정과의 연계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연계가 잘 이루어지기 위한 방안으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1. 기관연계는 어느 기관과 이루어지십니까? 연계정도는 어떠하십니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 연계, 기관 등은 무엇입니까?																		
장애통합보육 교육컨텐츠 개발방향	12. 장애통합보육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교육지원은 무엇입니까? 13. 장애통합보육을 위한 교육컨텐츠 개발 및 지원 대상은 누구이며, 어떤 교육내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타의견	11. 기타 교육컨텐츠 개발 및 교육 관련 의견																		

서울시 어린이집 취약보육(장애통합보육) 실태 조사 (원장용)

ID					
----	--	--	--	--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서울시 어린이집 취약보육(장애통합보육) 내실화 방안」 연구를 수행중입니다. 본 조사는 서울시 취약보육(장애통합보육)의 실태 조사 후 정책 방안 마련을 모색해보고자 실시합니다. 또한 본 조사는 장애영유아를 담당하고 계시는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익명으로 이용되며, 통계법 제 33조에 의해 개인의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으니 솔직하고 성실한 응답 부탁드립니다.

2018. 5. 4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조사관련문의 : 가족정책실 보육팀 지성화 과장 (02-810-5187)

※ 질문을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V표 하거나, 내용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배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성별	<input type="checkbox"/> 1) 남	<input type="checkbox"/> 2) 여	연령	만 _____ 세	
근무 소재지	① 강남구	② 강동구	③ 강북구	④ 강서구	⑤ 관악구
	⑥ 광진구	⑦ 구로구	⑧ 금천구	⑨ 노원구	⑩ 도봉구
	⑪ 동대문구	⑫ 동작구	⑬ 마포구	⑭ 서대문구	⑮ 서초구
	⑯ 성동구	⑰ 성북구	⑱ 송파구	⑲ 양천구	⑳ 영등포구
	㉑ 용산구	㉒ 은평구	㉓ 종로구	㉔ 중구	㉕ 중랑구
현재 근무지의 어린이집 유형	<input type="checkbox"/> 1) 국공립 <input type="checkbox"/> 2) 국공립 전환		<input type="checkbox"/> 3) 법인		<input type="checkbox"/> 4) 직장
	<input type="checkbox"/> 5) 민간		<input type="checkbox"/> 6) 가정		<input type="checkbox"/> 7) 기타 ()
최종학력	<input type="checkbox"/> 1) 고등학교 졸업		<input type="checkbox"/> 2) 대학(3년제 이하)졸업		<input type="checkbox"/> 3) 대학교(4년제 이상)졸업
	<input type="checkbox"/> 4) 대학원(석사) 이상		<input type="checkbox"/> 5) 기타()		
전공 (주 전공 하나 선택)	<input type="checkbox"/> 1) 유아교육		<input type="checkbox"/> 2) 보육		<input type="checkbox"/> 3) 특수교육
	<input type="checkbox"/> 4) 유아특수교육		<input type="checkbox"/> 5) 아동학		<input type="checkbox"/> 6) 사회복지학
원장 경력	<input type="checkbox"/> 7) 재활 관련		<input type="checkbox"/> 8) 기타()		
	총 원장 경력()년			장애통합어린이집 원장 경력()년	
어린이집 현황	어린이집 정원()명		어린이집 현원()명		장애영유아 수()명
					남: ()명 여: ()명
	총 학급 수()학급		일반 학급 수()학급		통합 학급 수()학급

□ 인적 환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 다음에 제시된 문항을 읽으시고,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 (번호 넣기), (수기 쓰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 기관의 현재 연령별 장애영유아의 수, 통합학급 수, 교사 배치에 대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쓰기)

장애영유아 연령	장애영유아 인원	통합학급 수	배치 된 교사 수		
			일반보육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 예시 만 (5)세	(5)명	(2)학급	일반보육교사 (2)명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1)명	특수교사 (1)명
만()세	()명	()학급	일반보육교사()명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명	특수교사()명
만()세	()명	()학급	일반보육교사()명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명	특수교사()명
만()세	()명	()학급	일반보육교사()명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명	특수교사()명
만()세	()명	()학급	일반보육교사()명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명	특수교사()명

2. 귀 기관에 장애통합보육을 위한 전문인력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체크, 수기 쓰기) **중복가능**

- ① 특수교사 ()명
- ② 치료사 ()명
- ③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명
- ④ 기타() ()명
- ⑤ 전문인력 없음

※ 1유형, 특수교사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2유형, 특수교사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5조 시행당시(2012년 8월 5일) 어린이집에 배치된 장애아 담당 교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적 부교육을 2016년 3월 1일까지 80시간 이수한 경우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란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수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자

3. 귀 기관은 장애통합보육을 위한 전문인력 채용 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체크)

- ① 어려움이 있다(→ 선택 시 3-1 문항으로)
- ② 어려움이 없다

3-1. 전문인력 채용 시 확보하기 가장 어려운 인력은 누구입니까? (✓체크) **중복가능**

- ① 일반보육교사
- ②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 ③ 특수교사
- ④ 치료사
- ⑤ 보조 인력
- ⑥ 기타()

4. 장애통합보육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수기 쓰기)

※ 다음은 보조인력에 대한 문항입니다.

5. 귀 기관에 보조인력의 유무, 인원 수, 하루 활용시간, 활용 시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체크, 수기 쓰기)

보조인력 유형	보조인력 유무		인원 수	하루 활용시간	보조인력 활용 만족도			
	있음	없음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① 장애통합 보조교사			()명	()시간	①	②	③	④
② 장애통합 보육도우미			()명	()시간	①	②	③	④
③ 기관 자체 고용 보조인력			()명	()시간	①	②	③	④
④ 공익근무요원			()명	()시간	①	②	③	④
⑤ 기타()			()명	()시간	①	②	③	④

(선택 시 5-1 문항으로)

5-1. 보조인력 활용 시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체크)

- ① 실제로 별 도움이 되지 않아서 ② 전문지식 부족으로
 ③ 관계형성의 어려움으로 ④ 기타()

물리적 환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 다음에 제시된 문항을 읽으시고,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 (번호 넣기), (수기 쓰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6. 장애통합보육을 위해 현재 구비된 물리적 환경(시설·설비)은 무엇입니까? (√체크)

물리적 환경 내용	현재 구비된 물리적 환경	
	있다	없다
출입문, 경사로, 화장실 등 편의시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특수 책상과 의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장애영유아를 위한 실내 신체활동 공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장애영유아를 위한 실외 놀이터 기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조기구(휠체어, 위커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장애영유아를 위한 치료 공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장애통합보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 위 제시된 환경 이외에 필요한 물리적 환경은 무엇입니까? (수기 쓰기)

□ 장애통합보육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 다음에 제시된 문항을 읽으시고,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 (번호 넣기), (수기 쓰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8. 귀 기관에서 **장애통합보육을 실시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순위별 번호 넣기)

〈보기〉	
① 원장(설립자 및 위탁체)의 철학	② 위탁 시 취약보육(장애, 다문화, 시간연장) 선택해야 해서
③ 시·자치구의 요구	④ 기타()

1순위 : ()번

2순위 : ()번

9. 귀 기관의 **현재 장애통합보육의 운영 방식**은 무엇입니까? (✓체크)

- ① **분리운영** : 개별적으로 장애영유아들만 따로 운영 ② **부분통합** : 시간제로 일반영유아들과 부분 통합 운영
 ③ **완전통합** : 장애/일반영유아 함께 전일제로 통합 운영 ④ 기타()

10. 위에서 선택한 운영방식으로 장애통합보육을 운영할 때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순위별 번호 넣기)

〈보기〉	
① 장애통합학급 교사 간의 협력	② 특수교사 인력 확보 및 배치
③ 물리적 환경(시설설비, 편의시설 등) 부족	④ 원장의 장애통합보육 프로그램 전문성 부족
⑤ 장애영유아 담당 교사의 전문성 부족	⑥ 장애영유아 부모와 관계
⑦ 경계선상의 장애영유아 증가	⑧ 보조인력 부족
⑨ 기타()	

1순위 : ()번

2순위 : ()번

3순위 : ()번

※ 다음은 장애통합보육 운영 시 외부교육(연수) 지원에 대한 문항입니다(별정 의무교육, 보수교육 제외).

11. 원장님께서서는 교사들의 **장애통합보육 관련 외부교육(연수)**를 받도록 지원하고 있습니까? (✓체크)

- ① 지원하고 있다(> 선택 시 11-1 문항으로) ② 지원하고 있지 않다(> 선택 시 11-2 문항으로)

11-1. **어디서 진행되는 외부교육(연수)**를 받도록 지원합니까? (✓체크) 중복가능

- ① 한국보육진흥원 주최 교육 ② 육아종합지원센터 주최 교육
 ③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주최 교육 ④ 특수교육지원청 주최 교육
 ⑤ 기타()

11-2. 장애통합보육 관련 **외부교육(연수)**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체크)

- ① 실제로 별 도움이 되지 않아서 ② 관련 교육(연수)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③ 시간이 부족해서 ④ 교육(연수) 시 대체교사 지원이 안 되어서
 ⑤ 어린이집 원내 자체교육(연수)로 인해 ⑥ 기타()

※ 다음은 장애통합보육 운영 시 외부자문에 대한 문항입니다.

12. 귀 기관은 장애통합보육 운영을 위해 외부자문을 받고 있습니까? (√체크)

- 1) 받고 있다(> 선택 시 12-2, 12-3 문항으로) 2) 받고 있지 않다(> 선택 시 12-1 문항으로)

12-1. 장애통합보육 운영을 위해 외부자문을 받고 있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체크)

- ① 외부자문의 필요성 자체가 시급하지 않아서 ② 외부자문을 받을 시간이 부족해서
 ③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④ 담당 교사들이 원하지 않아서
 ⑤ 자문 받는 방법을 몰라서 ⑥ 근처에 자문기관이 없어서
 ⑦ 기타()

12-2. 장애통합보육을 운영하면서 외부자문을 받는 기관 외부자문 시 도움 받고 있는 내용과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번호 넣기, √체크)

<보기> ① 보건소 ② 병원 ③ 행정기관(동사무소, 구청 등) ④ 장애인 복지관 ⑤ 외부 기관(센터, 치료실) ⑥ 특수교육지원센터 ⑦ 육아종합지원센터 ⑧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⑨ 기타()						
외부자문을 가장 많이 받는 기관 한 곳을 <보기>에서 찾아 번호를 넣어주세요()						
※ 이 문항에서 <u>도움내용이 있을 경우-> 만족도 체크 / 도움내용이 없을 경우-> 만족도 체크 X</u>						
외부자문 내용	도움 내용		외부자문 시 만족도			
	있다	없다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① 개별화 교육프로그램(IEP) 계획-실행-평가 방법			①	②	③	④
② 교사 간의 협력할 수 있는 방법			①	②	③	④
③ 장애통합보육 운영 방법(예산, 교사배치 등)			①	②	③	④
④ 교사고육(장학, 컨설팅)			①	②	③	④
⑤ 장애발견, 진단, 검사			①	②	③	④
⑥ 치료연계 방법			①	②	③	④
⑦ 장애영유아 가족 상담			①	②	③	④
⑧ 초등전환 및 진학지도			①	②	③	④
⑨ 개별화 가족지원계획(IFSP) 운영 방법			①	②	③	④
⑩ 기타()			①	②	③	④

12-3. 외부자문 시 가장 도움이 되는 내용을 위 12번 문항(외부자문 내용)에서 고르시오. (순위별 번호 넣기)

1순위 : ()번 2순위 : ()번 3순위 : ()번

원장의 전문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 다음에 제시된 문항을 읽으시고,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 (번호 넣기), (수기 쓰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3. 최근 2년 이내에 받은 외부교육(연수) 주최 실시 유무, 교육형태 강의형태 실시횟수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체크 수기 쓰기)

외부교육(연수) 주최	교육 유무		실시 횟수	외부교육(연수) 만족도			
	받음	안받음		매우 도움 안됨	대체로 도움 안됨	대체로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한국보육진흥원			회	①	②	③	④
육아종합지원센터			회	①	②	③	④
특수교육지원청			회	①	②	③	④
전국장애아통합 어린이집협의회			회	①	②	③	④
기타()			회	①	②	③	④

(선택 시 13-1 문항으로)

※ 최근 2년 이내에 외부교육(연수)을 받지 않은 경우, 체크 (13-2 문항으로)

13-1. 외부교육(연수)에 만족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쓰기)

13-2. 최근 2년 이내에 장애통합보육 관련 외부교육(연수)을 받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체크)

- ① 실제로 별 도움이 되지 않아서
- ② 관련 교육(연수)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 ③ 시간이 부족해서
- ④ 교육(연수) 시 대체교사 지원이 안 되어서
- ⑤ 원장님이 교육(연수)을 지원하지 않아서
- ⑥ 기타()

14. 장애통합보육 관련 외부교육(연수) 중에서 도움이 되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순위별 번호 넣기)

<보기>	
① 장애영유아 발달과 이해	② 장애통합보육의 이해
③ 장애영유아 유형별 특성	④ 장애영유아 가족연계 및 지원
⑤ 장애영유아교사의 역할과 협력	⑥ 장애영유아 일과 계획과 운영
⑦ 운동발달 교수방법	⑧ 의사소통 발달 교수방법
⑨ 사회성 발달 교수방법	⑩ 인지발달 교수방법
⑪ 적응행동 발달 교수방법	⑫ 긍정적 행동 지원
⑬ 장애영유아 지역사회 연계	⑭ 장애영유아 초등학교 전이 프로그램
⑮ 개별화 교육프로그램(IEP) 계획(작성)	⑯ 개별화 교육프로그램(IEP) 실행 및 평가
⑰ 장애 인식개선 및 태도	⑱ 기타()

1순위 : ()번

2순위 : ()번

3순위 : ()번

15. 서울시에서 **장애통합어린이집 원장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을 개발한다면, 원장님께서 원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순위별 번호 넣기)

<보기> ① 장애영유아 발달과 이해 ② 장애통합보육의 이해 ③ 장애영유아 유형별 특성 ④ 장애영유아 가족연계 및 지원 ⑤ 장애영유아교사의 역할과 협력 ⑥ 장애영유아 일과 계획과 운영 ⑦ 운동발달 교수방법 ⑧ 의사소통 발달 교수방법 ⑨ 사회성 발달 교수방법 ⑩ 인지발달 교수방법 ⑪ 적응행동 발달 교수방법 ⑫ 긍정적 행동 지원 ⑬ 장애영유아 지역사회 연계 ⑭ 장애영유아 초등학교 전이 프로그램 ⑮ 개별화 교육프로그램(IEP) 계획(작성) ⑯ 개별화 교육프로그램(IEP) 실행 및 평가 ⑰ 장애 인식개선 및 태도 ⑱ 기타()	
--	--

1순위 : ()번

2순위 : ()번

3순위 : ()번

가정 및 타 기관 연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 다음에 제시된 문항을 읽으시고,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 (번호 넣기), (수기 쓰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가정연계(협력)에 대한 문항입니다.

16. 장애영유아와 관련된 정보를 **가정에 제공**하고 있습니까? (✓체크)

- ① 제공하고 있다(> 선택 시 16-1 문항으로) ② 제공하고 있지 않다(> 선택 시 16-2 문항으로)

16-1. 가정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무엇입니까? (✓체크) 중복가능

- ① 교육과 관련된 전문적 정보 ② 가정연계활동 정보
 ③ 부모교육 및 역할에 대한 정보 ④ 지역사회 연계 정보
 ⑤ 기타()

16-2. 장애영유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체크)

- ① 정확한 정보 수집이 힘들어서 ② 부모와의 관계 어려움으로
 ③ 업무량이 많아서 ④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⑤ 정보제공을 위한 적절한 자료가 없어서 ⑥ 기타()

17. **가정과 연계(협력)를 할 때 소통**이 잘 이루어지십니까? (✓체크)

구 분	매우 어려움	대체로 어려움	대체로 잘 이루어짐	매우 잘 이루어짐
가정과의 소통	①	②	③	④

(선택 시 17-1 문항으로)

17-1. 가정과 연계(협력) 할 때 소통의 어려움을 느낀다면 무엇인지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쓰기)

※ 다음은 장애영유아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협력)에 대한 문항입니다.

18. 귀 기관은 장애영유아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협력)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 체크)

- 1) 연계(협력) 한다(→ 선택 시 18-2 문항으로) 2) 연계(협력)하지 않는다(→ 선택 시 18-1 문항으로)

18-1.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협력)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기관 간 협력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2) 시간부족으로
 3) 상대 기관에 대한 이해와 정보가 부족해서 4) 원아모집에 대한 이해관계 때문에
 5) 부모들이 원하지 않아서 6) 기타()

18-2 귀 기관은 지역사회 연계(협력) 기관, 연계(협력) 시 도움 받고 있는 내용과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번호 넣기, √ 체크)

<보기>						
① 보건소		② 병원		③ 행정기관(동사무소, 구청 등)		
④ 장애인 복지관		⑤ 외부 기관(센터, 치료실)		⑥ 특수교육지원센터		
⑦ 육아종합지원센터		⑧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⑨ 기타()		
지역사회 연계(협력)을 가장 많이 받는 기관 한 곳을 <보기>에서 찾아 번호를 넣어주세요()						
※ 이 문항에서 <u>도움내용이 있을 경우</u> → 만족도 체크 / <u>도움내용이 없을 경우</u> → 만족도 체크 X						
지역사회 연계(협력) 내용	도움 내용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협력) 시 만족도			
	있다	없다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① 장애영유아 문제행동 대처방법			①	②	③	④
② 개별화 교육프로그램(IEP) 연계(협력) 방법			①	②	③	④
③ 장애영유아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			①	②	③	④
④ 가정과 연계(협력) 방법			①	②	③	④
⑤ 부모교육 내용 및 방법(부모상담 지원)			①	②	③	④
⑥ 기타()			①	②	③	④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협력) 전체 만족도			①	②	③	④
(선택 시 18-3 문항으로)						

18-3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협력)가 만족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쓰기)

19.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협력) 시 가장 협력 받고 싶은 내용은 무엇인지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쓰기)

정책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 다음에 제시된 문항을 읽으시고,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 (번호 넣기), (수기 쓰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 귀 기관에서는 장애통합보육을 운영하면서 현재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체크)

- ① 있다(< 선택 시 20-1 문항으로)
- ② 없다

20-1. 다음 중 어떤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체크, 수기 쓰기) **중복가능**

- ① 교사 인건비(월 _____ 원)
- ② 시설 개·보수비(연 _____ 원)
- ③ 기관 운영비(월 _____ 원)
- ④ 교재·교구비(월 _____ 원)
- ⑤ 보조인력 지원(인원수 _____ 명)
- ⑥ 치료사 지원(인원수 _____ 명)
- ⑦ 기타(_____)(_____ 원)

21. 장애통합어린이집 운영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점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쓰기)

※ 끝까지 응답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시 어린이집 취약보육(장애통합보육) 실태 조사 (교사용)

ID					
----	--	--	--	--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서울시 어린이집 취약보육(장애통합보육) 내실화 방안」 연구를 수행중입니다. 본 조사는 서울시 취약보육(장애통합보육)의 실태 조사 후 정책 방안 마련을 모색해보고자 실시합니다. 또한 본 조사는 장애영유아를 담당하고 계시는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익명으로 이용되며, 통계법 제 33조에 의해 개인의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으니 솔직하고 성실한 응답 부탁드립니다.

2018. 5. 4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조사관련문의 : 가족정책실 보육팀 지성화 과장 (02-810-5187)

※ 본 설문문의 대상은 서울시 장애통합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보조교사, 대체교사 제외)으로 현재 통합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일반보육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경우만** 해당됩니다. 질문을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V표 하거나, 내용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배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성별	<input type="checkbox"/> 1) 남	<input type="checkbox"/> 2) 여	연령	만 세	
근무 소제지	① 강남구	② 강동구	③ 강북구	④ 강서구	⑤ 관악구
	⑥ 광진구	⑦ 구로구	⑧ 금천구	⑨ 노원구	⑩ 도봉구
	⑪ 동대문구	⑫ 동작구	⑬ 마포구	⑭ 서대문구	⑮ 서초구
	⑯ 성동구	⑰ 성북구	⑱ 송파구	⑲ 양천구	⑳ 영등포구
	㉑ 용산구	㉒ 은평구	㉓ 중로구	㉔ 중구	㉕ 중랑구
현재근무지의 어린이집 유형	<input type="checkbox"/> 1) 국공립	<input type="checkbox"/> 2) 국공립 전환	<input type="checkbox"/> 3) 법인	<input type="checkbox"/> 4) 직장	
	<input type="checkbox"/> 5) 민간	<input type="checkbox"/> 6) 가정	<input type="checkbox"/> 7) 기타 ()		
최종학력	<input type="checkbox"/> 1) 고등학교 졸업		<input type="checkbox"/> 2) 대학(3년제 이하)졸업		<input type="checkbox"/> 3) 대학교(4년제 이상)졸업
	<input type="checkbox"/> 4) 대학원(석사) 이상 <input type="checkbox"/> 5) 기타()				
진공 (주 전공 하나 선택)	<input type="checkbox"/> 1) 유아교육	<input type="checkbox"/> 2) 보육	<input type="checkbox"/> 3) 특수교육	<input type="checkbox"/> 4) 유아특수교육	
	<input type="checkbox"/> 5) 아동학 <input type="checkbox"/> 6) 사회복지학 <input type="checkbox"/> 7) 재활 관련 <input type="checkbox"/> 8) 기타()				
교사 경력	총 교사 경력()년		장애영유아 통합반 교사 경력()년		
현 장애통합학급 교사 자격	<input type="checkbox"/> 1) 일반보육교사		<input type="checkbox"/> 2)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input type="checkbox"/> 3) 특수교사	
	<small>※ 일반보육교사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1유형, 특수교사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2유형, 특수교사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5조 시행당시(2012년 8월 5일) 어린이집에 배치된 장애아 담당 교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적 무교육을 2016년 3월 1일까지 80시간 이수한 경우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란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수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자</small>				

자격증 (해당사항 모두기입)	<input type="checkbox"/> 1) 특수교사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교사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유치원 과정)
	<input type="checkbox"/> 2) 보건복지부 인정 특수교사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5조 시행당시(2012년 8월 5일) 어린이집에 배치된 장애아 담당 교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2016년 3월 1일까지 80시간 이수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3)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이수자
	<input type="checkbox"/> 4) 치료사 - 관련분야 국가자격증 소지자(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재활사, 임상심리사 등) -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치료관련 민간자격 소지자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를 발간하는 학회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발급하는 치료관련 민간 자격증 소지자
	<input type="checkbox"/> 5) 보육교사 1급 <input type="checkbox"/> 6) 보육교사 2급 <input type="checkbox"/> 7) 보육교사 3급
	<input type="checkbox"/> 8) 어린이집 원장 <input type="checkbox"/> 9) 유치원 정교사 2급 <input type="checkbox"/> 10) 유치원 정교사 1급

인적 환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 다음에 제시된 문항을 읽으시고,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 (번호 넣기), (수기 쓰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선생님의 담당 장애통합학급 인적 현황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수기 쓰기)

담당학급 연령	일반영유아 인원	장애영유아 인원	교사배치			치료사 ()명
			일반보육교사()명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명	특수교사()명	
만 ()세	()명	()명				
장애영유아의 장애 유형 모두 기입 (현재 장애통합학급에 있는 장애영유아)						

2. 현재 담당 장애통합학급의 교사 대 장애영유아 비율은 적절하십니까? (√체크)

※ 이 문항에서 교사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를 말함

구 분	전혀 적절하지 않음	대체로 적절하지 않음	대체로 적절함	매우 적절함
교사 대 장애영유아 비율	①	②	③	④

(선택 시 2-1 문항으로)

2-1. 교사 대 장애영유아 비율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기 쓰기)

□ 장애통합보육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질문입니다.

※ 다음에 제시된 문항을 읽으시고,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 (번호 넣기), (수기 쓰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장애통합보육 운영에 대한 문항입니다.

6. 장애통합학급 운영 시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순위별 번호 넣기)

<보기> ① 장애통합학급 교사 간의 협력 ② 일반/장애영유아의 생활지도 ③ 장애인식에 대한 태도 ④ 장시간 장애통합보육 운영 ⑤ 장애영유아의 이해도 및 교사전문성 부족 ⑥ 장애유형 구분 없는 반배치 ⑦ 장애영유아의 시간 연장 보육 시 ⑧ 부모들과의 관계 및 요구 ⑨ 경계선상의 장애영유아 증가 ⑩ 기타()	
---	--

1순위 : ()번 2순위 : ()번 3순위 : ()번

7. 장애통합학급 운영 시 교사 간의 협력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체크)

구 분	전혀 협력되지 않음	대체로 협력되지 않음	대체로 협력 이루어짐	적극적으로 협력 이루어짐
교사 간 협력 정도	①	②	③	④

(선택 시 7-1 문항으로)

7-1. 장애통합학급에서 교사 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기 쓰기)

※ 다음은 장애통합보육 개별화 교육프로그램(IEP)에 대한 문항입니다.

8. 장애영유아를 위한 개별화 교육프로그램(IEP)을 계획 시 팀(IEP) 구성(인원, 구성원)은 어떠합니까? (수기 쓰기)

<보기> ① 일반보육교사 ② 특수교사 ③ 원장이나 주임교사 ④ 언어치료사 ⑤ 심리치료사 ⑥ 재활치료사 ⑦ 물리치료사 ⑧ 의사 ⑨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⑩ 기타()		
어린이집 내부 인원 ()명	팀 구성인력을 위 <보기>에서 찾아 번호를 써 주세요 ()	총 인원 ()명
어린이집 외부 인원 ()명	팀 구성인력을 위 <보기>에서 찾아 번호를 써 주세요 ()	
개별화 교육프로그램(IEP) 수립 시 팀 구성을 하지 않을 경우, 체크 □ (8-1 문항으로)		

8-1. 개별화 교육프로그램(IEP)을 계획 시 팀 구성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기 쓰기)

9. 개별화 교육프로그램(IEP) 계획-실행-평가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해주시시오. (✓체크)

구 분	매우 잘 이루어지지 않음	대체로 잘 이루어지지 않음	대체로 잘 이루어짐	매우 잘 이루어짐
계획	①	②	③	④
실행	①	②	③	④
평가	①	②	③	④
전체과정	①	②	③	④

(선택 시 9-1 문항으로)

9-1. 개별화 교육프로그램(IEP)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쓰기)

※ 다음은 장애통합보육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문항입니다.

10. 어린이집 내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유무, 최근 1년간 실시 횟수,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체크, 수기 쓰기)

대 상	교육 실시유무		실시 횟수	만족도	매우 잘 이루어지지 않음	대체로 잘 이루어지지 않음	대체로 잘 이루어짐	매우 잘 이루어짐
	한다	안 한다						
교사			()회		①	②	③	④
부모			()회		①	②	③	④
영유아			()회		①	②	③	④
(선택 시 10-1 문항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모두 실시하지 않을 경우, 체크 <input type="checkbox"/> (10-2 문항으로)								

10-1.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만족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쓰기)

10-2.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체크)

- ① 실제로 별 도움이 되지 않아서
- ②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 ③ 작성 및 실시방법을 잘 몰라서
- ④ 업무량이 많아서
- ⑤ 교육을 위한 적절한 자료가 없어서
- ⑥ 기타()

※ 다음은 장애통합보육 개별화 가족지원계획(IFSP)에 대한 문항입니다.

11. 장애영유아를 위한 개별화 가족지원계획(IFSP) 수립 시 팀(IFSP) 구성(인원, 구성원)은 어떠합니까? (수기 쓰기)

<보기> ① 일반보육교사 ② 특수교사 ③ 원장이나 주임교사 ④ 언어치료사 ⑤ 심리치료사 ⑥ 재활치료사 ⑦ 물리치료사 ⑧ 의사 ⑨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⑩ 기타()		
어린이집 내부 인원 ()명	팀 구성인력을 위 <보기>에서 찾아 번호를 써 주세요 ()	총 인원 ()명
어린이집 외부 인원 ()명	팀 구성인력을 위 <보기>에서 찾아 번호를 써 주세요 ()	
개별화 가족지원계획(IFSP) 수립 시 팀 구성을 하지 않을 경우, 체크 <input type="checkbox"/> (11-1 문항으로)		

11-1. 개별화 가족지원계획(IFSP) 수립 시 팀 구성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기 쓰기)

12. 개별화 가족지원계획(IFSP) 계획-실행-평가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해주시시오. (✓ 체크)

구분	매우 잘 이루어지지 않음	대체로 잘 이루어지지 않음	대체로 잘 이루어짐	매우 잘 이루어짐
계획	①	②	③	④
실행	①	②	③	④
평가	①	②	③	④
전체 과정	①	②	③	④

(선택 시 12-1 문항으로)

12-1. 개별화 가족지원계획(IFSP)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쓰기)

15. 서울시에서 **장애통합보육 담당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을 개발한다면, 선생님께서 원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순위별 번호 넣기)

<보기> ① 장애영유아 발달과 이해 ② 장애통합보육의 이해 ③ 장애영유아 유형별 특성 ④ 장애영유아 가족연계 및 지원 ⑤ 장애영유아교사의 역할과 협력 ⑥ 장애영유아 일과 계획과 운영 ⑦ 운동발달 교수방법 ⑧ 의사소통 발달 교수방법 ⑨ 사회성 발달 교수방법 ⑩ 인지발달 교수방법 ⑪ 적응행동 발달 교수방법 ⑫ 긍정적 행동 지원 ⑬ 장애영유아 지역사회 연계 ⑭ 장애영유아 초등학교 전이 프로그램 ⑮ 개별화 교육프로그램(IEP) 계획(작성) ⑯ 개별화 교육프로그램(IEP) 실행 및 평가 ⑰ 장애 인식개선 및 태도 ⑱ 기타()	
--	--

1순위 : ()번 2순위 : ()번 3순위 : ()번

가정 및 타 기관 연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 다음에 제시된 문항을 읽으시고,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 (번호 넣기), (수기 쓰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장애영유아 가정과의 연계(의사소통)에 대한 문항입니다.

16. 선생님께서 **장애영유아 가정과의 연계(의사소통)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체크)
중복가능

- | | | |
|----------------------|------------|----------------------|
| 1) 부모 오리엔테이션 | 2) 가정방문 | 3) 연락장(알림장, 부모교환 노트) |
| 4) 가정통신문 | 5) 기관 홈페이지 | 6) 이메일 또는 전화 상담 |
| 7) 직접 대면(상담, 부모회의 등) | 8) 기타() | |

17. 선생님께서는 장애영유아 **가정과의 연계(의사소통)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체크)

구 분	매우 잘 이루어지지 않음	대체로 잘 이루어지지 않음	대체로 잘 이루어짐	매우 잘 이루어짐
가정과의 연계	①	②	③	④

┌──────────┐
┌──────────┐
 (선택 시 17-1 문항으로) (선택 시 17-2 문항으로)

17-1. 가정과 연계(의사소통)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쓰기)

17-2. 가정과의 연계 시 어떤 내용으로 소통하고 계십니까? (✓체크) 중복가능

- ① 장애영유아의 성장발달 관련 내용
- ② 가정에서의 장애영유아 양육법
- ③ 가족 스트레스 해소 방안
- ④ 장애영유아 문제행동 대처방법
- ⑤ 보육과정 관련 정보
- ⑥ 자녀의 기관에서의 전반적인 생활
- ⑦ 부모협조 사항
- ⑧ 외부 기관 소개 및 이용 방법
- ⑨ 장애영유아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
- ⑩ 장애영유아의 생애주기 준비 정보
- ⑪ 개별화 교육프로그램(IEP) 가정연계프로그램
- ⑫ 기타()

※ 다음은 장애영유아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협력)에 대한 문항입니다.

18. 선생님은 장애영유아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협력)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체크)

- 1) 연계(협력) 한다(→ 선택 시 18-2, 18-3 문항으로)
- 2) 연계(협력)하지 않는다(→ 선택 시 18-1 문항으로)

18-1.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협력)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기관 간 협력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 2) 시간부족으로
- 3) 상대 기관에 대한 이해와 정보가 부족해서
- 4) 원아모집에 대한 이해관계 때문에
- 5) 부모들이 원하지 않아서
- 6) 기타()

18-2.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협력)를 실시한다면, 어떤 기관과 주로 연계를 하십니까? (✓체크) 중복가능

- 1) 보건소
- 2) 병원
- 3) 행정기관(동사무소, 구청 등)
- 4) 장애인 복지관
- 5) 외부 기관(센터, 치료실)
- 6) 특수교육지원센터
- 7) 육아종합지원센터
- 8)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 9) 기타()

18-3. 장애영유아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협력) 시 도움을 받고 있는 내용과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체크)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협력) 내용	도움 내용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협력) 시 만족도			
	있다	없다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① 장애영유아 문제행동 대처방법			①	②	③	④
② 개별화 교육프로그램(IEP) 연계(협력) 방법			①	②	③	④
③ 장애영유아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			①	②	③	④
④ 가정과 연계(협력) 방법			①	②	③	④
⑤ 부모교육 내용 및 방법(부모상담 지원)			①	②	③	④
⑥ 기타()			①	②	③	④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협력) 전체 만족도			①	②	③	④
(선택 시 18-4 문항으로)						

18-4.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협력)가 만족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쓰기)

19.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협력) 시 가장 협력 받고 싶은 내용은 무엇인지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쓰기)

정책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 다음에 제시된 문항을 읽으시고,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 (번호 넣기), (수기 쓰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 장애통합보육과 관련하여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체크, 수기 쓰기) 중복가능

- ① 장애담당 특별수당(월_____만원) ② 보조인력 지원(인원수_____명)
③ 기타() ④ 지원받지 않음

21. 장애통합보육과 관련하여 현재 어린이집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체크, 수기 쓰기) 중복가능

- ① 교사 대 아동비율 감소(교사 : __, 아동 : __) ② 공동업무 경감 (있을 시 체크)
③ 당직근무 경감 (있을 시 체크) ④ 정부지원금 외 추가 지원금(월_____만원)
⑤ 기타() ⑥ 지원받지 않음

22. 장애통합학급 운영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점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쓰기)

※ 끝까지 응답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 정책연구 - 03

서울시 어린이집 취약보육 운영 내실화 방안:
장애통합보육을 중심으로

발행인 강경희
연구자 박은미·지성화·박인숙
발행일 2018년 9월
인쇄처 행복한나무
발행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 소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전 화 02-810-5101(대)
I S B N 979-11-87956-80-8(93330)

이 책의 저작권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함께해요 청렴실천, 신뢰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www.seoulwomen.or.kr